

통권 제46호
2008년 여름호

보 험 동 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유가급등(Oil-Shock)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 경제금융 동향

◆ 보험시장 동향

◆ 국내제도 동향

보험
은행·증권

◆ 해외제도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연구원

목 차

테마진단	1
유가급등(Oil-Shock)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16
경제금융 동향	43
1. 해외 경제	43
2. 국내 경제	46
3. 금융 경제	51
보험시장 동향	55
1. 보험산업 총괄	55
2. 생명보험	58
3. 손해보험	69
국내제도 동향	80
1. 보험	80
2. 은행·증권	94
해외제도 동향	126
1. 북미 동향	126
2. EU 동향	141
3. 일본 동향	147
4. 기타 동향	161
통계표	173

테마진단

◆ 유가급등(Oil-Shock)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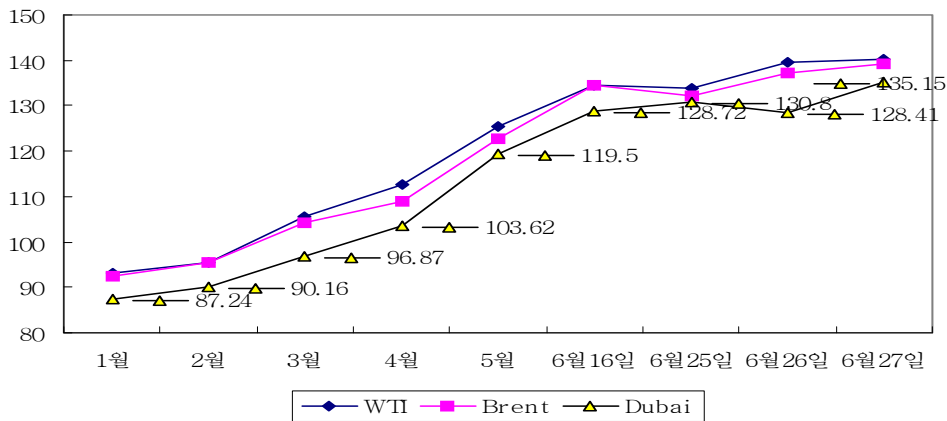
1. 머리말

제1차(1973) 및 제2차(1979) 오일쇼크 직후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이후 세계는 유가 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유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 이에 본 자료에서도 유가급등으로 경제와 자동차보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 약세, 세계 원유수급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8년 1월에 87.24 달러에서 2008년 6월 27일에 135.15달러로 54.9% 인상되어 세계경제가 유가상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

〈그림 1〉 세계 기준원유 현물가격 최근 추이



자료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171호), p8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세계는 1차(1973) 및 2차(1979) 오일쇼크(Oil-Shock)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현상을 경험한 이후로 유가 급등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실제 2000년 이전에는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침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에는 실질유가 기준으로 인상효과가 낮은 점, 기술의 발달로 기계의 효율성 증가 등의 이유로 유가급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최근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최근 유가 급등이 향후 경제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오일쇼크 때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유가 상승은 과거와 유사한 점이 있음.
 - 반면에 과거에는 중동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석유사용량 증가, 달러가치의 하락 및 석유에 대한 헤지펀드 투자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면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며, 자동차보험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유가급등 연혁 및 경기상황과 연관성

1956년 Suez Crisis 이후 유가불안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이 중 제1차 및 제2차 오일쇼크는 세계 경제 침체를 불렀으나, 2000년 이후는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 여러 이유로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가급등은 경기침체의 선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가 급등으로 경기가 침체할지 여부는 정부의 대응책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가. 유가급등의 연혁

-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의 변동성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은 1차(1973) 및 2차(1979) 오일쇼크(Oil-Shock)의 영향 때문임.

-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가는 안정된 상태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유가가 급격하게 변동한 시기였음.
- 1차 오일쇼크는 Yom Kippur전쟁*으로 1973년 OPEC가 정치적 목적으로 오일공급을 중단(약 7% 감산)하면서 6개월간 유가가 400%상승하면서 나타남.
 - * Yom Kippur War : 1973년 10월 6일 유대교의 속죄일에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제4차 중동전쟁
- 2차 오일쇼크는 1979년과 1980년에 이란혁명 및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오일생산이 줄어(약10%)들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14에서 \$35로 증가)하면서 나타남.
- 이후 1990년 걸프전쟁,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으로 유가불안요인이 있었음.

나. 유가급등과 경기의 관계

- 과거(2000년 이전)에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의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하였고, 유가급등으로 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함.
-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경우는 1차(1973)와 2차(1979) 오일쇼크 때로 한정됨.
- 2000년 이후에는 중동지역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에 의한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세계 오일생산 감소로 과거와 같은 오일쇼크에 의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감.
- 2000년 이후 유가 급등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다음1)과 같음.
 - ① 실질유가(인플레이션효과를 제외한 실제가격)수준이 1970년대 보다 낮음.
 - ②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증가, 자동차 등 석유가 사용되는 기계의 연료 효율성 증가
 - ③ 기존 OPEC 이외에 석유공급 국가의 다양화

1) Olivier J. Blanchard, Jordi Gali,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Oil Price Shocks : Why are the 2000s so different from the 1970s?", MI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07-21, 2007, pp.9~10

④ 국가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축소

⑤ 금융 및 통화정책 수행능력의 개선

□ 유가상승은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²⁾이나, 정부가 유가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할 경우 경기침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음.

○ Gisser and Goodwin(1986)과 Hickman, Huntington and Sweeney (1987)는 미국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유가가 오르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주장함.

○ Hamilton(1983)³⁾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미국의 경기불황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유가상승이 불경기에 선행하였다고 주장함.

○ Bernanke, Gertler and Watson(1997)⁴⁾는 유가상승의 충격 이후에 금융정책이 경제에 대한 충격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즉, 미국 FRB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올리면, 경제주체는 보유통화량을 늘리면서 통화량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어짐.

○ Olivier 및 Jordi(2007)⁵⁾도 2000년 이후 유가급등이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금융 및 통화정책 능력의 개선이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앞으로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되면 우리나라도 경기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는 유가급등이 경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유가급등이 경기침체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유가급등이 경기침체를 일으키는 경로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김영덕, "유가변동 충격의 파급경로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3) Hamilton, James D., "Oil and the Macroeconomy Since World War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3, pp.228~248

4) Bernanke, Ben S., Mark Gertler, and Mark Watson, "Systematic Monetary Policy and the Effects of Oil Price Shock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7, pp. 91~142

5) Olivier J. Blanchard, Jordi Gali,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Oil Price Shocks : Why are the 2000s so different from the 1970s?", MI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07-21, 2007, pp.56~62

-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면서 대외 의존형 국가이므로, 유가급등의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칠 것⁶⁾으로 예상됨.
- 그러나 “통화정책 등 정부의 정책이 경기침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향후 유가급등 추이 및 정부정책의 적정성 등을 보고 유가급등이 경기침체로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임.

□ 유가 급등 직후부터 경기침체가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은 미국의 예로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약 0개월에서 13개월이었음.

- Hamilton(2003)에 따르면, 유가급등 정점일로부터 경기 침체일 까지 걸리는 기간은 1차오일 쇼크(1973)때에는 약 0개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오일쇼크가 발생한때는 약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후 1980년에는 오일쇼크발생일로부터 경기 침체일까지 8개월이 걸렸음.

- 또한 Kilian(2005)⁷⁾이 G7국가를 대상으로 유가급등과 경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일공급에 10% 변동이 있는 경우 유가급등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내에 성장률이 2% 감소함.

-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가급등 정점일로부터 경기침체일 까지 기간은 8개월 내지 13개월로 볼 수 있음.

- 1차 오일쇼크(Oil-Shock)가 최초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즉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 이후의 오일쇼크 영향을 살펴볼 때, 오일쇼크 정점일로부터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날까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8개월 내지 13개월이라고 볼 수 있음.

- 유가급등으로부터 경기침체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가 증가속도, 심리적 충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및 관련 주 교역국인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미국인 점을 감안할 때,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6) Kilian(2005)은 유가급등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G7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7국가 중 미국, 영국 및 이탈리아는 경기가 유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 일본 및 캐나다에서는 그런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난 유가와 경기의 관계는 이들 G7국가 이외의 다른 산업국가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함.

7) Kilian, Lutz. "The Effect of Exogenous Oil Supply Shocks on Output and Inflation : Evidence from the G7 Countrie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2005

<표 1> 중동분쟁과 오일공급, 경기침체(미국)⁴⁾

날짜	사건	오일공급 감소율	경기침체 시작일	경기침체 일까지 기간
1956.11	Suez Crisis	10.1%	1957.8	8개월
1973.11	Yom Kippur War	7.8%	1973.11	0개월
1979.11	이란혁명	8.9%	1980.1	13개월
1980.10	이란-이라크 전쟁	7.2%	1981.7	8개월
1990.8	걸프 전쟁	8.8%	1990.7	-1개월

주 : Suez Crisis : 1956년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 전쟁
 자료 : Hamilton(2003)

□ 과거 유가 급등이 경기침체로 이르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8) 9)}.

○ 실질잔고효과(The Real Balance Effect)

- Brookings Panel이 주장한 "oil price as tax increase" 효과에 따르면, 오일수입에 사용되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므로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이는 상품생산 감소로 이어짐.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산업은 수익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품가격을 올림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가격이 비싸 수요를 줄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황이 발생

○ 운송과 관련된 부분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재배치가 이루어짐.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① 경유값 급증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SUV자동차의 판매 감소
- ②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덜 사용하는 경향
-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송비인상 요구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소비자와 기업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줄임.

8) 김영덕, "유가충격이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9) Keith Sill, "The Macroeconomics of Oil Shocks", Business Review,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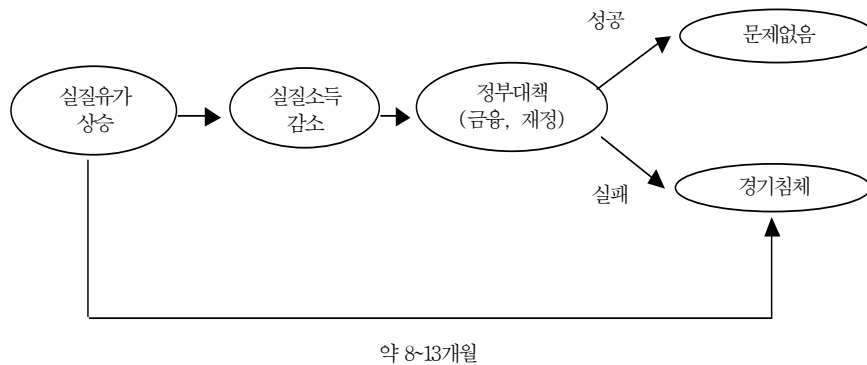
- 예를 들면,

- ① SUV 차를 선호하는 고객이 유가가 급등하자 유가급등 현상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차량구입을 연기하는 경우
- ② 유가급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느낀 기업이 유가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투자를 연기하는 것 등임.

□ 이상에서 살펴본 유가급등(Oil-Shock)이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는 전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즉 실질유가가 상승하여 오일쇼크가 발생하면 정부정책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실질유가 급등의 정점일로부터 약 8~13개월 이후 경기침체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함.

〈그림 2〉 유가급등이 경기침체에 영향을 주는 경로



3. 유가급등과 자동차보험의 연관성

유가가 급등하면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자동차운행거리 감소,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둔화, 자동차보험사고발생률 증가추이 둔화, 자동차손해액 원가상승 및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유가 급등이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

-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는 자기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을 줄이고,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Lutz(2007)¹⁰⁾의 연구에 따르면,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에서는 도시간 이동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0.52% 줄어들었고, 대신에 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0.33% 증가하였음.
 - 도시간 및 도시내 이동을 모두 합하여 18개월 이후 약 0.34%의 운송비 감소효과가 있었음(통계적으로 유의함).
 - Lutz(2007)는 여행이 줄어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레크레이션과 휴가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는 음식, 옷, 교육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줄이기 전에 여행경비부터 줄였음.
 - ②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은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 자동차판매대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Lutz(2007)¹¹⁾의 연구에 따르면, 석유가격이 1%증가하면 자동차 판매 및 관련 부품소비가 0.76%감소하고, 특히 신규자동차 판매는 0.71%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픽업트럭(pick-up truck)이나 SUV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차종이 됨.
 - 자동차 타이어 및 관련 부품은 약 0.20%감소하고, 자동차 수선비도 약 0.37%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석진 외 11인(2004)¹²⁾에 따르면, 유가상승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수요 감소로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 채산성 측면에서 보면, 유가상승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수요 감소, 철강 등 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자동차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10) Lutz Kilian,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Price Shocks", 2007, pp. 16~17

11) Lutz Kilian,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Price Shocks", 2007, p13

12) 장석진 외 11인,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증장기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04, pp.31~32

□ 원유가 상승 및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철강 등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자동차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Rache and Tatom(1977, 1981), Kim and Loungani(1992), Rotemberg and Woodford(1996), Finn(1997)¹³⁾는 유가상승으로 생산성이 하락한 다는 것이 밝혀냄.

○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생산품 가격을 인상할 것임.

□ 자동차 운행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2008년 5월 21일 기준 전국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801.44원으로 1,800원을 초과함.

<표 2> 2008.05.19 ~ 2008.05.23의 연료가격

(단위 : 원/ℓ)

구분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판매가격	1816.98	1369.73	1785.23

자료 : 석유공사(<http://www.knoc.co.kr/>)

- 이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이와 더불어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자 화물자동차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운임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경제신문, 2008.5.28일자 기사

○ 따라서, 운행거리 감소는 승용차(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차종), 특히 연료효율이 낮은 대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특히,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차종 중 1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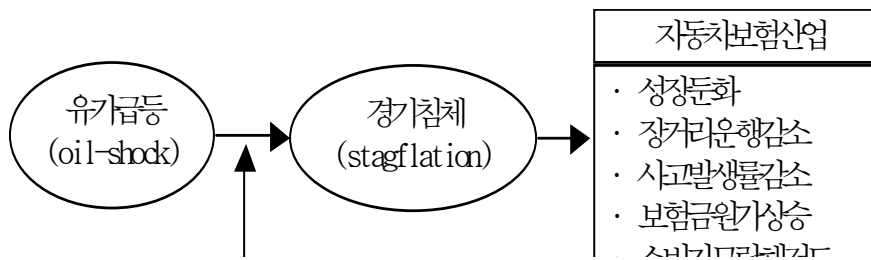
- 반면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운임이 증가하지만 연료단위당 운송능력이 승용차보다 크기 때문에 승객증가, 운행거리 증가 등의 현상이 예상됨.

13) 김영덕, “유가충격이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재인용

나. 유가 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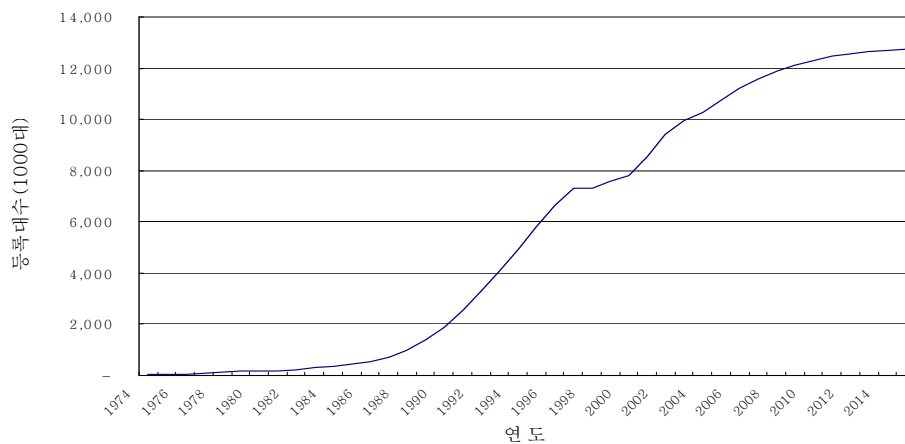
- 유가급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동차보험 산업에는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둔화”, “장거리운행감소”, “사고발생률감소”, “보험금원가상승”, “소비자-모랄해저드” 등의 현상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유가급등이 자동차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로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비례하므로 자동차가격인상,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판매가 줄어들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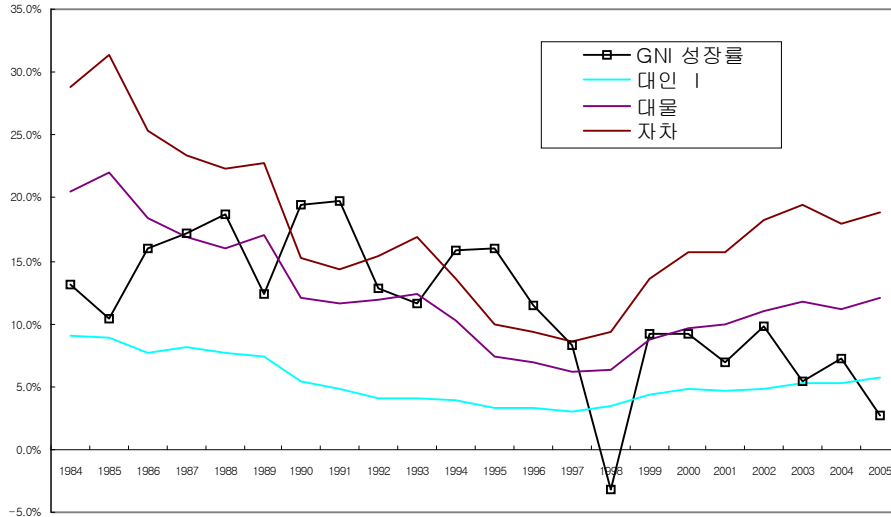
<그림 4> 승용차(개인용자동차보험 포함) 증가대수 추이에측



자료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험연구소, 2007.4, p50

-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던 시기인 1998년 이후 약 3년간(1998년~2000년) 자동차 대수증가가 둔화됨.
- 특히 대형승용차 및 SUV자동차의 대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 경승용차 및 소형차는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차종별로 성장률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콜금리 인상 및 통화량 긴축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임금 및 공임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원가의 상승”이 예상됨.
- 인건비 상승효과가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지급기준에 반영되면, 대인보험 등 인적담보 사고심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나 인건비 증가는 경기상황 및 임금협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물적담보의 원가 중에서 공임은 매년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협상으로 결정되므로 인건비 증가는 물적담보 공임 증가로 이어져 짧은 기간 안에 물적담보 사고심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임.
- 원가상승(유가 및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제작 회사가 자동차가격 및 부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유가 상승은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원가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Rache and Tatom(1977, 1981)의 연구이론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회사들이 자동차가격을 인상할 개연성이 큼.
-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 증가 추이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전반기에는 사고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고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발생률은 경기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동차사고는 기존의 경기상황이라면 청구를 포기했었을 소액사고와 보유불명사고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연도별/담보별 사고발생률 추이



- “장거리운행 감소”로 사고빈도 및 사고심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장거리 운행은 대중교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개인용자동차 보험은 장거리 운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사고빈도 및 사고심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가운전을 하는 대형승용차 및 SUV의 장거리 운행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긴급출동 서비스 내용에는 운행 중 연료가 소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약 3ℓ의 연료를 공급하는 서비스¹⁴⁾가 있음.
 - 연료공급 최대한도가 1년에 5회 수준인데 사고발생률이 90%를 넘으므로, 유가가 상승하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니즈가 증가할 수 있음(이론적인 최대 사고발생률은 500%임).

14) 손해보험회사별로 주유 양 및 제공 횟수에 차이를 두는 등 상품별로 제공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

4. 시사점

보험회사는 유가급등 추이 및 정부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경기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산업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유가급등으로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에 진입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둔화, 사고발생률 감소, 손해액 원가 증가 및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아래와 같은 경영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가 상승은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침체기에는 마케팅 방향, 효율수준 결정, 사고시 보상관리 등 자동차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정책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가격, 손해사정 및 마케팅 활동에 반영을 검토해야할 시점임.
- 유가급등일로부터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약 8~13개월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에 경기 침체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과거 예를 보면, 유가 정점일로부터 경기침체 일까지 약 8~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 따라서 이기간 동안 유가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검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유가급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효율인하 경쟁은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가급등으로 자동차운행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으나, 효율조정은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의 영향 정도를 파악한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최근 자동차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과 유가급등에 편승한 공임 및 부품가격 인상 요인, FY'07과 같은 영업수지 적자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확실한 경우에는 경기침체 지속기간이 장기라고 예상되고 손해율이 개선되었다면 요율을 인하하여야 하며,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신중한 요율조정이 필요함.
- 경기침체로 인한 손해율 개선 효과를 요율조정에 반영하는 경우는 경기침체 지속기간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현행 보험료 대비 위험도가 낮아져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으나, 경기침체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 때처럼 단기간에 그칠 경우 손해율 개선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
- 유가급등은 전 세계경제 특히, 미국 등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경기상황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모두 주시하여야 할 것임.
-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가 확실할 경우 자동차등록대수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므로 경영목표는 자동차시장 성장이 아닌 수익극대화가 되어야 할 것임.
- 1997.12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기에 약 3년간 자동차보험 등록대수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Lutz(2007)의 연구결과도 미국에서 경기침체기에 자동차 판매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험회사는 경영목표로 대수증가를 동반한 성장보다는 손해율이 좋은 우량계층에 대한 영업 강화(우량계층에 대한 MS확대), 고정사업비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한 사업비율 상승가능성 대비 등 수익성 위주营业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유가 상승이 보험종목/차종별로 달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험도에 부합된 요율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종목 및 차종간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예상되는 현상은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 개인용 포함) 중 연료효율이 낮은 대형승용차, 다인승 1종 및 2종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중 소형화물자동차 등의

운행감소와 경·소형승용차의 운행증가임.

- 또한 물적 담보는 원가상승효과가 단기간에, 인적담보는 장기간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요율수준은 각 담보의 원가상승 동향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긴급출동서비스와 같은 유류보조상품, 보유불명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보험사기 등 경기상황에 따라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손해사정을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야 할 것임.

◆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의 진입방안

조용운 연구위원 · 김세환 수석연구위원

1. 서론

병원이 첨단고급화, 외형적으로 대형화 되는 추세에서 중소의료법인이나 개인병원들은 외부자본 유입을 통해 시설투자 확대, 우수의료인 영입으로 병원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유형: 의료기관의 개설가능주체가 설립할 수 있는 병원(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법인병원, 개인병원이 있음.

- 국공립병원은 국립병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시·군립병원, 공사병원 등임.
- 법인병원은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병원으로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들 수 있음.
 - 의료법인병원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 4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전국의 많은 중소형병원들이 이에 해당함.
- 개인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써 특별한 규정이 없어 비영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징이 있음.

☑ 의료기관의 영리성: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시행령의 비영리성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이익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을 의미
- 의료법인에 출연한 사람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출자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업할 수 없으며, 청산 시에 출자지분은 국가소유로 회수됨.

가.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논의 경과

-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관한 논의는 1995년 시장개방 논의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이근찬 등, 2005, 재인용).
 - 시장개방에 따라 병원산업구조의 효율성, 의료부문의 민간자원 유입을 통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 등의 입장에서 긍정적 정책대안으로 제시됨.
 - 1998년 11월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흡수합병 등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병상공급 부족지역 등에서 영리성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됨.
 -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논의와 WTO/DDA 협상 과정 중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되었음.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2.12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내국인 환자도 진료할 수 있음.
- 2004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 및 외국병원과의 차별대우 시정 차원에서 허용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이근찬 등, 2005, 재인용).
 - 보건복지가족부 및 유관기관에서 의료산업발전과제 등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영리병원 제도에 대해 논의함.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도 산업이다’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측면에서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을 주장함.
 -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자유화로 보고 우려를 표명함.
 - 대한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 등에서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허용을 찬성함.
- 그러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2005.10월, 국무총리주재)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추후 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회계투명성 강화, M&A 및 체인 병 의원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불필요한 진료 증가, 병상 과잉공급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음.
- 대한병원협회는 2008.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책 등을 건의함.
- 2008년 기획재정부는 7%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임.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중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대두됨.
- 지금까지 논의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찬성 논리는 시장논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재화를 제공함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민간 자본참여를 촉진하여 의료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고, 의료시장의 진입장벽 제거와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고급의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임.
-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반대 논리는 자원의 제약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은 기업의 특성상 영리병원에서 민감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의료공공성의 약화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고소득층에게는 의료이용의 선택의 다양성을 주지만, 저소득계층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료이용의 빈부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 영리추구 병원은 의료수요를 팽창시키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소지가 있고 진료비용이 높아 의료비 상승이 우려되며,
- 현재보다 잦은 휴폐업, 수익성에 편승한 진료과목의 선정 등으로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을 주장

나. 검토배경 및 목적

-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논의 중에 보험회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수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강세상네트워크(김창보)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체계의 이원화,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내일신문, 2005).
 - 또한 시민단체는 고급의료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영리병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기관이 되도록 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며, 또한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 탈퇴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함(내일신문, 2005).
 -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을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유층의 민간보험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연합뉴스, 2008. 6.22)
-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기반의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의 자본참여 가능성을 검토함.
-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해외사례 및 성과분석 조사를 통해 찬반 논리를 검토해 보고 보험산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함.
- 향후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재편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보험산업도 재편과정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영리의료법인의 현황 및 필요성 고찰

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별 현황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가능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임.

<표 1>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유형

구분	영리여부	종류
민간 의료기관	영리기관	개인병원
	비영리 의료기관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회사법인
공공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 특수법인 등

- 의료법에 의해 1976년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의료법인병원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도 현재 368개로써 병원 전체의 26.9%를 점유함.
-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병원(for-profit hospital, investor owned hospital)의 비중이 높아 영리병원의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음.
-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 영리법인은 주로 의료법인형태이며, 일본, 한국은 개인병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표 2> 설립형태별 병원수 및 구성비율

(단위 : 개, %)

구 분		1981	1990	1999	2006
공공 병원	국공립	58(17.8)	23(4.0)	39(4.7)	67(4.9)
	공공법인	18(5.5)	59(10.3)	65(7.8)	58(4.2)
	소 계	76(23.5)	82(14.3)	104(12.5)	125(9.1)
민간 병원	의료법인	20(6.2)	92(16.1)	199(23.8)	368(26.9)
	기타법인	94(28.8)	117(20.4)	136(16.3)	162(11.9)
	개인병원	136(41.7)	282(49.2)	395(47.4)	713(52.1)
	소 계	250(76.7)	491(85.7)	730(87.5)	1,243(90.9)
합 계		326(100.0)	573(100.0)	834(100.0)	1,368(100.0)

자료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2006. 12.

- 서구에서는 초기 병원은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가 운영하였으며 일반적인 복지기능을 주로 담당하면서 빈민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세기에 와서야 사회 전체 계급을 대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자선병원이 출현
- 자선병원(private voluntary hospital)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종교기관에서 설립하여 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이 전문화되면서 근대적인 병원으로 전환됨.
- 이러한 전통과 함께 전문의로서 의학발전에 대한 사명감,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 의료인 양성, 의료의 질 발전, 전문직업인으로서 요청되는 지도력 발휘에 대한 사명의식 등을 이유로 서구에서는 영리병원의 비중이 낮음.

<표 3> 주요국의 영리병원 비중

(단위 : %)

보건의료유형	국가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개인병원 포함)
국가보험체계	영국, 스웨덴 등	공공병원형태가 절대 다수		1 ~ 2
사회보험체계	오스트리아	69	26	5
	벨기에	60	40	-
	독일	55	38	7
	룩셈부르크	50	50	-
	네덜란드	-	100	-
민간보험체계	미국	18.2	66.8	15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69.4	16.4	14.2
	태국	79		21
	인도	97		3
	일본	20.1	68.2	11.7
	한국	8.7	39.2	51.8

자료 : 전창배 외 (2006), Busse, R. (2006),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6

나.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 의료기관현황과 고령화의 추세를 보아 급성병상병원보다는 만성병상병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활동의사와 활동간호사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

- ☐ 활동의사수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인구 천명당 1.6명으로 OECD 22개 국가(평균 3.0명)들 중 가장 적음.
 - o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OECD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임.
- ☐ 활동간호사수는 2005년 기준 1.9명으로 OECD 국가(평균 9.0명)들 중 최저 수준임.
 - o 활동의사 대비 활동간호사수는 2005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들 중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 의료기관(병원과 의원)을 포함)과 병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만성병상수는 부족한 상황
 - o 2005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1985년의 3.27배인 총 49,566개로 늘어났으며, 종합병원(290개), 병원(971개), 의원(25,413개)은 각각 1.58배, 3배, 3.14배 증가함.
 - o 병상수도 증가하여 2005년에는 374,771개(1985년의 3.75배)로 늘어남.
 -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7.3개로 OECD국가 중 상위권 수준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일본 14.2, 독일 8.6, 체코 8.7, 오스트리아 7.7, 미국 3.3개 (OECD Health Data, 2006)
 - 병원당 평균병상수는 미국, 일본과 유사한 인구 천명당 182병상으로 OECD국가의 중간 수준
 - o 급성병상수는 29,299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 있고, 만성병상수는 75,169병상이 부족한 상황(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표 4>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수 분포

(단위: 개, %)

구분		연도(85년 대비 증감율)				
		1985	1990	1995	2004	2005
병 · 의 원	종합병원	49,394 (100.0)	66,625 (134.9)	96,865 (196.1)	117,323 (237.5)	120,728 (244.4)
	병원	17,965 (100.0)	19,425 (108.1)	33,425 (186.1)	97,342 (541.8)	110,988 (617.8)
	의원	23,861 (100.0)	33,011 (138.3)	44,610 (187.0)	91,702 (384.3)	93,972 (393.8)
특수병원1)		6,356 (100.0)	12,451 (195.9)	16,763 (263.7)	36,682 (577.1)	38,625 (607.7)
치과	치과병원	54 (100.0)	66 (122.2)	81 (150.0)	171 (316.7)	225 (416.7)
	치과의원	11 (100.0)	-	29 (263.6)	13 (118.1)	22 (200.0)
한방	한방병원	596 (100.0)	1,276 (214.1)	3,498 (586.9)	8,887 (1491.1)	8,538 (1432.6)
	한의원	21 (100.0)	14 (66.7)	168 (800.0)	698 (3,323.8)	672 (3,200.0)
부속의원2)		674 (100.0)	872 (129.4)	577 (85.6)	338 (50.1)	848 (125.8)
조산원		1,018 (100.0)	436 (42.8)	216 (21.2)	133 (13.0)	153 (15.0)
총 계		99,950 (100.0)	137,176 (134.2)	196,232 (196.3)	353,289 (353.0)	374,771 (375.0)

주 : 1) 결핵병원, 정신병원, 나병원

2) 회사 또는 중업원을 위한 산업체의 부속의원임.

3) 병원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다. 의료기관의 재무현황

- ☑ 비영리중소의료법인은 수익성의 저하로 이익잉여금 축적을 통한 자기자본투자가 어렵고, 외부차입을 통한 투자도 수익성의 악화와 높은 차입금의존도 등으로 장기차입금의 조달이 어려워 안정적인 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
 - 재무현황을 볼 때 새로운 자본참여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고 부대수익사업 등의 확대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확대가 필요함.
 - ☑ 병원의 경영실태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의 인상, 환자수의 증가, 1인당 진료비의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소폭의 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인건비의 증가, 취약한 자기자본비율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경쟁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지 않을 경우 경영수지의 악화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 영리법인인 개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은 적자를 기록
- ⇒ 재무현황을 볼 때 영리의료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이 39.1%(2001년), 37.1%(2002년), 34.9%(2003년), 34.7%(2004년)로 재무구조가 매년 악화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33.5%로 증가추세에 있고 제조업의 31.7%보다 높은 수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장기차입금이 36.8%, 단기차입금이 16.6%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차입금은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차입금은 비중이 증가추세
 - 이러한 현상은 의료법인 및 개인병원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전체 병원의 경영수지, 즉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04년 기준 1.3%로 연속 4년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개인병원(영리병원임)을 제외하면 적자이며 중소의료법인의 경영수지적자가 가장 큰 상황

* 의료수익순이익률 = (의료수익 - 법인세 - 총비용)/의료수익**

** 병원의 제 수익항목 합계: 입원수익, 외래수익, 의료부대수익, 선택진료수익

- o 종합전문요양기관과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비해 의료법인이 주가 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o 영리병원이라 할 수 있는 개인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04년 6.3%이며 매년 소폭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5> 의료수익 순이익률

(단위: %)

연도	평균	종합병원				개인병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300병상 이상	160-299 병상	160병상 미만	
2000	-2.7	-4.9	-4.1	1.2	-1.2	3.2
2001	2.1	-0.6	-2.1	3.3	-4.8	5.6
2002	0.3	-1.8	-3.7	-0.4	-5.2	5.7
2003	1.7	-1.6	-1.1	1.1	-1.2	5.6
2004	1.3	-0.6	-1.0	-2.3	-6.0	6.3

자료 : 2006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6.

- 전체 병원의 환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수익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인력규모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수익구조는 악화
- o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2004년 202.2명, 입원환자수는 7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100병상당 월평균의료수익도 매년 증가 추세임.
- o 100병상당 인력규모는 94.5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인건비)×100)의 경우 2004년 158.6으로 매년 소폭 악화
- o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의 경우도 2004년 평균 97.0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이는 재료비 및 관리비 비율의 상승보다는 인건비 비율의 상승에 따른 것임.

라. 주요국의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사례(OECD Competition Committee, 2005.)

- ☑ 제도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의료공급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함이 영리병원 금지의 이유이며, 잉여금의 배당은 금지하고 있지만 지분을 인정하여 재산청산시 지분인출을 허용함.
 - 네덜란드는 모두 민간병원이지만 공공성을 강조하여 모두 비영리병원이며, 병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리추구가 허용됨.
 - ☑ OECD 국가 대부분은 병원 다수가 공공 소유이나, 근래 민간영리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을 보완하거나, MRI 클리닉, 진료센터, 민간실험실 등 전문분야에 특화되거나, 장기요양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 ☑ 싱가포르, 태국, 인도에서는 의료산업을 국부창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높은 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해외사례를 볼 때 영리의료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1) 영리병원 미허용 국가

- 일본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면 기대이윤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병원 폐쇄로 지방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산업 진입이 금지되어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종교법인, 학교법인이며 의료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고 사단의료법인은 다시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과 지분이 없는 의료법인으로 구분됨.
 - 의료법인 중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이 9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일본의 의료법인 수

(단위 : 개, %)

구분	2003년 3월	1999년 3월
의료법인 총수	32,708(100.0)	30,056(100.0)
재단	399(1.2)	398(1.3)
사단	32,309(98.8)	30,558(98.7)
- 지분 인정	32,069(98.0)	30,334(98.0)
- 지분 불인정	240(0.8)	224(0.7)
1인의사의료법인수	26,345(80.0)	24,770(80.0)
기타	6,663(20.0)	6,186(20.0)
특정의료법인	267	240
특별의료법인	9	0
후생대신소관법인	406	361

자료 : 石井孝官, 변혁기에 있는 병원의 자금조달, 병원지 60호, 2001.

-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취지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영주체가 의료업의 비영리성을 손상함이 없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금집적을 쉽게 하고 동시에 의료법인의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임.
-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의 출자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만 잉여금의 배당을 금하고 있고 출자자의 은퇴나 사망으로 재산청산을 하는 경우에만 지분인출을 허용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됨.
- 지분이 없는 의료법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재산제공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
-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병원(대학병원 8개 포함 110개, 2005)과 ZBC*(50개)는 WZV라 불리는 법에 의해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고 신규진입은 국가의 통제를 받음.
 - * 네덜란드어 약자로 통원(외래+조제약)치료를 위한 소형 전문진료소를 말함.
- 신규병원의 건설이나 병원의 대규모 개축은 정부의 서면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소규모 병원 개축과 ZBC는 개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네덜란드 정부는 전통적으로 병원서비스를 민간 주도에 의존하여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과 ZBC는 민간 소유임.

- o WZV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영리 추구도 가능한 민간 진료소도 있음.
- o 그러나 이들 진료소(clinic)는 간이진료(easy care)만 제공 할 수 있고, 의사 비용만 청구가능하며 병원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2) 영리병원 허용 국가

- 영국은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병원(국가소유 혹은 국가신탁병원으로 95%를 차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리 혹은 비영리민간병원도 허용(민간병원병상의 70%가 영리)
 - o NHS는 대기환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체의료공급자(alternative provider)인 민간영리 병원과 계약하여 NHS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진료비는 NHS가 직접 민간병원에 지급
 - 대체의료공급자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 장기입원 환자들을 위한 진료 (79.7%), 재가간병(home care)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o 공공의료 하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공병원에도 의료의 산업성을 부분적으로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고급의료욕구를 가진 환자에게 고급시설을 갖춘 입원실을 제공하여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사적병상(pay bed)제도와
 - 공공병원의 전문의를 퇴근 이후에는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게 허용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과 고급진료 선호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를 시행함.
 - 2004년에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병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운영이나 예산 사용에서 준 독립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NHS 재단병원(National Health Service Foundation Hospital; NHSFH) 설립을 허용함.
- 미국의 병원은 총 5,794개(2002년)이며 소유구조에 따라 비영리병원(병원 병상의 71%), 영리병원(766개, 병원 병상의 13.2%), 공공병원, 즉 정부소유 병원(병원 병상의 16%)의 3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리병원이 증가추세
 - o 병상규모별로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은 소형병원 및 대형병원의 비중이 크고, 비영리민간병원은 중형 및 대형병원, 영리민간병원은 소형 및 중형병원의 비중이 높음.

- 영리병원은 시장의 미충족 수요 및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영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면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음.
- o 많은 비영리병원에서 영리의료기관이나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영리시스템에서도 비영리 및 공공소유병원을 관리하기도 함.
- o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의 민간병원이 출현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비영리의료기관의 영리의료기관 전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o 일부 주에서는 공공병원이 자신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 권한에 따라 민간병원과의 경쟁체제에 들어간 공공병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은 37%는 공공병원(지자체 소유), 41%는 비영리병원, 22%는 영리병원(병상 기준으로 7%)이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34개의 대학병원이 있음.
- o 병원법은 운영자 다양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비영리 및 영리병원의 설립을 보장하고 있음.
- o 또한 동 원칙에 의해 주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이 비영리 및 영리병원 보다 우월한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o 점점 더 많은 시립병원이 영리병원 체인에 인수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영리병원의 비중은 늘고 공공병원의 비중은 감소할 것임.
- 프랑스는 어떤 형태의 법인도 병원 및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병원이 존재하며 영리의료법인이 총병원수의 41.6%, 총병상수의 19.9%(1999)를 차지함.
- o 공공의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의료법인 병원이나 비영리민간병원은 공공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수령할 수 없으나 자유진료가 가능함.
- o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이 37%, 비영리민간법인이 33%, 영리의료법인이 30%를 차지(전형준, 2007).
- 노르웨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정부소유 병원은 인가된 병원의 93%(2004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병원이 4%, 영리 민간병원이 3%를 차지
- 비영리 민간병원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1990년 2개에서 2004년 26개로 증가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영리민간병원은 증가하여 20개 이상의 병원이 인가를 받았으며, 영리민간병원은 예약진료, 특히 통원진료(outpatient surgery)에 특화하고 있음(의료활동의 78% 차지).
- o 영리민간공급자가 공공공급자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들 병원은 공공 및 비영리병원의 경쟁적 벤치마크(benchmark) 역할을 하고 혁신에 기여함.
 - 또한 이들은 방사선검사 및 임상실험을 통한 진단, 외래진료를 위한 대기시간 절감과 병원서비스의 대기행렬 단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26개의 민간병원서비스 공급자가 있으며, 35개의 임상실험 및 x-ray 서비스 공급자가 있음.

3) 외국인환자 위주 영리병원 운영국가

- 싱가포르, 태국, 인도는 국부창출 산업으로 의료산업을 국가가 중점 육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1980년 제정된 “민간의료기관에 관한 법률(Private Hospital and Medical Clinics Act)”에 의해 민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음.
- o 영리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병원이 많은데 내국인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 태국의 영리병원은 싱가포르 영리병원과는 달리 대규모 종합병원이며, 의료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o 높은 의료의 질,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갖추면서 낮은 의료비로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인환자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임.
- o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싱가포르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태국으로 유입되는 아시아 인근 국가의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o 2002년 기준으로 전체병원 중 24.6%가 민간영리병원이며, 대부분 외국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방콕 시내 소재의 대형병원들임.
 - 세계 10대 병원 중 하나인 뽀뽀뽀뽀뽀뽀(Bumrungrad Hospital)과 방콕병원(Bangkok Hospital)이 유명한 영리민간병원임.

<표 7> 태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유형태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	공공병원	민간영리병원
병원 수	997	752	248
(비율)	(100.0)	(75.4)	(24.6)
병상 수	106,837	84,401	22,436
(비율)	(100.0)	(79)	(21)

자료 :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2.

- 인도는 싱가포르, 태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영리병원(전체 병원 5,097개의 3.0%)은 공공병원에서 장기간 대기 완화와 외국인 환자나 상류층과 중산층의 고급의료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영리병원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투자개방 및 외국자본 유입에 따라 건립된 민간병원은 낮은 생산비용과 첨단의료기술을 접목하여 늘어나는 외국인환자 진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마. 영리 및 비영리병원 성과 비교

- ☑ 전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적 수준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일관된 경험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음.

(1) 의료의 질

- 의료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실제 의료기관별 분석에 비해 전반적 조직형태 수준(영리병원, 비영리병원) 및 국가 간 비교는 더욱 미약한 상태임.
- 긍정적 평가
 -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 영리의료법인 병원설립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수렴현상이 일어나 영리의료법인병원의 경영효율성과 부유층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영리법인 병원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음.

- 관리의료가 미국의료를 지배하면서 비영리병원들도 관리의료의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수익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리활동을 수행하였음(Busse, 2002).
- o 대학병원 등 대형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이 낮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음(이근찬, 2005, 재인용).
- o 미국의 연구사례를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영리병원, 민간비영리병원간의 의료의 질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Sloan, 2000).
- o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 Co.)가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병원 비교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7대 영리의료법인병원의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전체 미국병원의 평균수준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질적 수준을 가짐으로서 시장점유를 확대했다고 평가함.
- o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주로 비영리의료법인이나 공익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o 일본은 2000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부분에 영리의료법인병원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새로운 직종(가사도우미, 사회복지사, 서비스관리자)이 생겨나고 있음(전형준, 2007, 재인용).

□ 부정적 평가

- o 매클레란과 스테이거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치료에 있어 비영리민간병원이 영리민간병원에 비해 성과가 평균적으로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음(전형준, 2007, 재인용).
-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비영리민간병원과 영리민간병원의 환자들을 비교하여 영리민간병원의 환자가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o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전환 후 1~2년이 지나면 병원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반면 환자사망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그러나 전환 2년 후부터는 의료의 질적 수준하락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Gabriel, 2002).
- 영리병원에서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러한 질적수준 하락은 발견되지 않았음.

(2) 의료비용 지출

- ☐ 의료비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전반적 조직형태 수준(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국공립병원) 및 국가 간 비교는 더욱 미약한 수준임.
- ☐ 긍정적 평가
 - o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높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영리병원은 입원환자당 정규직원수가 적고 평균입원기간이 짧음.

<표 8> 병원 운영형태에 따른 경영지수(미국 급성기의료병원)

구분	평균 입원일수	평균 병상수	병상당 퇴원자수	총운영비대비 노동비 (%)	입원환자당 정규직원비용
지방자치단체운영병원	4.17	59	29.91	51.69	5.25
비영리의료법인병원	4.73	150	38.21	51.98	5.13
영리의료법인병원	4.69	118	31.73	43.57	4.46

자료: Result of financial analysis survey carried out by Health Care Investment Analyst and Deloitte & Touche on Hospital through the US(1996)

- o 독일의 경우는 영리의료법인병원의 평균입원일수가 공공병원과 비영리민간병원에 비해 약간 길지만 입원환자당 일일비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리의료법인 병원과 비영리의료병원 간에 병상수와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영리의료법인 병원의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입원환자당 일일비용은 100병상당 의사수 및 간호사수가 영리민간병원에서 가장 적기 때문임.

<표 9> 병원운영 형태에 따른 비용(독일)

구분	공공병원	비영리민간병원	영리민간병원
100명상당 의사수	23.4	16.1	14.2
100명상당 간호사 및 도우미수	63.2	29.6	50.8
평균입원기간	9.6	9.7	10.1
병상이용율(%)	82.1	79.9	79.4
입원환자당 총비용(마르크)	6,376.56	5,568.98	5,578.18
입원환자당 일일비용(마르크)	592.62	468.12	408.32

자료: Statistics Bundesamt's data for 2000

□ 부정적 평가

- 영리병원의 부분적 성공은 손실가능성이 큰 의료서비스를 외면한 채 부유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윤이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영리의료법인은 손실이 나는 의료서비스를 외면한 채 재활의료, 선택진료, 성형외과, 심장치료 등 이익이 많이 나는 의료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임.
- 실버만 등의 미국 사례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Elaine et al, 1999).
- 캐나다의 경우 영리의료법인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지만 의료의 질적 수준은 하락했다는 주장이 있음(전형준, 2007).

3.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형태와 보험회사 진입방안

가. 영리의료법인 허용형태

-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급자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과 대외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도입형태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음.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전문가법인형태(Professional Corporation)

- 국내 법조계의 법무법인과 같은 형태로서 상법상의 회사형태로는 합자회사형태를 예상할 수 있음. 사원을 의료인으로 한정한 의무법인형태일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경영참여를 방지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비의료인의 자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과 장비 투자가 곤란하며, 전체사원이 무한책임(법무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분쟁사고 발생시 전체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됨)을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비의료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인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의료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상한선(예시:50%)을 두는 것이 바람직

2) 지분있는 의료법인형태

- 일본의 '지분있는 의료법인'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실제로 일본의 경우 출자자는 지분에 따라서 재산 청산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잉여금의 배당을 금하고 있어 비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개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도입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상법상의 회사형태

- 상법상 회사형태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예상해 볼 수 있음.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4가지가 있는데 동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주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출현이 예상됨.
-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 대기업(대그룹 또는 제약회사 유관기업 등)의 의료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사진 중 의사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예상됨.
-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수익구조의 다각화와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보험회사의 병원업 진출이 고려될 수 있음.

4) 간접투자형태

- 간접투자펀드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료부문의 대표적인 간접투자방법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방식인 리츠(REITs)가 있는데,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나 투자사를 의미
- 이 밖에 최근 의료간접투자방식으로 3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private fund),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트(public fund) 및 소수투자자가 경영권의 참여 등의 통해서 병원가치를 높이는 방식인 사모투자회사(private equity fund;PEF)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음.

나. 보험회사의 병원업 진출 필요성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상환제를 택하고 있어 민간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의료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와 연계한 의료네트워크란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질 그리고 진료비지급방법 및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네트워크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다 낮은 보험료 혹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 유리한 점이 있음.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네트워크는 계약관계에 따라 전통형(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계약형(contractual), 통합형(integrated)으로 구분
 - 전통형 보험은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와 진료수가, 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피보험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의 보험으로 의료서비스공급은 상환제로 운영(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이 이에 해당)
 - 계약형 보험은 보험자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공급자와 진료수가, 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대해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보상(제3자지불방식)하는 체계의 보험(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이에 해당)
 - 통합형 보험은 보험자가 제휴 병원·의료공급자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소유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모든 범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보건의료의 재원조달과 의료공급을 하나로 결합한 것
- 민영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PPO와 HMO는 관리의료(managed care) 형태의 민영의료보험을 제공하며,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개입하여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관리
 - HMO가 보험회사 주도의 관리의료로서 의료공급자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공급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된 PPO방식이 1980년대 개발되었음.
- 미국에서 근래 출현하고 있는 통합의료네트워크(integrated delivery system)는 관리의료를 위해 급성기병원, 의사조직, HMO나 PPO 등 민간보험회사, nursing home, 외래수술센터, home care agency 등을 통합한 조직 형태의 발전된 네트워크 모델임.
 - 규모의 경제로 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료제공 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의료비 지급자와의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의료공급자들이 제휴관계를 이룸.

- 의료공급자만으로 통합된 시스템도 있으나, 의사들과 병원, 보조시설과 통합된 시스템, 보험자 역할을 포함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임상-수직적으로 결합한 통합형 의료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병원과 보험사, 고객과 국가의 모든 측면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병원의 경우 경영정보, 교육 훈련, 의료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으며, 환자수가 증가하고 의료의 단계별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의 마케팅이 용이하고, Case Management와 Disease Mangement를 통해서 의료의 질과 양을 통제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고객의 경우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포괄적 치료가 가능할 것임.
- 통합형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필수적이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임.
- 미국에서 처음 관리의료(managed care)를 도입할 때도 의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나 시장 원리에 의해 제도를 수용하고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회사와 연계된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음.
- 보험회사가 영리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업에 진출하는 경우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통합형 의료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음.
-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한으로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 보험회사의 영리의료법인 자본참여

- ☑ 병원업을 보험회사 본체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업을 부수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보험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함.
- ☑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병원업을 인정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영리의료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
- ☑ 병원업이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향후 개정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료법인 소유나 자본 참여가 가능할 것임.

□ 현행 법률 하에서 보험회사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병원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단법인병원 은 비영리병원으로 출자금 회수와 이익 배당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여야 함.

○ 이외에도 병원업을 부수사업으로 본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보험업법 제11조(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에 의하면 병원업은 보험회사의 부수사업이 될 수 없으며, 보험업법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개설) 2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보험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

* 보험회사가 본체에서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의료기관의 개설가능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

□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에 의해 영리의료법인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나, 영리의료법인을 보험업법상의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출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보험업법상 허용된 자회사는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병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영리의료법인 자본 참여를 통하여 병원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자회사의 소유) 1항을 개정하여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병원업을 포함시켜야 함.
 - 동 시행령에는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건강, 장묘, 장기간병, 노인복지,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원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판단됨.
- *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한편 다만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영리의료법인 소유나 자본 참여도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를 포괄하는 개념
 -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보험지주와 금융투자지주를 포괄하는 개념
 - ** 여기서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함.

4. 결론 및 시사점

-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후생증대에 기여하고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법인들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통해 병원 도산을 줄이고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임.

- 의료기관의 일반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인력이 OECD 최저수준이었고 급성병상수는 과잉공급된 상태에 있지만 만성병상수는 과소공급된 상태에 있음.
 - 의료인력수의 확충이 필요하고 급성병상수의 증가 억제와 만성병상수의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자본참여를 한다면 만성병상병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의료법인병원의 경영수지 적자가 대형병원보다 크게 누적되고 있으며 영리개인병원은 경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중소의료법인에 필요한 상황.
 -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경영수지개선을 가져와 도산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됨.
 -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는 실익이 없이 대형병원의 배만 볼릴 것(메디칼투데이, 2008)”이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중소의료법인에게도 나타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 OECD 국가의 경우 중소형병원에서 가능한 MRI 클리닉, 진료센터, 민간실험실 등 전문분야에 특화되거나, 장기요양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참여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민간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의 배당금지와 출현금의 국가귀속으로 특징 지워지는 영리성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도이고, OECD 국가의 민간영리병원의 수가 증가하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인도에서는 영리의료산업을 국부창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해외사례를 볼 때는 영리법인 허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과 의료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나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 또한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찾기 어려움.
-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참여는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에 의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당장은 불가능하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 병상의 공급과잉, 낮은 국민건강보험수가로 인해 병원업 영위를 통한 고수익 창출이 어려우며, 의료산업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우호적이므로 보험회사의 병원업 진출은 정부의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과정을 보아 가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배성일, 김영숙, 태윤희, 이창중, 『국제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12.
 이근찬, 송태균, 강대욱, 이운태, 이신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3.
 조용운, 김세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2008.5.
 전창배, 윤태호, 고민창, 문성웅,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업경제연구 제 20권 제1호, 2007.2.
 의료정책연구소,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2007.12.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2006.12.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시장 개방과 국내병원 경쟁력 제고방안』, 200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보건산업백서』, 200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활성화 방안연구』, 2005.3.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감』, 각 연도.
 Busse T, Grinten Tvđ, Svensson P G. "Regula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in hospital : theory and practice", Regula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in European Health care systems, Open University Press, 2002
 Elaine M. Silverman, Jonathan S. Skinner and Elliott, S. Fisher, "The Association between For-profit Hospital Ownership and Increased Medicare Spending",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41, 1999.8.
 Gabriel Picone, Shin-Yi Chou and Frank Sloan, "Are For-profit Hospital Conversions Harmful to Patients and Medicar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3 No.3 Autumn 2002.
 Mark McClellan, Douglas Staiger, "Comparing Hospital Quality at for-profit and Non-for-profit Hospitals, NBER Working Paper 7, NBER, 1999.8.
 OECD Competition Committee,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Hospital Services, OECD, 2005.
 Sloan, F. A., "Not-for-Profit Ownership and Hospital Behaviour",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2000

경제금융 동향

1. 해외 경제

2008년 1/4분기 세계경제는 공통적으로 원유, 곡물, 철강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해 서 견인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총수요의 감소와 경기둔화, 중국에서는 총수요 증가와 고도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혼돈스러운 양면을 보이고 있음.¹⁵⁾

- 선진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부문 불안이 실물경제에도 파급되는 모습이나 중국은 견실한 공급측면의 성장으로 세계경제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2008년 1/4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0.9%(잠정치) 증가하여 전기의 0.6% 보다는 소폭 반등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장기적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고 있음.
- 200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2001년 2/4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1.0% 증가하였고, 기업고정투자도 1/4분기에 -0.2% 증가하였으며, 주거용 주택건축 투자 역시 2007년 4/4분기와 비슷한 -25.5% 성장세를 보이는 등 총수요 전반이 감소
- 한편 2007년 12월 이후 50%아래로 내려갔던 美 제조업 종합지수(ISM)가 2008년 1/4분기에는 47.8%, 1~5월까지 49.2%를 기록하여 최근 들어 생산부문이 소폭 반등
- 2007년 3/4분기에 저점(2.4%)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4/4분기 4.0%, 2008년 1/4분기 4.1%를 기록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

15) 원유가 상승은 추가적 공급여건이 여의치 않고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증가,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리인하로 비롯된 유동자금이 유입되어 투기수요를 유발한 것이 주원인이며,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 상승은 중국수요의 증가와 원가상승이, 곡물의 경우는 대체에너지원료 수요와 투기수요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은 2008년 1/4분기의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20.6% 증가, 수출이 전기대비 21.4% 증가 하는 등 총수요측면은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16.4% 증가하는 등 공급측면이 성장하여 2008년 1/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0.6% 상승
 - 반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006년 1.5%, 2007년 4.7%, 2008년 1/4분기 8.0%까지 급격히 치솟음에 따라 중국 국내물가 상승의 수출물가 전이가 예상
- 일본경제는 2008년 1/4분기는 연율환산 설비투자(4.8%→0.7%), 정부지출(3.4%→-1.7%)이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가계소비(1.5%→3.3%)와 건설투자(-31.9%→19.5%)가 증가하고 수출(10.8%→17.1%)이 증가함으로써 총수요의 감소를 만회
 - GDP는 2006년 2.4%, 2007년에 2.1% 증가하였고 2008년 1/4분기에 전분기대비 0.8% 증가(연율 3.3%)함으로써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나 연초의 불륨버그 예상치인 2.5~2.6%보다는 양호
 -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0.1%)성장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2008년 1/4분기 급반전(0.9%)하여 소비지출 규모를 상승시킴.
- 유로지역 경제는 2000년부터 성장세로 진입하여 2006년 2.8%의 최고 GDP증가율을 달성한 이후 2007년 2.6%, 2008년 1/4분기 2.15%(연율) 증가하는 등 경기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시현
 - 2008년 1/4분기 생산(0.7%), 소비(0.2%), 수출(5.4%)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2007년 3/4분기 1.9%, 4/4분기 2.9%, 2008년 1/4분기 3.4%를 기록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연간	2/4	3/4	4/4	연간	1/4
미 국	3.3	3.8	4.9	0.6	2.2	0.9
중 국	10.7	11.9	11.5	11.2	11.4	10.6
일 본	2.4	-0.6	0.3	0.6	2.1	0.8
유 로	2.8	0.3	0.7	0.4	2.6	0.8

주 : 미국 전기비연율, 중국 동기비, 일본·유로 전기비
 자료: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8. 6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6	2007				2008
	연간	2/4	3/4	4/4	연간	1/4
개인소비지출	3.1	1.4	2.8	2.3	2.9	1.0
주거건축투자	-4.6	-11.8	-20.5	-25.2	-17.0	-25.2
산업생산	3.9	3.5	3.6	-1.0	2.1	-0.2
소매판매	6.2	1.3	0.9	0.9	4.0	0.1

주 : 소비지출·건축투자 전기비연율, 생산·판매 전기비.
 자료: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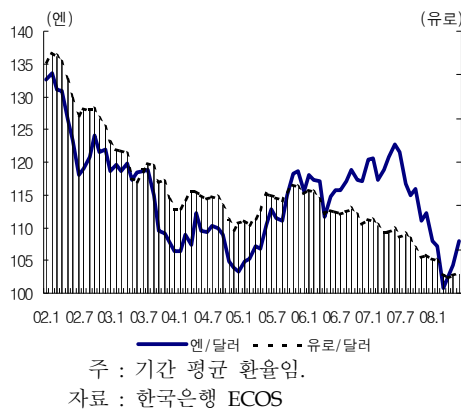
<표 3> 2008년 주요국 증시지수 변동

	기준일/연말 대비	현재/기준일 대비		기준일/연말 대비	현재/기준일 대비
韓 KOSPI	-15.6%	6.9%	佛 CAC40	-18.4%	-1.8%
美 DJIA	-10.6%	-0.9%	日 Nikkei225	-20.0%	13.1%
美 Nasdaq	-17.3%	7.8%	中 상해종합	-24.7%	-29.3%
英 FTSE100	-13.0%	1.0%	대만 가권	-2.8%	-5.2%
獨 DAX30	-20.0%	2.2%	홍콩 항셱	-18.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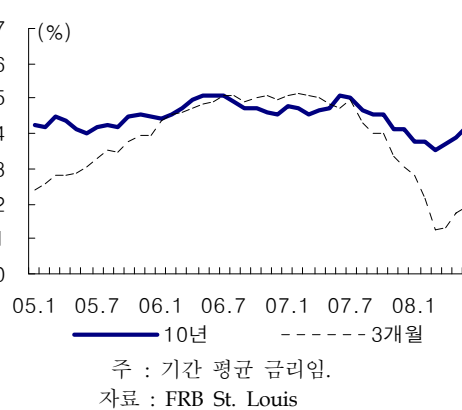
주 : 기준일은 2008년 3월14일, 연말은 2007년 12월28일, 현재일은 2008년 6월24일

- 2008년 3월14일 미국의 Bears Sterns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 이후 주요국 증시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글로벌 금융불안 해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구제금융 전까지는 각국의 주가지수가 연말에 비해 두 자리 숫자의 하강추세를 보여준 반면 이후에는 상해종합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호전되거나 횡보하는 추세
- 2008년 1/4분기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3개월 만기 국채는 2007년 2월(5.16%) 부터 2008년 3월(1.28%) 까지 인하된 후 2008년 6월말 1.90%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달러화 가치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음.
- 2006년 1월부터 최고점에 도달한 2008년 4월까지 30% 절상된 유로화는 그 이후 1.25% 절하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최고점에 도달한 2008년 3월까지 21.6% 절상된 엔화는 그 이후 7.1% 절하됨.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2. 국내 경제

2008년 1/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지역의 다변화와 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물가상승 압력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선진국경제에서 보이는 경기둔화의 모습과 물가상승압력의 국내전이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¹⁶⁾

□ 2008년 1/4분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총수요는 최근래 기간 동안 최저점을 형성하는 등 부진한 모습 시현

-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4.8%)를 국지적 정점으로 하여 하락추세이며 2008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에 그쳐 2005년 1/4분기(1.6%)이후 최저를 기록
 - 2008년 1/4분기 소비재판매 중 전년동기대비 승용차(9.5%) 등 내구재(8.2%)와 준내구재(5.4%)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으나, 비내구재(4/4분기 4.0%→1/4분기 1.5%)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소비재 판매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4/4분기 4.5%→1/4분기 3.9%)
 - 업체별로는 전년동기대비 백화점(4.3%)과 대형마트(7.3%)의 판매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전문상품소매점(4/4분기 4.4%→1/4분기 1.6%)의 판매는 감소

<표 4> 소비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CY2006	CY2007			CY2008	
	연간	3/4	4/4	연간	1/4	4월
소비재판매	4.1	7.1	4.5	5.3	3.9	5.8
- 내구재	11.2	10.1	6.2	10.8	8.2	15.3
승용차	6.9	4.1	3.9	6.8	9.5	19.4
- 준내구재	3.0	3.2	1.8	2.6	5.4	-1.0
- 비내구재	1.7	7.1	3.4	3.5	1.5	4.3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16)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5.7%)와 비슷한 5.8%를 기록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2007년 4/4분기(1.6%)의 절반 수준(0.7%)으로 하락하면서 경기둔화의 심화를 예고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표 5> 투자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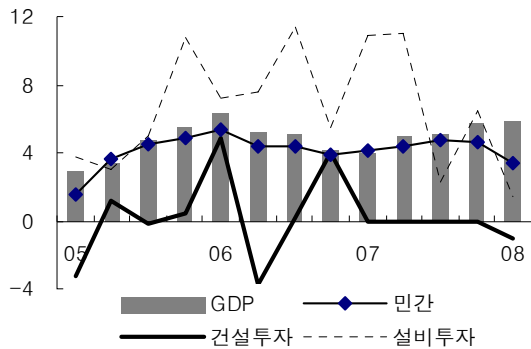
	CY2006	CY2007			CY2008
	연간	3/4	4/4	연간	1/4
설비투자	7.8	2.3	6.5	7.6	1.4
- 기계류	8.2	1.0	7.0	7.6	-0.9
- 운수장비	6.0	8.9	4.0	7.7	12.3
* 국내기계수주	18.9	14.7	30.0	17.0	19.3
건설투자	-0.1	-0.1	0.4	1.2	-1.1
- 건물건설	-0.7	1.8	2.2	1.8	-0.3
- 토목건설	0.7	-2.9	-1.8	0.3	-2.5
* 건설수주	9.0	-5.6	29.5	19.3	-3.9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0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이며 2004년 1/4분기(-0.1%)이후 최저점을 형성
 - 2008년 1/4분기 운수장비(12.3%)는 크게 늘어났으나, 반도체장비를 포함한 기계류(-0.9%)가 크게 감소하였고,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2008년 1/4분기 국내기계수주(19.3%)가 전분기대비 10.7%p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2008년 2/4분기 설비투자는 계속 부진할 전망
- 200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2004년 2/4분기(-3.8%) 이후 최저점(-1.1%)을 기록하였고 최근의 0% 성장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 시현
 - 건설투자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액은 2008년 1/4분기 -3.9%를 기록하여 2008년 2/4분기에도 건설투자부문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1/4분기 해외부문 수요를 보면 수출은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금속 등의 수출증가로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의 증가를 압도하는 수입의 증가로 2007년 12월부터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55.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해외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가 지속되는 양상
- 2008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994.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품목별로 전년동기대비 석유제품(62.5%), 화공품(22.5%), 철강·금속(11.3%)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18.4%)와 일본(12.4%)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오히려 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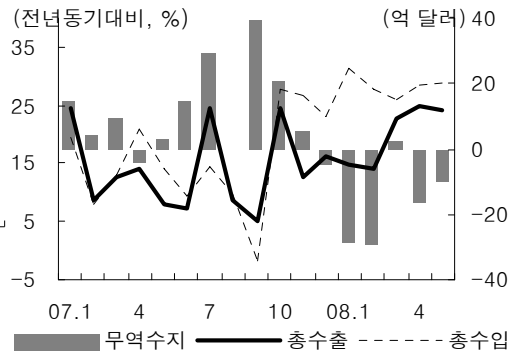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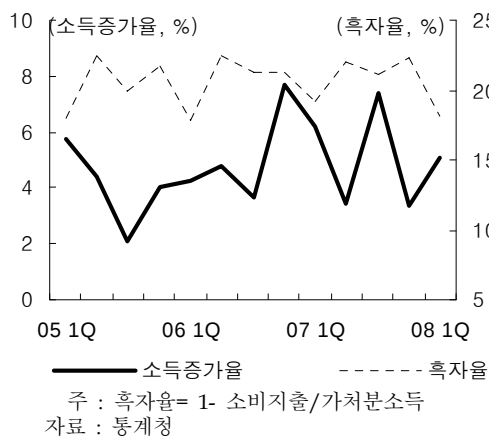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 2008년 1/4분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한 1,054.8억 달러를 기록 하였고 원유(59.8%), 철강·금속(29.2%) 등 원자재(39.3%)의 증가가 주목되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분기대비 각각 7.75p, 9.7%p 감소
- 2008년 1/4분기 공급측면에서는 광공업생산은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두 자리 수의 성장을 시현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성장세가 둔화됨(2007년 3/4분기 7.2%→6.8%→2008년 1/4분기 6.3%).
- 2008년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내수(5.2%)보다는 수출호조(14.5%)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 수자로 증가(10.5%)하였으나, 출하(8.8%)가 생산의 증가에 못 미쳐서 재고가 9.4% 증가
- 2008년도 1/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수로 증가한 금융·보험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타 업종의 성장속도 감소로 전분기 대비 소폭(0.5%p) 감소
- 업종별로 숙박(2.9%→3.1%), 부동산(-3.5%→5.8%), 교육서비스업(1.4%→3.1%)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보험업(19.5%→15.2%), 도소매업(5.2%→3.9%), 운수업(8.1%→7.7%), 통신업(6.3%→4.8%) 등은 전분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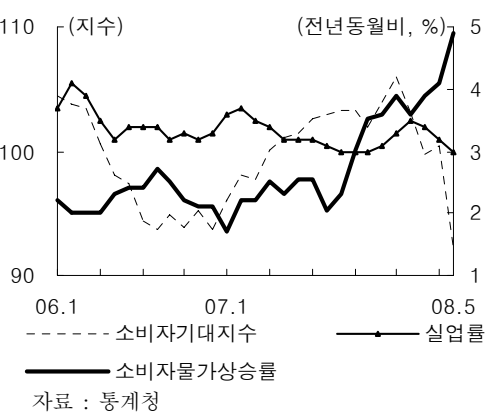
경기하강세 징후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업제품가격 상승이 발견되며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물가불안이 커질 것으로 전망

- 2008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확대되어 20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동 기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 200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부문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0.4%→2.1%)한 반면 농축산물 및 공업제품을 포함하는 상품부문의 소비자물가는 예년수준(0.9%→1.4%)을 시현
 - 그러나, 2008년 4월~5월에는 전월대비기준 석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3.1%→7.4%) 따라 공업제품가격이 높게 오르고 있으며(1.2%→2.1%) 전년동기대비 기준 소비자물가는 1/4분기 3.8%에서 5월말 4.9%로 생산자 물가는 1/4분기 6.9%에서 5월말 11.6%로 급격히 상승
- 2007년 1/4분기 이후 상승추세를 견고히 하여 경기상승을 예견해준 소비자기대지수가 2008년 1월(105.9)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 5월말 92.2를 기록하면서 경기하강세에 대한 징후를 발신함.

<그림 5> 도мага계 소득, 흑자율



<그림 6>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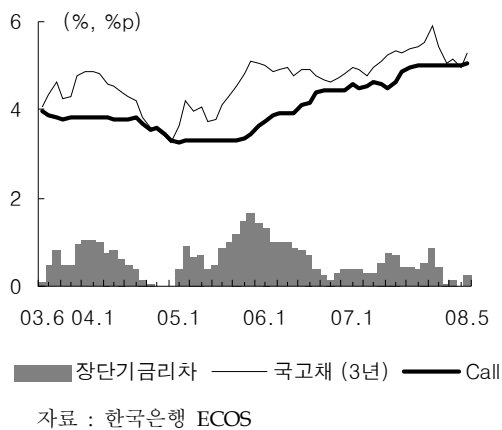
- 2008년 1/4분기 실업률은 3.4%로서 2007년 4/4분기(3.0%)에 비해 증가하여 고용의 부진이 가속화.
-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이 증가했으나 전분기(28만명)보다는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07년 4/4분기의 19만명보다 8만명이 증가하여 27만명을 기록
- 2008년 1/4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2백95만7천3백원으로 2007년 4/4분기보다 11만2천5백원이 증가함.
- 2008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53만8천2백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고 2007년 4/4분기 보다 8천8백원이 줄어듦.
-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 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흑자율은 2008년 1/4 분기에 18.2%로서 전년동기대비 1.0%p감소하였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4.2%p 감소

3. 금융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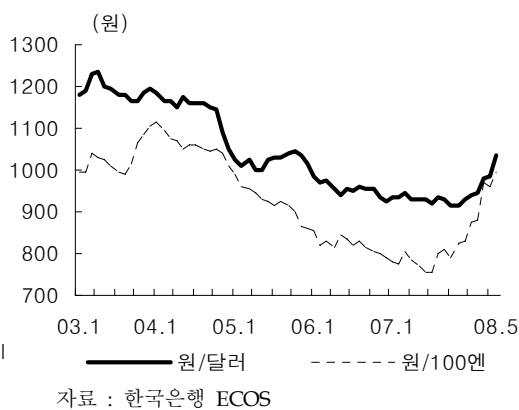
2008년 들어서서 경기하락 징후가 보이면서도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원/달러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되자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기대에 따라 금리가 변동함.

- 경기하락의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채권시장은 2008년 1/4분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국고채금리 등이 기준금리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고채금리가 다시 반등
- 국고채(3년 만기)금리는 2008년 1월초에 최고수준(5.9%)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하여 4월중에 콜금리 수준(4.99%)을 하회(4.98%)하였다가 5월 들어 반등(5.28%)
- 회사채(3년 만기, 우량물)도 2008년 1월초에 7.01%에서 4월중에 5.91%까지 하락하였다가 5월 들어 반등(6.22%)
- 국고채 및 회사채금리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4분기 중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08년 1/4분기에 경기하락이 본격화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었기 때문

<그림 7> 장단기 금리 추이



<그림 8> 원화 환율 추이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5월 금리(5.28%)는 국고채를 중심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정책금리의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큰 폭 상승
 - 다만, 5월 27일의 1조원 규모 국고채 바이백 입찰이 호조 속에 5.01%~5.14%사이에서 매매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상승폭은 축소
 - 국고채금리의 단기급등(혹은 채권가격의 하락)은 채권매수 수요증가를 낳고 이로 인한 국고채 금리 하락(혹은 채권가격 상승)으로 금리상승폭이 축소

외환시장 역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우리나라의 달러수요를 증가시켰으며 미국이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금리를 상승시킴에 따라 원/달러 상승기조가 이어짐.

- 2008년 들어 5월까지 외환시장은 고유가에 따른 정유사의 달러결제 수요 증가, 주식시장변동으로 인한 외국인 주식매매금 달러인출의 증가, 미국의 금리 상승에 힘입어 달러에 대한 원화의 약세기조가 시현되었으며 이러한 원/달러 상승은 원자재발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국내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물가를 고려한 환율정책 등으로 약세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03년 이후 달러에 대한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원화가 2007년 10월(915.86)을 기점으로 약세기조로 전환하였고, 2008년에 들어와서는 약세기조가 심화되어 1/4분기 평균 956.2원, 5월말 현재 1,036.73을 기록하여 1월초(936.9원) 대비 원화가치는 9.63% 하락
- 원/100엔은 2007년 7월(755.57원)을 기점으로 엔화에 대한 원화의 기조가 약세로 전환하였고, 2008년 들어와서 약세기조가 심화되어 2008년 3월말 972.3원, 5월말 현재 994.18원을 기록하여 1월초(872.92원) 대비 원화의 가치는 12.2% 하락
 - 엔화는 2008년 3월17일 달러당 97.39엔으로 1995년 10월(99.03엔)이래 최고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후 원화의 약세가 뒤따름.

- 2008년 들어서서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관련된 신용위기와 고유가에 영향을 받아 경색되었으나, 미국의 FRB의 구제금융 긴급자금 투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
- 코스피지수는 2007년 10월 11일 기록적인 수치(2,058.85)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월 30일(1,589.06)과 엔/달러가 최저점을 기록한 3월17일(1,574.44) 국지적 최저점을 통과하였으며 6월 25일 현재 1,717.79를 기록
 - 코스피지수는 2007년말(1,897.13) 대비 2008년 3월말(1,703.99) 현재 10.2% 감소하였고, 코스닥지수는 2007년말(704.23) 대비 2008년 3월말(644.45) 현재 8.5% 감소
 - 2008년 1/4분기 동안 국지적 최저점을 통과한 주가지수는 서브프라임모기지과 관련된 신용위기 우려감이 완화되고 미국기업의 1/4분기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4월 이후 뉴욕증시 회복에 발맞추어 반전
 - FRB의 구제금융 긴급자금 투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
 - 2008년 들어 최고치(1888.9)에 도달한 5월 16일 이후 국내증시는 美주택가격 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가능성 대두 및 고유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주가지수도 동반 하락

<표 6>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93,699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108,974	85,391
- 생 보	74,238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64,517
- 손 보	19,461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24,705	20,874
은 행	225,384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214,006
- 일 반	183,429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142,969
- 신 탁	41,955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71,037
증 권	18,650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6,184
투 신	-5,011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269,007	377,948
총 금	31,812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34,881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2008년 1/4분기 은행 수신은 실질금리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 실세총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및 양도성 예금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투신권은 주식형 및 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단기성 안정지향 대기자금으로 자금이 이동하였으며, 보험은 보험금지급률이 증가하면서 전체 순수신은 감소
 - 2008년 1/4분기에 콜금리와 소비자물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1월 1.1%→1.39%→3월 1.09%)에 3월말 현재 요구불예금(-11,906), 저축성예금(-54,986), 양도성예금(-9,761) 모두 순수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한편, 4~5월에 경기하강을 고려하여 금리가 인상되면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비자물가가 4.9%대까지 급격히 치솟게 되자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자금은 실세총예금에서 이탈이 가속화 되어(4월대비 -34.4%) 은행의 단기고수익 보장을 통한 자금조달원인 양도성예금으로 모이는 것으로 나타남(4월대비 24.2% 증가).
 -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2008년 1/4분기 투신권의 자금흐름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혼합형(-34.9%)펀드와 주식형(-42.5%)펀드는 감소한 반면 채권형(124.1%)펀드와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MMF(383.3%)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순수신이 증가(40.5%)
 - 1/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은 전분기의 마이너스 고객예탁금이 플러스로 돌아섬에 따라 전분기대비 101.7% 증가하고 환매조건부채권은 전분기대비 감소(-69.0%)하면서 전체 순수신은 145.5% 증가
 - 전년동기대비 전체 증권사 순수신은 79.3% 감소
 - FY2007 4/4분기(CY2008 1/4분기) 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순수신이 23.4% 감소하였고, 손해보험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15.5% 감소하여, 전체 보험시장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1.6% 감소

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7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최근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성장하여 처음으로 100조원을 상회하는 109조774억원을 달성하였고, 변액보험의 성장이 뚜렷한 생명보험은 2년 만에 두 자리 수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해 손해보험은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

- FY2007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세(FY05 13.3%→FY06 10.1%→FY07 13.6%)를 유지하여 FY2007년 109조774억원을 기록하였고, 생명보험은 75조956억원(13.0% 성장), 손해보험은 33조 9,818억원(14.9% 성장)을 기록함.
- FY2007년 생명보험은 2년 만에 두 자리 수로 성장하였고,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 추세는 최근 4년 동안(FY2004년~FY2007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구성비 측면에서는 변액보험의 성장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FY04 4.4%→13.6%→17.3%→FY07 23.2%)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FY2004년~FY2007년) 동안 매년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종목은 변액, 단체, 생존, 사망보험이며, 생사혼합은 지속적으로 감소
- FY2007년 손해보험은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성장했으며,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 추세는 최근 4년 동안(FY2004년~FY2007년) 보증보험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구성비 측면에서는 장기보험의 성장이 뚜렷한(FY04 41.5%→43.8%→46.2%→FY07 48.1%) 반면, 자동차보험의 구성비는 감소(FY04 36.7%→34.2%→32.6%→FY07 31.8%) 추세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험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FY2004년~FY2007년) 동안 매년 원수보험료가 늘어난 종목은 장기, 자동차, 특종보험 등이며 화재보험은 감소하였고 보증보험은 변동이 심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2.6	6.8	8.1	10.8	13.3	19.7	7.7	13.0
손해보험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12.3	18.3	15.0	14.5	12.9	18.3	13.6	14.9
합 계	258,177	247,856	960,378	253,485	258,072	307,876	271,342	1,090,774
	5.4	10.1	10.1	12.0	13.2	19.2	9.5	13.6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하였고 생명보험은 7.7%, 손해보험은 13.6% 증가하였음.

나. 총자산

FY2007년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12.5% 증가하여 350조원을 상회하는 371조4,149 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보험영업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받은 생명보험총자산은 최근 5년 중 최저 성장을 시현하였고, 투자영업과 보험영업 호조세를 보인 손해보험 총자산은 최고 성장을 시현

- FY2007년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371조 4,14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인 13.2%를 하회하는 수치임.
- 생명보험이 11.8% 성장하여 최근 5년 중 최저 성장하였으며, 이에 반해 손해보험은 전년대비 15.9% 성장하여 최근 5년 기간 중 최고 성장을 시현함.
 - 생명보험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대비 -59.7%로 악화되어 자산의 증가에 부정적 역할을 함. 또한 책임준비금 전입액 역시 전년대비 22.2% 감소하여 자산의 증가에 부정적 역할을 함.

- 주가지수가 2007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의적인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아 투자 영업수지는 양호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수지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전체수입보험료 중 94%를 차지하는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57.4%)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졌기 때문이며, 사업비율 역시 높아졌기 때문(18.5%)임.
- 주식시장의 호황 및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에 힘입은 FY2007년 손해보험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자산의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 원수보험료의 두 자리 수 성장,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의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99.2) 기록은 자산의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함.
- FY2007 4/4분기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이는 FY2007년 분기 평균인 3.0%를 하회하는 수치이며 생명보험은 전분기대비 2.7% 증가했으나 분기 평균증가율 2.83%를 하회하는 수치임. 손해보험 역시 전분기대비 3.4% 증가했으나 분기 평균증가율 3.75%를 하회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3,053,998	3,053,998
	3.9	2.8	14.1	3.5	3.1	2.0	2.7	11.8
손해보험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660,151	660,151
	5.1	2.5	15.6	4.5	3.0	4.1	3.4	15.9
합계	3,213,861	3,301,029	3,301,029	3,422,348	3,527,354	3,611,786	3,714,149	3,714,149
	4.1	2.7	14.4	3.7	3.1	2.4	2.8	12.5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3.0% 증가한 75조 956억원으로 FY2005 이후 다시 한번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경우 증시호황에 따른 변액보험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전년대비 13.4%의 성장률을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지난해 퇴직보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FY2007에는 퇴직연금 신규가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9.7% 성장하며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함.
- FY2007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변액보험의 성장으로 견인된 특별계정 자산의 빠른 증가(전년대비 33.3%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1.8% 증가한 305조 3,9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4/4분기 중 총자산 300조원 대를 돌파함.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4년 10월 200조원을 돌파한지 3년 4개월 만임.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2.6	6.8	8.1	10.8	13.3	19.7	7.7	13.0
총 자 산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2,973,394	3,053,998	3,053,998
	3.9	2.8	14.1	3.5	3.1	2.0	2.7	11.8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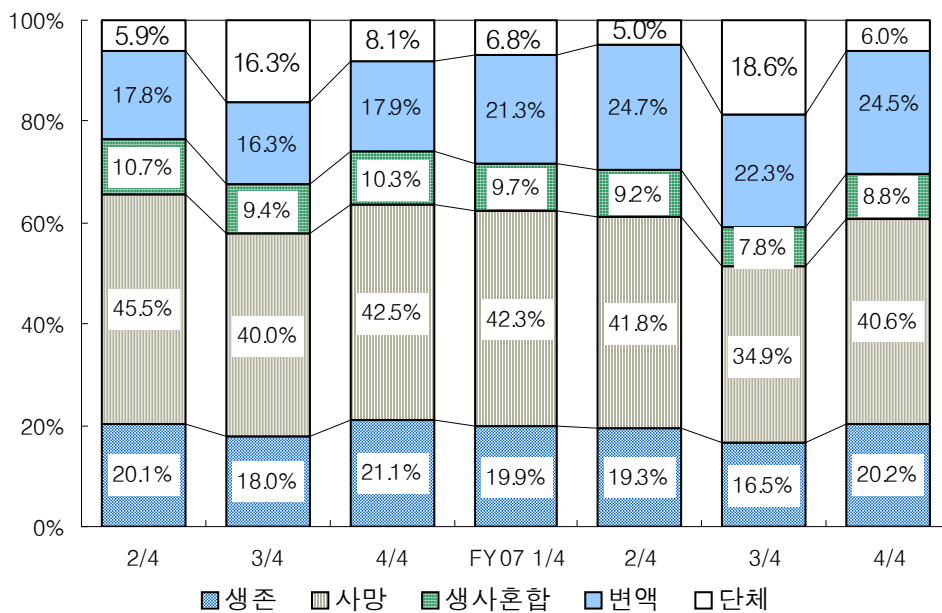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7 4/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변액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비중이 축소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우호적인 증시환경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6%p 증가한 24.5%를 기록, 지속적인 비중확대 추세를 이어감.
- 반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세 종목은 모두 비중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사망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존보험의 비중이 사망보험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함.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상대적인 증가세로 인해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 6.0%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FY2007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3.4% 증가한 67조 9,05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FY2006 9.4%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짐.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8.6% 증가한 14조 1,403억원을 나타냄.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년대비 4.2% 증가한 29조 7,7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함.
 - 사망보험 중 장기건강보험은 사망보험 내 비중은 작지만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9.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인한 저축성 상품으로서의 매력 저하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2.8%성장)를 이어갔으나 FY2006 -6.4%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개선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증시흐황에 따라 전년대비 50.9% 성장한 17조 3,9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FY2006 37.5%의 성장률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대비 각각 63.6%, 46.3% 증가한 반면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단체보험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특별계정 단체보험이 플러스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9.7% 성장한 7조 1,898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업들의 수요 감소 지속으로 전년대비 -5.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감.
 - 특별계정 중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였으나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과 맞물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특별계정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증가에 기여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37,275	141,403
	성장률	7.5	14.3	8.6	14.7	8.6	9.6	2.8	8.6
	구성비	18.0	21.1	19.6	19.9	19.3	16.5	20.2	18.8
사망	보험료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75,026	297,700
	성장률	5.8	5.3	5.3	5.8	4.1	4.2	2.8	4.2
	구성비	40.0	42.6	43.0	42.3	41.8	34.9	40.6	39.6
생사 혼합	보험료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16,193	66,043
	성장률	-6.1	0.6	-6.4	0.8	-2.2	-1.3	-8.1	-2.8
	구성비	9.4	10.3	10.2	9.7	9.2	7.8	8.8	8.8
변액 보험	보험료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45,184	173,912
	성장률	18.8	-0.1	37.5	35.0	57.2	63.6	47.1	50.9
	구성비	16.3	17.9	17.3	21.3	24.7	22.3	24.5	23.2
개인 계	보험료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173,678	679,058
	성장률	6.9	5.5	9.4	12.6	14.4	16.3	10.2	13.4
	구성비	83.7	91.9	90.1	93.2	95.0	81.4	94.0	90.4
단체	보험료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11,006	71,898
	성장률	-15.0	23.6	-2.5	-8.9	-3.7	36.9	-21.2	9.7
	구성비	16.3	8.1	9.8	6.8	5.0	18.6	6.0	9.6
합계	보험료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성장률	2.6	6.8	8.1	10.8	13.3	19.7	7.7	13.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빠른 증가세 때문으로 풀이됨.
- 상위 3개사의 연간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5.6%p 떨어진 56.7%를 나타내면서 계속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감.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23.0%를 나타냈으며,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7%p 증가한 20.3%를 나타냈으며, 같은 기간 중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5.7%p, 9.8%p 상승함.
 - 회사별 수입보험료 전년대비 성장률은 상위3사 2.5%, 외국사 28.7%, 국내중소형사 30.8%로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짐.
 - 허핀달지수는 상위보험사에 대한 시장집중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반영하여 지난해에 비해 0.0216하락한 0.1338을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62.5	60.7	62.3 (2.2)	58.4	56.3	57.7	54.3	56.7 (2.5)
외 국 사	18.7	21.0	20.1(16.7)	22.1	23.5	21.1	23.7	23.0(28.7)
국내중소형사	18.8	18.3	17.6(23.0)	19.5	20.2	21.2	22.0	20.3(30.8)
허핀달지수	0.1578	0.1486	0.1554	0.1389	0.1326	0.1372	0.1268	0.1338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8년 3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7 4/4분기 당기순이익은 준비금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수지차가 18.3%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전년대비 8.2% 증가한 2조 1,054억원을 기록함.
- 증시회황과 특별계정 수수료수입 증가로 인해 투자영업수지와 기타수지는 각각 12.2%, 64.3%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보험영업수지는 수입보험료 증가에 비해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9.7% 감소하였음.
- 또한 준비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하며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하였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383,363	520,529	133,936	266,664	403,182	542,343
	투자영업	95,061	130,924	38,289	74,675	109,810	153,452
	기타	10,746	16,807	5,067	10,422	16,583	23,099
	소계	489,175	668,260	177,293	351,761	529,575	718,894
총 비 용	보험영업	307,943	418,740	105,648	224,377	367,748	501,328
	투자영업	14,586	19,616	5,487	10,741	17,750	28,558
	기타비용	5,054	6,817	1,906	3,836	4,492	6,691
	소계	327,583	445,173	113,040	238,954	389,990	536,577
수 지 차	보험영업	75,420	101,789	28,289	42,287	35,434	41,015
	투자영업	80,481	111,308	32,802	63,934	92,060	124,894
	기타	5,691	9,989	3,162	6,586	12,091	16,408
	소계	161,592	223,087	64,253	112,807	139,585	182,318
준비금전입		144,802	197,252	53,891	94,186	116,423	153,417
법인세		4,433	6,360	2,727	4,848	6,068	7,846
당기순이익		12,357	19,475	7,634	13,774	17,093	21,054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순이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순이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7 연간 보험금지급률은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의 지급률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7%p 증가한 59.5%를 나타냈으며, 사업비율도 전년대비 소폭(0.3%p) 증가하여 18.5%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2.4%p) 증가한 41.6%를 나타냈으며 생존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11.1%p 증가한 73.8%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 보험금지급률은 단기만기 상품 만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7.7%p 상승한 155.9%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도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3.9%를 기록함.
- FY2007 신계약률은 전년대비 1.0%p 증가한 25.5%를 나타냈고, 해약률은 0.3%p 감소한 10.3%를 나타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47.7	56.5	52.8	52.2	60.2	60.9	65.1	59.5
- 생 존	62.5	61.0	62.7	60.0	75.0	84.3	75.5	73.8
- 사 망	38.4	40.3	39.2	37.4	40.3	43.8	44.6	41.6
- 생사혼합	110.4	104.3	108.2	108.4	138.5	212.5	164.3	155.9
- 변 액	20.9	26.3	18.8	30.1	35.0	38.8	30.9	33.9
- 개 인 계	48.2	49.5	48.2	47.9	55.5	66.7	58.8	57.4
사 업 비 율	17.1	19.2	18.2	17.8	18.9	17.2	20.3	18.5
신 계 약 률	17.7	24.5	24.5	5.4	11.6	18.1	25.5	25.5
해 약 률	8.1	10.6	10.6	2.8	5.4	8.0	10.3	10.3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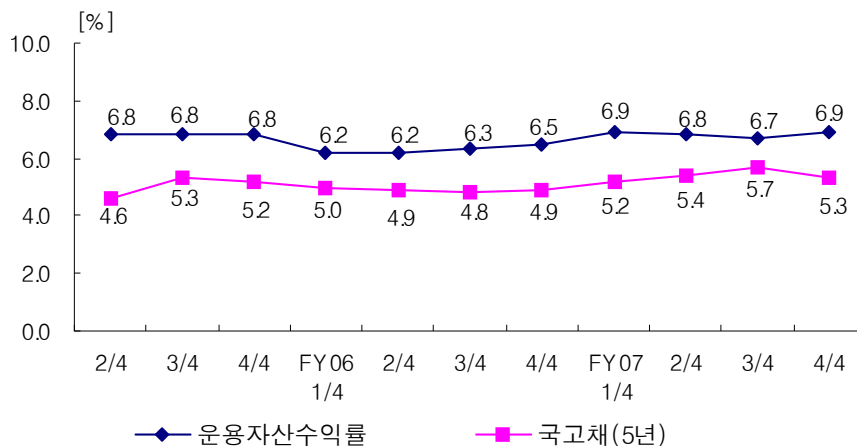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6.9%를 기록함.
- 운용자산 항목별로는 대출채권과 부동산 수익률이 모두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9.2%, 4.3%를 기록한 반면 유가증권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6.3%를 기록함.
- 호의적인 주식시장으로 인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모두 주식 및 수익증권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유가증권 수익률이 증가하였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수익률 증가도 유가증권 수익률 증가에 기여함.
- 특별계정자산 수익률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9.4%를 기록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 기준을 하였음.
 3)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투자영업수익 × 연기준 환산)
-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1	4.8	2.2	4.6	2.5	4.4	3.2	4.2	3.2	4.5
유 가 증 권	60.5	5.7	60.6	6.6	60.4	6.4	59.4	6.2	59.7	6.3
○ 단기매매증권	2.1	6.2	2.1	18.4	2.0	14.6	1.9	12.1	1.5	10.9
- 주 식	0.1	21.4	0.2	97.7	0.2	75.0	0.2	56.6	0.2	43.7
- 채권 등	1.1	6.0	1.0	11.5	1.0	9.0	0.8	8.5	0.7	8.1
- 수익증권	0.9	4.8	1.0	14.3	0.9	12.1	0.9	9.7	0.6	8.8
○ 매도가능증권	47.7	5.7	47.7	5.2	47.5	5.5	46.1	5.6	46.8	6.0
- 주 식	4.7	5.2	5.1	3.2	5.2	3.6	5.2	3.2	5.2	5.4
- 채권 등	39.7	5.7	39.2	5.4	38.5	5.5	37.1	5.7	38.1	5.7
- 수익증권	3.3	6.4	3.4	6.2	3.7	8.6	3.8	7.9	3.5	10.0
○ 만기보유증권	9.9	6.0	10.0	5.6	10.0	5.7	10.5	5.7	10.5	5.8
- 채권 등	9.9	6.0	10.0	5.6	10.0	5.7	10.5	5.7	10.5	5.8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5.4	0.9	66.1	0.9	42.0	0.9	30.8	0.9	22.7
대 출 채 권	21.6	9.3	21.7	8.8	21.8	8.9	22.7	9.0	22.6	9.2
부 동 산	4.2	4.4	4.1	4.0	4.1	4.1	4.1	4.2	4.0	4.3
운 용 자 산 계	88.4	6.5	88.6	6.9	88.8	6.8	89.4	6.7	89.6	6.9
비 운 용 자 산	11.6	2.6	11.4	3.2	11.2	2.6	10.6	2.1	10.4	3.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5.6)	6.1	100.0 (84.7)	6.5	100.0 (83.8)	6.3	100.0 (83.5)	6.2	100.0 (82.9)	6.5
특 별 계 정 자 산	14.4	6.7	15.3	15.6	16.2	13.9	16.5	11.2	17.1	9.4
총 자 산	100.0	6.1	100.0	7.8	100.0	7.5	100.0	7.0	100.0	7.0
총 자 산 규 모	2,731,316		2,827,112		2,914,092		2,973,394		3,053,998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7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임직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모두 증가함.
- 임직원의 비중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전년대비 8.1%p 하락한 14.4%를 기록하며 FY2005이후 처음으로 20%를 하회함.
 -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2.0%를 나타내었으며, 대리점의 경우 지난 1년간 대리점의 수가 14.1% 증가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보다 3.0%p 증가한 9.4%의 비중을 기록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변액보험 판매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34.2%의 점유율을 나타냈음.
 - 또한 회사별 방카슈랑스 비중은 상위3사 14.5%, 외국사 55.7%, 국내중소형사 29.9%로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22.9	24.7	22.5	12.3	11.5	19.9	11.9	14.4
설 계 사	42.8	32.8	40.1	43.0	46.6	42.2	44.9	42.0
대 리 점	6.0	6.8	6.4	8.2	10.0	11.3	9.2	9.4
중 개 사	0.1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7.7	35.7	30.7	36.5	31.8	26.7	34.0	34.2
기 타	0.5	0.0	0.1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958	26,540	88,233	23,630	26,322	31,783	49,951	107,478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7 4/4분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각 29,111명, 144,324명, 11,124개를 기록함.
- 임직원 수는 전년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설계사 수도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대리점 수는 FY2006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4.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설계사의 경우 전년대비 남성 설계사 증가율이 34.9%에 달해 여자 설계사 증가율 3.1%를 압도하였으며, 집단별로는 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의 설계사 수가 대형 3사에 비해 크게 증가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6,604	26,868	26,848	27,070	27,105	29,111
설 계 사	130,140	131,850	135,416	136,772	139,510	144,324
대 리 점	10,110	9,746	10,048	10,400	10,667	11,124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7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14.9% 증가한 33조 9,818억원을 기록하였음.
- FY2006 1/4분기 이후 20%대 전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FY2007 통합형 보험을 비롯한 상해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에서는 고급차량 증가 및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 반영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12.0%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10조원을 돌파하였음.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 및 해상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화재보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년대비 성장률은 2.6%로 미미한 성장을 보임.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5.9% 성장한 66조 151억원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증가는 장기손해보험 높은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확대에 기인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12.3	18.3	15.0	14.5	12.9	18.3	13.6	14.9
총 자 산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638,392	660,151	660,151
	5.1	2.5	15.6	4.5	3.0	4.1	3.4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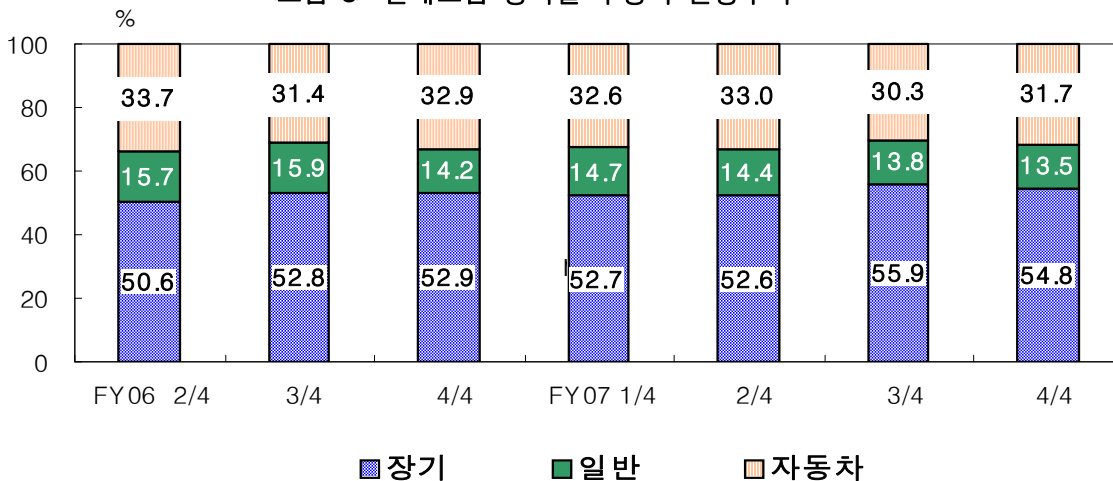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7 4/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54.8%, 자동차보험 31.7%, 일반손해보험 13.5%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 보험의 비중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전년대비 1.9%p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최근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 확대에 의해 전년대비 각각 1.2%p, 0.7%p 감소하였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0조 8,095원으로 전년대비 12.0%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FY2003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의 완만한 증가세 및 직관시장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잇단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있고, 대형차량 증가, 수입차 신규등록 증가세 등 차량의 고급화에 따른 대당보험료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FY2007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상해 및 저축성 부문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19.5% 성장한 16조 3,435억원을 기록하였음.
 -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통합형 보험이 50.1%, 상해보험이 24.8%, 저축성보험이 21.9%로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음.
 - 통합형 보험의 경우 대형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건강검진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력 상품으로 등장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책정한 중소형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반면, 질병보험은 전년대비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재물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각각 3.8%, 2.9%의 성장에 그침.
-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2% 성장, 원수보험료 대비 초회성장이 현저히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년간 급성장세를 보이던 저축성보험과 통합형보험이 손해를 상승 및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로 판매촉진 활동이 위축되어 성장세가 주춤하게 된 것임.
- FY2007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075억원으로 보험요율 인하 및 건설·투자부문의 성장 둔화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3.1% 성장한 6,518억원을 기록하였음.
 - 선박보험을 비롯한 적하보험은 전년대비 각각 10.2%, 8.3%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운송 및 항공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FY2007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3.0% 감소한 9,940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행보증이나 상품대금신용보험 등 전통적 보증보험영역에서는 원수보험료 6,921억원으로 16.7% 성장하였으나, 부동산담보대출인정비율(LTV) 관리 강화와 이동통신요금의 통신사 자체 채권관리로 모기지신용보험(MCI) 등 신용보험영역의 원수보험료가 1,370억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9.0% 성장한 2조 7,245억원을 시현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902	758	3,132	743	679	878	775	3,075
	성장률	-1.2	-3.5	-3.4	-1.8	-5.2	-2.6	2.3	-1.8
	구성비	1.2	1.0	1.1	0.9	0.8	1.0	0.9	0.9
해 상	보험료	1,304	1,314	6,323	1,735	1,783	1,486	1,514	6,518
	성장률	1.9	10.9	19.9	-17.4	11.2	13.9	15.2	3.1
	구성비	1.7	1.7	2.1	2.2	2.2	1.6	1.7	1.9
자동차	보험료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27,444	108,095
	성장률	9.4	13.6	9.8	14.3	10.6	14.1	9.3	12.0
	구성비	31.4	32.9	32.6	32.6	33.0	30.3	31.7	31.8
보 증	보험료	3,073	2,718	11,428	2,424	2,341	2,602	2,573	9,940
	성장률	10.1	3.4	13.5	-18.4	-12.2	-15.3	-5.3	-13.0
	구성비	3.9	3.6	3.9	3.1	2.9	2.8	3.0	2.9
특 종	보험료	6,813	5,872	24,987	6,584	6,728	7,455	6,478	27,245
	성장률	8.8	14.0	9.1	7.2	9.2	9.4	10.3	9.0
	구성비	8.7	7.7	8.4	8.3	8.2	8.1	7.5	8.0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78	184	823	191	254	298	383	1,126
	성장률	69.9	6.4	35.2	22.4	23.9	7.1	108.7	36.8
	구성비	0.4	0.2	0.3	0.2	0.3	0.3	0.4	0.3
장 기	보험료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43,308	163,436
	성장률	21.2	23.9	21.5	22.4	19.5	19.6	16.8	19.5
	구성비	44.7	48.6	46.2	48.7	48.8	45.2	50.0	48.1
개 인 연 금	보험료	2,119	2,136	7,975	2,265	2,388	2,629	2,713	9,995
	성장률	18.5	19.4	14.3	23.4	26.8	24.0	27.0	25.3
	구성비	2.7	2.8	2.7	2.9	2.9	2.9	3.1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4,216	1,149	7,868	892	724	7,303	1,471	10,390
	성장률	-18.3	52.8	2.1	-21.2	-47.2	73.2	28.1	32.1
	구성비	5.4	1.5	2.7	1.1	0.9	7.9	1.7	3.1
계	보험료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성장률	12.3	18.3	15.0	14.5	12.9	18.3	13.6	14.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o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보험은 기업성보험의 성장 감소로 0.7%의 성장에 그친 반면,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의 실적 호조로 19.0%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기술보험은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성장세 부진을 조립보험의 성장세 확대에 극복하여 5.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책임보험은 전체적으로 1.8% 성장하였음.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중소형사 장기보험 위주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증가로 인해 대형사의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축소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9%p 감소한 70.1%로 나타났으며,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 감소로 점유율은 전년대비 1.0%p 축소되었음.
- 반면, 장기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활성화로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1.3%p 성장한 3.7%의 비중을 차지
- 외국사의 경우 FY2006 1.4%에서 0.1%p 상승한 1.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폭의 성장세를 보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0.1487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70.9	71.0	71.0(15.1)	70.6	70.7	70.4	70.1(13.0)
	일반사 계	94.5	94.6	94.6(15.4)	95.4	95.5	95.5	95.9(15.4)
	온라인단종사	2.8	3.0	3.0(46.9)	3.5	3.6	3.6	3.7(43.5)
	전 업 사	4.1	4.0	4.0(13.5)	3.1	3.0	3.0	3.0(-13.0)
	외 국 사	1.4	1.4	1.4(36.2)	1.5	1.5	1.5	1.5(23.4)
허 핀 달 지 수		0.1532	0.1531	0.1531	0.1507	0.1518	0.1503	0.1487

-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교보AXA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알,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7개사임.
-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 3) 누적기준 실적치이며, ()는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 있어서는 보험영업이익이 -2,1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FY2007의 투자영업이익 흑자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6,021억원 늘어난 1조 6,69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상승 등 자산운용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2조 6,698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높은 보험료 성장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한 31조 2,32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비용이 14.5% 증가한 31조 4,449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2,1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94,983	266,230	73,382	149,896	229,715	312,320
	투자영업	19,984	28,556	9,213	18,494	27,232	36,296
	기타	10,778	12,747	910	1,395	10,463	12,939
	소계	225,745	307,533	83,505	169,785	267,410	361,555
총 비 용	보험영업	201,481	274,656	72,948	150,095	230,111	314,449
	투자영업	4,778	6,161	1,988	3,841	5,556	9,598
	기타비용	8,617	10,543	1,387	2,109	11,656	14,217
	소계	214,876	291,360	76,323	156,046	247,323	338,264
수 지 차	보험영업	-6,498	-8,426	434	-199	-395	-2,129
	투자영업	15,207	22,395	7,225	14,652	21,676	26,698
	기타	2,161	2,204	-477	-714	-1193	-1,278
	소계	10,869	16,173	7,182	13,739	20,088	23,291
법 인 세		3,233	5,501	1,992	3,679	5,611	6,597
당기순이익		7,637	10,673	5,189	10,060	14,477	16,694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6,62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 수지차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1조 1,38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7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3.1%p 감소한 99.2%를 기록하면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율과 실제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2.9%p, 0.3%p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산비율도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임.
-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손해보험 산업의 전체 손해율은 75.7%를 기록하였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7에 접어들면서 보험료 현실화 및 고급차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상승, 고유가로 인한 차량 이용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손해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은 공장 및 주택물건의 손해율이 악화되었고, 해상보험은 항공 및 선박 부문의 손해율 악화가 해상 전체 손해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손해율	화재보험	40.2	39.6	40.9	47.0	44.0	44.2
	해상보험	46.4	52.1	47.3	54.8	58.7	57.7
	자동차보험	79.5	79.0	73.6	73.7	73.9	73.0
	보증보험	21.5	23.4	28.0	24.3	17.8	19.5
	특종보험	56.8	55.3	54.3	56.5	58.2	60.4
	해외원보험	36.7	44.7	26.8	29.4	30.6	34.6
	장기보험	84.3	83.9	81.8	81.5	81.3	80.7
	개인연금	118.9	125.4	115.8	116.0	116.4	121.7
	전 체	78.8	78.6	75.8	75.9	75.9	75.7
사업비율		23.5	23.8	22.4	23.0	23.0	23.5
합산비율		102.3	102.3	98.2	98.9	98.9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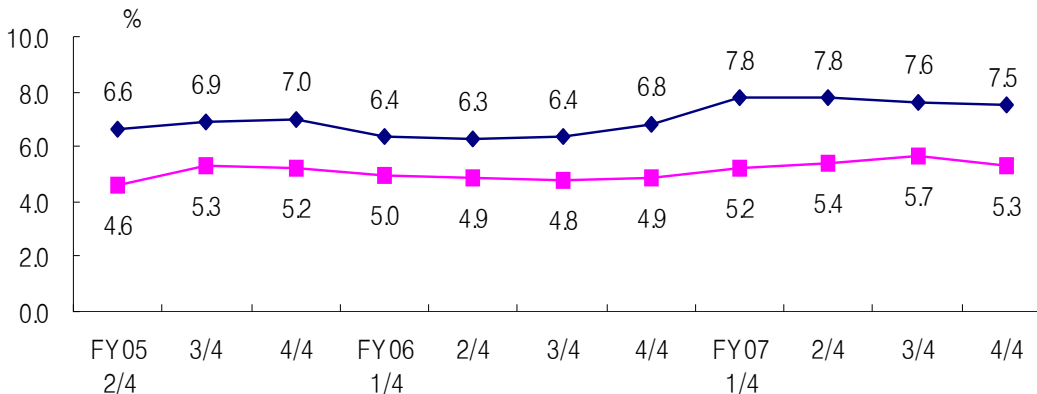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7.5%를 기록하였으며, FY2007 1/4분기 이후 7%대 중반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전년대비 3.5%p 상승한 10.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전년대비 국고채 이자율 상승 등에 힘입어 2.0%p 상승한 8.4%를 기록하였음.
 -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전년대비 1.1%p 상승한 6.1%를 차지하였으며, 수익률은 5.7%로 전년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3.8%p 상승한 10.9%를 기록한 반면, 대출채권의 경우 0.2%p 감소한 7.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투자영업수익) ×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장기 보험 위주의 재편은 손해보험회사의 사업기반 확보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과 주식, 수익증권의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기매매증권에서의 채권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대출채권과 부동산의 경우 각각 일반계정 자산의 18.1%, 6.2%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비중이 각각 0.1%p, 0.4%p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2%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0	4.6	4.8	5.0	5.3	4.9	5.9	4.9	6.1	5.7
유 가 증 권	54.6	7.1	55.0	8.8	54.5	8.7	53.5	8.4	53.8	10.9
○ 단기매매증권	6.2	7.5	5.7	16.7	5.3	15.3	5.0	12.5	5.0	14.5
- 주 식	0.3	48.7	0.2	157.7	0.4	143.2	0.3	112.6	0.3	112.6
- 채 권 등	4.0	6.8	3.5	13.8	3.3	11.0	2.8	10.5	2.6	12.9
- 수익증권	1.9	4.0	2.0	6.5	1.6	6.5	2.0	5.7	2.1	7.0
○ 매도가능증권	44.6	7.0	45.8	7.8	45.6	8.0	45.1	7.9	45.5	10.5
- 주 식	5.9	13.4	6.6	19.8	6.5	20.6	6.5	17.9	6.5	23.1
- 채 권 등	36.3	6.4	36.6	6.1	36.1	6.4	35.7	6.1	36.4	8.4
- 수익증권	2.4	6.5	2.7	8.6	3.0	8.5	2.9	11.1	3.1	11.6
○ 만기보유증권	2.9	6.1	2.7	6.1	2.6	5.9	2.4	5.9	2.3	8.4
- 채 권 등	2.9	6.1	2.6	6.1	2.6	5.9	2.4	5.9	2.3	8.4
○ 투자주식 ¹⁾	0.9	11.4	0.9	13.7	0.9	15.0	1.0	12.6	1.0	17.4
대 출 채 권	18.2	7.8	18.0	7.3	18.1	7.4	18.3	7.5	18.1	7.6
부 동 산	6.6	3.5	6.3	3.5	6.2	3.5	6.2	3.4	6.2	3.5
운 용 자 산 계	84.3	6.8	84.2	7.8	84.1	7.8	83.9	7.6	84.2	7.5
비 운 용 자 산	15.7	-	15.8	-	15.9	-	16.1	-	15.8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5.7	100.0	6.6	100.0	6.6	100.0	6.4	100.0	8.4
	(96.2)	-	(96.3)	-	96.5	-	96.6	-	96.2	-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7	-	3.5	-	3.4	-	3.8	-
총 자 산	100.0	5.5	100.0	6.4	100.0	6.4	100.0	6.2	100.0	6.1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7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대리점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0.8%p 감소한 11.9%를 차지하였으며, 설계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1.3%p 감소한 34.3%를 기록함.
 -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47.0%를 기록해 전년대비 1.4%p 상승한 반면, 중개사의 비중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0.8%를 차지하였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0.6%p 상승한 5.4%를 차지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회사직급	29,029	36,508	9,369	19,053	29,314	39,230
	13.6	12.7	11.9	12.0	12.0	11.9
보험설계사	74,807	102,379	27,197	55,348	83,871	113,090
	35.2	35.6	34.7	34.7	34.3	34.3
대 리 점	96,627	131,298	36,592	74,176	114,587	154,833
	45.4	45.6	46.7	46.6	46.9	47.0
중개사	1,809	2,470	582	1,290	2,105	2,759
	0.9	0.9	0.7	0.8	0.9	0.8
방카슈랑스	9,579	13,907	4,334	8,721	13,127	17,724
	4.5	4.8	5.5	5.5	5.4	5.4
공동인수	949	1,398	334	754	1,235	1,790
	0.4	0.5	0.4	0.5	0.5	0.5

주 : 1) 분기별 실적은 누적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7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리점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FY2007 생산성에 있어서는 임직원의 경우, 종업원 수가 전년대비 6.0% 늘어나면서 생산성은 7.5% 감소하였으며, 대리점은 개인대리점의 비중이 전년대비 9.1%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은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 정예화 추세로 인해 방카슈랑스, 다이렉트, 온라인, 통신판매, 대형독립법인대리점(GA)등과 같은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설계사의 월평균 모집액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성은 전년대비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6,067	25,849	25,969	26,602	26,957	27,394
	111,364.2	141,235.8	36,077.1	71,624.0	99,061.7	130,582.6
보험설계사	76,390	73,408	72,045	71,299	71,742	71,423
	97,928.2	139,465.3	37,750.5	77,627.6	99,665.5	134,730.5
대 리 점	45,038	44,275	43,818	42,493	42,423	42,311
	214,545.7	296,551.9	83,510.0	174,561.5	225,276.1	305,504.8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국내제도 동향

1. 보험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

1) 최근 車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이 최근('08. 1-5월간)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자에게 제공)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건수는 490만4천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연간 이용률(FY07)은 85.7%인 것으로 나타남.

- * 긴급출동서비스 :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해제 등(연 5회 한도)
* 제공대상자 : '긴급출동서비스이용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제공
* 보험료 : 25,000원 내외(회사별 · 차량연식별로 상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천대, 천건, %)

긴급출동서비스
는 여름휴가철
및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이용

구분	FY06	FY07	증감률	07.1-5월	08.1-5월	증감률
가입대수	13,268	13,755	3.7	5,516	5,781	4.8
이용건수	11,261	11,789	4.7	4,424	4,904	10.8
이용률	84.9	85.7	0.8	80.2	84.8	4.6

- * 매년 긴급출동서비스는 여름휴가철(태풍, 홍수) 및 동절기(빙판, 폭설)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어 통상 1-5월의 출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가. 서비스 항목별 이용 실태

- 동 기간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배터리 충전(35.3%), 긴급견인(21.5%), 잠금장치 해제(17.3%)順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 기간의 서비스 이용은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으나, 비상급유서비스* 이용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6.4%나 증가하였음.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
를 남용

* 자동차 주행 중 연료가 완전 소진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1일당 3ℓ, 연간 5회까지 무료로 주유해 주는 서비스

<최근 서비스 항목별 이용 실적>

(단위 : 천건, %)

구 분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 치해제	긴급 구난	기타*	합계
07.1-5월	1,015	149	1,454	567	851	138	251	4,425
08.1-5월	1,055	233	1,731	651	849	154	231	4,904
증감률	3.9	56.4	19.1	14.8	△0.2	11.6	△8.0	10.8

* 브레이크오일 • 엔진오일 • 부동액 보충, 전조등 교환, 팬벨트 교체 등

- 비상급유서비스의 급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비상급유서비스
남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상급유서비스 남용사례
- 연료가 남아 운행이 가능함에도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5회 연속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나. 비상급유서비스 남용에 따른 문제점

- 일부 운전자들이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함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그 피해가 결국 선의의 일반 운전자들에게 돌아감.

2008년 9월부터
운전자가 연료비
실비를 부담

- 비상급유서비스 악용사례가 계속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로 하여금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도록 사행심을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다. 비상급유 남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현재 보험사가 1일당 3ℓ 까지 연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험사가 비상급유 서비스는 제공하되 운전자가 실비(연료비)를 부담토록 하여 남용사례를 방지('08. 9월부터)

-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3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
-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른 긴급출동서비스 항목도 보험사가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서비스)을 제공

<비상급유서비스 개정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기존가입자	3ℓ 무료제공 (연 5회)*	3ℓ 무료제공 (보험기간 종료까지)
신규가입자 (08.9월이후)		실비를 받고 비상급유 제공**

본 제도는 비상급유서비스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적으로 억제

* 3ℓ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제공

** 실비를 받고 비상급유를 제공하더라도 출동비는 보험사가 종전대로 부담

- 그 대신,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토록 지도(연간 50억원 보험금 지급 감소 예상)

-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함.

* 연료가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급유를 신청하여 보험사가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 민원 등을 제기

- 장기적으로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보도자료, 2008.6.24.

2) 손보사, 풍수해보험 가입지역 4월부터 전국 확대 • 판매

가. 개 요

풍수해보험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 판매

□ 풍수해보험* 사업자로 선정된 3개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 판매

*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정보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 가입 대상으로 동부화재(시범사업자)에서 '06.5.16.부터 판매

** 전국확대 실시예 앞서 보험사업자간 상호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추가 보험사업자로 선정('07.9.12.)

*** '08년 3월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가입 상품 종류
다양화 및
주택내 도구 등
동산도
가입대상에 추가

□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지역의 전국 확대와 함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상품종류를 다양화하고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가입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풍수해보험 상품내용도 변경

* '06.5. ~ '07.12. 기간중 풍수해보험 가입률(가입시설/가입대상시설)은 평균 2.01%(주택 3.90%, 온실 1.69%, 축사 0.41%)

나. 풍수해보험 상품의 주요 변경내용

□ 상품종류 다양화

- 가입대상 시설물, 가입방식, 보상방식 등에 따라 보험상품을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기존에는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

현 행	변 경
상품명칭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축사 가입방식 : 개별가입^{주1)} ※ 단, 주택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주민 50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계약 가입 가능(단체계약특약 부가) 보상방식 : 정액급여^{주3)}	상품명칭 : 풍수해보험 I · II · III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축사 ※ 단, 풍수해보험 II는 주택, 풍수해보험 III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 가입방식 : 개별가입(풍수해보험 I · III) 단체가입^{주2)}(풍수해보험 II) * 기존의 단체계약특약을 별도의 상품으로 분리 보상방식 : 정액급여(풍수해보험 I · II) 실손보상^{주4)}(풍수해보험 III)

- 주1)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
- 2)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50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입시 보다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10% 할인
- 3) 가입대상 시설물별 정부의 무상 재난지원 복구기준단가를 기준으로 50 (주택만 해당)/70/90% 보상
- 4) 손해보험의 보상원리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 풍수해보험의 상품종류(변경 후 기준)

풍수해보험의

변경된 상품은

가입대상시설물,

가입방식 및

보상방식에 따라

풍수해

보험 I, II, III

으로 구분

상품명	가입대상 시설물	가입 방식	보상 방식
풍수해보험 I	주택, 온실, 축사	개별 가입	정액급여
풍수해보험 II (지자체 단체용)	주택	시·군·구 단체가입	정액급여
풍수해보험 III (공동주택 실손형)	공동주택	개별 가입	실손보상

□ 동산담보특별약관 신설

- 단독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대하여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동산담보특별약관」을 신설

* 동산담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단독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이며, 풍수해로 인한 단독주택의 파손정도 및 침수높이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

□ 단독주택 내의 동산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동산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보험금
	파손정도	전파 반파 소파	동산 보험가입금액 전액 동산 보험가입금액의 50% 동산 보험가입금액의 25%
	침수높이	30cm ² 이하 30cm ² 초과 100cm ² 이하 100cm ² 초과	기본 침수보험금 ^{주)} 동산 보험가입금액의 50% 동산 보험가입금액 전액

주) 기본 침수보험금

주택면적	보험가입금액 비율		
	50%	70%	90%
50m ² 이하	12만원	14만원	16만원
50m ² 초과	9만원+[600원×주 택면적(m ²)]	8만원+[1,200원×주택 면적(m ²)]	7만원+[1,800원×주택 면적(m ²)]

□ 공동주택의 경우 고액보험계약 보험료 할인 신설

공동주택의
보험료 할인
신설 내용

-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 실손형)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보험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2~23% 할인

□ 공동주택의 경우 고액보험계약 보험료 할인 신설

-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 실손형)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보험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2~23% 할인

보 험 가 입 금 액	보험료 할인율
2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4%
10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6%
2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8%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10%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12%
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15%
5,000억원이상 ~ 1조원미만	19%
1조원 이상	23%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다. 기대효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지역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그동안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주민 또는 지자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품종류·가입방식·보상방식 등을 다양화함. ○ 가입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 자료 :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보도자료, 2008.4.1.

3)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 보험 범위 확대

가. 개요 및 현황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교통사고 피해
보험의 범위를
확대

-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무보험, 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78.4)과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幼子女) 등을 보호·지원하는 사업 시행('00.1)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손해배상보장사
업 분담금을
통해 무보험 및
뺑소니 등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실시

- 재원(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원천징수

-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 보상 한도액 : 사망·후유장해(최대 1억원), 부상(최대 2천만원)

-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11개 보험사에 위탁)

※ '78.4 동부화재 위탁 → '02.8 분산위탁 결정 → '08.4 현재 11개 보험회사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 후유장해인(1-4급)		재활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해인의	피부양노부모	생계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분기 20만원(중학생) 분기 30만원(고등학생)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월 20만원

-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1999년 교통안전공단 위탁, 2000년 시행)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
|---|--|
| <p>책임보험
배상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 및 전액
가불금 가능</p> | <p>①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p> |
| <p>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이 퇴원
및 전원 지시가
가능</p> | <p>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주었으나,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줌.</p> <p>③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p> <p>④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안내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p> <p>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도록 하였음.</p> <p>⑥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음.</p> |

향후 자동차
임시
운행기간에도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만
신규등록이 가능

- ⑦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짐.
- ⑧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짐.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보도자료, 2008.5.8.

4)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목표설정을 위한 계정의 구분,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공개금지 및
그간의 법 개정 이의신청제도 등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의 차질 없는
수요를 반영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사전적립 목표치(목표기금 수준)를 정하고 기금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목표도달시 보험료 완화 또
는 면제)
 - **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률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
등하는 제도
- o 기타 그 간의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5.2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주요 내용>

- 목표기금제 시행
근거가
법제화되어
'09.1.1부터
시행될 예정
- ①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 * '07.12.21일 예보법 개정(제30조의4 신설)으로 목표기금제 시행 근거가
법제화 되어 '09.1.1부터 시행 예정
 - 목표기금제 시행시 부보금융기관의 수,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목표기금제를 각 금융업권 계정별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동일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별
도의 계정으로 구분
- 금융회사별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공개
및 이의신청권을
부여
- ②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된 보험료율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시
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
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등보험료율
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

계정간 차입이자 ③ 계정간 차입이자 감면 관련

- 감면으로 - 계정건전화의 도모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금내 계정간 차입이자
계정건전화를 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도모 - 금융업권내 구조조정 등으로 계정간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차
 입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조속한 계정건전화 도모

④ 일괄정보조회권 시한 연장

- 거래정보조회권 -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의 유효기간이 만
시한 연장으로 료('09.3.23)됨에 따라 3년간 시한을 연장
기금의 효율성 -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회수 및
및 건전성을 기금의 건전화 도모
도모 * 5.27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7~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보도자료, 2008.5.28.

5)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가. 기본방향

- 교차모집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설계사의 소득보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등의 목적으로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기로 결
정한 바 있음('03.5월).
- 제도 개선을
추진
- * 보험설계사(생보사·손보사 소속)는 한 개의 異種 보험회사(손보사·생
보사)를 선택하여 동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
- 교차모집 시행시 발생 가능한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혼란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제도개선*을 추진
- * 상품설명서제도, 모집자실명제도(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07.4),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보험협회, '08.6) 등을 도입
- 예정대로 '08.8.30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교차모집제도를 시행
- 그 동안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교차모집제도는

08.8.30부터 시행 나. 제도 시행 준비상황

예정이며, 관련

모범규준 마련

및 설계사 교육,

모집지원

인프라를 구축

- 교차모집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보험업계는 금감원·협회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금감원) 교차모집제도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 모범규준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시 보험사 준수사항”,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간 교차모집과 관련한 행정지
원에 관한 사항”,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질서 유지 등 보험모집 및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보험협회)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지침 정비, 시험·교육계획
등을 수립

- (보험회사)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지원을 위한 인프라(전산시스템, 교육인력 확보 등) 구축

다. 향후 계획

교차모집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교차모집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교차모집 모범규준을 확정·배포 (금감원, 6월 첫째 주)
 -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및 등록절차 확정 (보험협회, 7월말)
 - 보험업계 준비상황 최종 점검 (금감원, 8월중)

*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 2008.5.30.

2. 은행 · 증권

1) 경제 트렌드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가. 개요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세계시장 활용
및 투자와
저축을 연결한
무역과 금융을
지목

- 최근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인 Michael Spence를 위원장으로 하는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는 경제성장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단 6개 나라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한국, 몰타(Malta)-만이 고성장을 지속하여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The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 성장의 공통점으로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과 높은 투자와 저축을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금융의 기능이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는 무역과 금융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최근 고유가 및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 징후를
우려

- 따라서, 본 강연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트렌드와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글로벌 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함.

나. 글로벌 경제동향과 전망

<세계경제 동향>

- 최근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 곳곳에서 경기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IMF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내외 금리차 확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으로 인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음.
 - 또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연준의 시장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소폭 반등하였음.
 - 세계 주요기관의 경제전망은 편차는 있지만, IMF는 세계경제는 향후 2~3년간 3~4%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2010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는 전년말 이후 GDP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경제 동향>
- 국내경제 동향은 GDP성장률이 전년말 이후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연 4%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경상수지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들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투자 및 고용도 감소하고 있어 향후 내수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국내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은 호조세를 보이거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주력상품의 가격하락으로 교역조건 악화
- 국내 금융시장 동향은 주식시장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이 일부 완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음.
 - 새 정부가 출범한 2.25일 이후 약 10%의 주가상승을 실현해 세계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자금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 경기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에서 수출은 전년의 호조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단가는 상승하는 반면 전자, IT 등 수출주력업종의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세계 일류 국가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 및 금융정책을 제시	다. 세계 일류 국가 달성을 위한 금융정책 ☐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금융산업과 경제성장> ☐ 금융산업은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선진화된 금융산업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	<금융산업의 현주소>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그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플레이어 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과 수요자편의 증대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음.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정책 목표로 설정	<금융위의 정책목표>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의 정책목표를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시장인프라 선진화, 금융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업무도우미, 금융시장 안정기반 마련

	① 금융규제 혁파
비명시적 규제를 혁파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혁파할 것임. ○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규제 타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통해 시장에 가장 부합한 규제를 체제를 만들 것임.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	②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및 지주회사 금융그룹 육성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할 것임.
시장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권익을 강화	③ 금융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 국제적 수준의 투자 권유·판매제도를 도입하고,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대, 수익자 편익중심의 공시·감독을 강화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권익을 높일 것임.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처	④ 금융시장 안정기반 마련
	□ IT 발달, 파생상품거래 확대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어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 위기상황 대책을 재정비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임.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자금 조달 및 관련제도 정비	<기업 금융애로 해소 추진방향> □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제도 마련, 외환관련 서비스 강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라. 결 론

국내기업들이
국제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신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세계의 혹독한 경쟁을 이겨내고 그 능력과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적 역량을 배양해야 함.

<국제화 •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마인드 증진>

- 이를 위해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신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국 등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분야의 국제적 기준 도입 등 기업 시스템에 대한 국제 정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런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 첫째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 육성해야 함.
 - 둘째, 국제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숙지가 필요할 것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자료, 2008.5.23.

2)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 금융위원장은 방중기간(6.12(목)~6.13(금)) 중 현지에서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국내금융회사
중국진출과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정책
지원방안 발표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

□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급속한 성장과 높은 잠재력으로 중국 금융시장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중국경제 위상(07) : 경제규모 4위, 교역규모 3위, 외환보유고 1위, 외국인투자 5위

○ 고도 성장에 따른 금융수요 확대 등으로 WTO 가입 이후('01년말) 대비 모든 금융 업종이 2배 이상 급성장

<중국 금융시장 규모와 성장 현황>

중국 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잠재력으로 시장
매력도가 높은
상태

업 권	지 표	01	02	03	04	05	06
은행	예금잔고(조위안)	14.4	18.3	22.0	25.3	30.0	34.8
	대출잔고(조위안)	11.2	14.0	17.0	18.9	20.7	23.8
증권	일평균거래량(억위안)	184	205	344	317	236	466
	펀드운용자산(억위안)	804	1,319	1,615	3,309	4,714	8,550
보험	생보매출(억위안)	1,424	2,275	3,011	3,194	3,646	4,601
	손보매출(억위안)	685	778	869	1,125	1,281	1,580

○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도 빠르게 진행되어 외국인의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참여도 증가

* 진출현황('01→'06) : 외국은행 (177→312개), 보험(14→41개), 증권(1→7개)

□ 중국 정부도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도 풍부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2010년까지
금융상품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
- (금융시장 선진화) 2020년까지 GDP를 4배 증가시켜 “小康사회” 달성 목표 하에 금융부문도 시장경제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 으로 축소되고 있고 BIS 비율도 제고되는 등 건전성 개선
 - 2010년까지 금융상품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완화, 가격제한, 진 입장벽 및 외환제도 관련 규제 등도 대폭 완화 예정

<최근 중국진출 관련 여건>

- 중국과의
금융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진행
- '08.5월 대통령 訪中시 양국 정상간 “양국 주식시장에 대한 상호 투자 허용”을 포함한 경제·금융협력방안에 대해 합의
 - 동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금융협력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 중국은행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QDII*) 하는 합의서한에 서명
- *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한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우량금융회사에게 중국 내국인 전용 A-주식을 거래 할 수 있는 면허(QFII)를 조속히 인가해 줄 것을 요청
-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중국내국인 거래 전용의 A 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QDII와 QFII 획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중간 금융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행들에 대해 QDII가 허용될 경우 60억불 규모의 중국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QFII를 획득할 경우, 30억불 규모의 추가적인 대중국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금융회사 중국 진출 지원방안>

□ 금융회사 중국진출을 위해 업권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

중국진출을 위한
금융회사 업권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은행의 경우 M&A를 통한 현지은행 인수를 추진
- 증권사의 경우 사무소·합작증권사 설립 또는 QFII를 통한 자본 시장 투자를 확대
- 보험회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업 진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을 추진

□ 정부는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현지
금융시장을 개척,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

- ‘민간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 정부’로 구성된 해외진출 지원 「삼각편대」를 구성·운영할 계획
- ① 민간 금융회사에서 직접 현지 금융시장을 개척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부와 금융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
- ② 금년하반기 설치예정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③ 정부는 민간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한 해소노력을 경주

* 자료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보도자료, 2008.6.13.

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발표

-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 관련 심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
- 금융위원회는 4.24(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함과 동시에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를 보도자료로 순차적(1차:업무영역, 진입 ~ 12차:예금보험, 신용보증제도 등)으로 발표함.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 가. 금융규제 현황
- 금융산업은 현재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되는 영역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轉移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
 - 투자자·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사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타 산업에 비해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 타 산업에 비해 금융산업은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
- 2008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 5,223건중 15.6%를 차지
- 금융규제 유형별로는 인허가·승인·등록·기준 설정·지도 등 사전적 규제가 50%를 상회
- 나. 그간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식의 한계
- 금융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규제수준은 여전히 과도
- 그동안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금융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① 질(Quality)적인 개선보다는 양(Quantity)적인 개선에 집중
 - ② 보이지 않는 규제의 지속으로 규제개혁의 체감도 반감
 - ③ 업권간 이해관계,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핵심규제 정비에 소극적
 - ④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발생시 책임문제로 인해 규제당국이 규제완화에 소극적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다.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접근방향

(1) 기본방향

규제 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

- ☐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당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 ☐ 市場과 産業 전체의 파이(Pie)를 키우는 규제개혁에 중점
- ☐ 양(Quantity)적인 규제수의 감축보다는 질(Quality)적인 개선에 집중
- ☐ 법령, 감독규정상의 명시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감독·검사상의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에도 중점
- ☐ 사회적으로 쟁점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 ☐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2) 추진전략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하고
- * On-line One-stop 민원처리제도, 지도·구두지시등 비명시적규제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 은행·증권·보험 3대 권역을 유지하되, 업권간 규제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
- *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장기적으로 칸막이식 규제를 機能別로 통합하는 가능성 검토
	(3) 금융규제개혁 추진체계
금융규제를 3차원 matrix방식으로 진행	□ 全금융규제를 3차원 Matrix 방식(①Life-cycle방식 ②법령체계방식 ③금융권역별 방식)으로 조사하여 존치·완화·폐지여부를 결정 ① 【Life-cycle방식】 규제를 금융회사의 탄생(진입·소유규제)과 성장(영업·자산운용) 그리고 퇴출이라는 life-cycle흐름에 따라 그 타당성 및 규제수준을 전면 재검토 ② 【법령체계방식】 규제를 법→시행령→규칙→규정→세칙 등 일련의 법령체계에 따라 검토*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하위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개선 ③ 【금융권역별방식】 同一 기능 / 同一 규제 관점에서 은행·증권·보험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
총 4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후 타당성을 재검토	□ 4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규제타당성 전면 재검토 * 1차(08.4.10) : 진입/업무영역, 2차(08.4.20) : 상품/영업/소비자보호, 3차(08.4.30) : 자산운용/건전성 감독, 4차(08.5.7) : 퇴출/조직변경 *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 □ 수요자(민간) 주도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 심사 ○ 수요자(민간)가 주도하여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규제당국이 존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민간 11인, 규제당국 3인, 단장 : 민간)' 구성(08.4.18), 1차회의 개최(08.4.22)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민간 전문가(학계·업계·언론계 등)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치필요성 심사

(현행) 민간 : 완화폐지 필요성 입증 ⇒ 규제 : 완화폐지 여부 결정
 (개선) 규제 : 존치 필요성 입증 ⇒ 민간 : 존치 여부 심사

규제개혁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존치되는 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심사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 체계 구축

라. 주요 세부 추진과제와 기대효과

(1)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

- 현재 신규진입을 신청한 13개의 증권사와 12개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완료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세분화하여 적은 자본금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자통법 시행령에 반영)

*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100억원 → 20억원), 주식 위탁매매업 (30억원 → 10억원) 등

[기대효과]

- 다수의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의 진입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다양한 수요에 대응)
- 또한,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

(2)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영업행위의 자율성 확대

금융회사 상품
 개발 및
 영업행위에
 자율성을 부여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 도입, 상품개발·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을 대폭 확대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기대효과]

- o 자율 보험상품의 경우 금감원 제출 절차를 폐지(no file)함으로써 사전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2~3개월) 단축
- o 자산운용의 자율성·다양성이 제고되고, 경영전략에 따른 신속한 투자가 가능케 되어 대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3)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시
사전협의에서
사후보고
형식으로 개선

- o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원칙 사후 보고, 예외 사전협의*로 개선

* 예 :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 등

- o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자회사 주식소유는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보험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

[기대효과]

- o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에 따른 자료 준비에 따른 부담이 축소 되고, 협의기간(평균 2주) 만큼 단축하여 적기에 투자가 가능
- o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신속하고 적기에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 보험회사로의 도약이 용이

(4) 사회적 쟁점규제의 개혁 추진

사전적, 획일적
심사에서
사후감독 강화
등으로 단계적
전환

- o [은행] 현행 사전적·획일적인 銀行 所有規制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 o [비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의 非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非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私金庫化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기대효과]

- o 정부가 지분 소유한 금융회사의 민영화 추진시 지분인수 가능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 M&A가 활성화 되는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를 지원

(5) On-line One stop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On-Line One
Stop 방식의
민원처리상황을
통합관리

- o 금융고객 Plaza(통합 민원실) 설치 방안 마련
 - 민원의 유형에 따라 인허가 RM*(Relationship Manager)과 일반 민원 RM을 두고 운영하고 민원처리상황을 통합 관리

* RM은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을 代行하고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RM의 성과를 평가

- o 온라인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o 민원처리 내부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6) 금융부문의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및 시장규율 확립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및 시장
규율을 보다
강화

- o 리스크 관리체계의 강화
 - (은행부문)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신BIS협약(Basel II) 도입
 - (증권부문) 증권사 진입증가에 대응하여 영위업무별, 요인별로 리스크 규모를 평가하는 선진 리스크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독역량 집중
 - (보험부문) '09.4월부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o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확립
 -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대주주, 임원 재진입을 제한
 - 회계제도선진화, 공시 및 대주주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및 심사결과, 2008.4.23~6.30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4) '08. 3월말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가. 기본방향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바젤 I 기준)은
전년말대비 소폭
하락

- '08. 3월말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바젤 I 기준)은 11.94%로 전년말 12.28%에 비해 0.34%p 하락하였음.
- 이는 '08.1/4분기 중 기업대출 확대 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은 전년말대비 5.84%(63.2조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 등 자기자본은 전년말대비 2.90%(3.9조원)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
- 자기자본 구조 측면에서는 기본자본 증가율(3.6%, 3.5조원)이 보완자본 증가율(1.4%, 0.4조원)을 상회하였음.
- 자기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중이 상승('07말 72.9%→'08.3말 73.3%)하는 등 자본구조는 질적으로 개선되었음.

자기자본 대비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기본자본의 비중
상승으로
자본구조는
질적으로 개선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3말
BIS자기자본비율		11.33%	11.16%	12.08%	12.95%	12.75%	12.28%	11.94%
기본자본비율		7.16%	6.95%	7.97%	9.27%	9.15%	8.95%	8.76%
기본자본비중		63.2%	62.3%	66.0%	71.6%	71.7%	72.9%	73.3%

금년 경영실태
평가 등에 있어
바젤 I, II 중
높은 비율을
적용

- 한편, 금년부터 시행된 바젤 II 기준 '08.3월말 BIS비율은 11.16%로 바젤 I 기준 BIS비율 11.94% 보다 0.7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바젤 II 시행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금년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적용시 바젤 I, II 기준 BIS비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토록 한 바 있음.
-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의 바젤 II 기준 BIS비율이 바젤 I 기준 보다 하락하였으나,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 II 기준은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거나
소매익스포저
비중이 큰
은행들은
BIS비율이 상승

- o 바젤 II 기준은 ①1년 미만 한도여신거래 미사용한도 및 운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②소매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100%→75%)를 특징으로 함.
- 1년 미만 미사용한도 금액이 큰 은행들은 바젤 II 기준 BIS비
율이 바젤 I 기준 보다 하락한 반면,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과 자산포트폴리오중 소매익스포저의 비중이
큰 은행들은 BIS비율이 상승하였음.

* 바젤 II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방법보다 내부등급법 사용시 위험가중치
가 낮게 산정

'08.3월말 기준 은행별 바젤 II 시행효과

(단위 : %)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보완자본 인정
여력을 감안시
양호

하락 은행 (14개)	상승 은행 (4개)
신한(12.08→11.44), 우리(11.02→10.02), 하나(11.42→10.29), 외환(11.71→10.09), 한국씨티(12.55→10.52), 대구(12.12→11.00), 부산(11.93→11.03), 광주(11.08→10.37) 경남(12.19→11.09), 산업(15.29→14.37), 기업(11.35→10.48) 수출입(9.78→9.57), 농협(11.19→10.37), 수협(13.01→11.91)	SC제일(11.47→11.53), 국민(11.97→12.30), 제주(10.67→10.76), 전북(12.52→12.71)

□ 국내은행의 BIS비율(바젤 I 기준 11.94%, 바젤 II 기준 11.16%)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보완자본 인정
여력(바젤 I 기준 5.57%p, 바젤 II 기준 5.26%p)* 감안시 국내은
행의 BIS비율은 양호한 수준임.

*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까지 자본으로 인정되는바,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의 확충을 통해 BIS비율 제고 가능

구 분	미국 (바젤 I)*	영국 (바젤 I)*	일본 (바젤 II)*	한국	
				바젤 I	바젤 II
BIS자기자본비율	12.23%	12.05%	12.41%	11.94%	11.16%

* '07말 기준 미국 상업은행 평균, 영국 4대 은행 평균, 일본 11대 은행 평균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BIS제도 정착을 지도	□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고, 바젤Ⅱ 기준 BIS비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해 나갈 예정임. ① 과도한 위험자산 확대를 위한 부채성 자본조달을 억제하여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경영에 보다 주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② 내부유보 확대 등 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③ 바젤Ⅱ 기준 BIS비율 제고를 위해 내부등급법 승인 요건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족토록 유도해 나갈 것임. * 현재,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 6개 은행(산업, 기업, 외환, 국민, 신한, 하나) 가운데 국민은행('08.3월 적용), 신한은행('08.6월 적용)이 승인을 받았으며, 여타 은행은 미흡사항 보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보도자료, 2008.5.30.
--	--

5)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추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추진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금년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 중임.

- 개별은행별로 관련 내규 전산 정비 등 준비 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동 시점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임.

* 신한(4월), 국민(6월초), 우리(6월초)

-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키로 하였음.

*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연대보증문제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완전정착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

□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

- 그러나, 연대보증문제의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 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임.

- 참고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7천건, 약 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금번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이 같은 조치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설치 및 운영
- 금번 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음.
 - 동 작업반에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은행내규·절차 개정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실무 작업반의 주요 작업내용>

- 은행의 가계여신 연대보증제도 운용실태 정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
-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CSS 개선,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허용기준 마련 등) 검토
- 가계대출 연대보증폐지를 위한 「여신전문위원회」 상정안건 마련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중 은행내규 개정사항 확정·반영
- 기타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 관련 정비 필요사항 검토 등

*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 보도자료, 2008.4.16.

6) 불건전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된 고객정보 회원사간 공유 추진

가. 개요

2008년 9월
1일부터 공시 및
불공정거래
정보를
회사원사간 공유

□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증권 선물회사(회원사)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불건전주문을 상습적으로 제출하는 위탁자의 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의

- 특정 회원사에서 불건전주문 제출로 인하여 수탁 거부된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사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의 주요 추진안건

나. 현황

현재는 회원
당사 위탁자의
수탁거부조치만
을 파악 가능

□ 회원사는 위탁자의 불건전주문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출하고 있는 바,

- 회원사가 자기와 거래하는 위탁자의 수탁거부조치만을 파악하고 다른 회원사와 거래하고 있는 위탁자의 제반조치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 수탁 거부한 거래회원사 이외의 다른 회원사를 통하여 유사한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반복되는 유사 불건전주문을 회원사가 새로이 적출하여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 이는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모니터링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수탁거부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356건	572건	1,230건

다. 세부방안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DB화가 아닌
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회원사에 전송

- ☐ 회원사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

- o 거래소는 자료를 별도 DB로 구축하는 등의 관리는 하지 않고 시스템 상으로만 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회원사에 전송함.

*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거부사유, 수탁거부기간 및 조치일 등 5개 항목

- ☐ 회원사는 통보받은 수탁거부 위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업무에 활용

- o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될 경우 이를 즉시 요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시

- o 이상매매가 적출되는 경우, 현행 단계별 조치*에 관계없이 바로 수탁거부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차 유선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예고, 4차 수탁거부

라. 기대효과

-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기능의 강화

불건전주문을
제출하여
수탁거부
조치내용을 공유
가능

- o 특정 회원사에서 반복적으로 불건전주문을 제출하여 수탁거부 조치된 내용을 다른 회원사에서도 알 수 있게 됨.

- o 상습적인 불건전주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가 공유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

- 거래소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모니터링업무 효율화
- 회원사로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회원사의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 활용하게 됨으로써
 - 관련 불건전주문의 적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모니터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큰 비용 부담 없이 수탁거부 고객정보를 공유 및 활용
-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로 공적규제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시스템 지원 등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함으로써
 - 회원사들이 사전에 불건전주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사후적으로 적발 조치함에 따른 공적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보도자료, 2008.6.18.

7) 주식 대차거래 현황 및 공시 개선방안

가. 배경

국내 주식
대차거래가
2004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

- 국내 주식 대차거래는 '04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수량 +53%, 금액 +40%, '07년말 대비)되고 있음.
- '08.5월말 현재 주식 대차잔고** 수량 및 금액은 각각 8.0억주, 34.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수량 +79%, 금액 +75%) 증가하였음.

<주식 대차거래 잔고수량/금액>

구 분	'07.5월말(a)	'07.12월말	'08.5월말(b)	증감율[(b-a)/a]
잔고수량(백만주)	448	523	801	78.8%
잔고금액(조 원)	19.9	24.8	34.8	74.9%

* 대차잔고/금액 : '04말 0.9억주, 3.2조원 → '05말 2.1억주, 6.7조원 → '06말 3.7억주, 10.2조원

** 코스콤 제공자료(Check) 기준

중개기관별
대차거래 정보
관리로
현황파악이
곤란한 현실

- 대차거래 정보(종목별 잔고금액·수량, 체결·상환내역 등)는 중요한 투자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중개기관*별로 관리·공시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시장전체의 대차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증권예탁원, 증권회사, 증권금융

** 증권정보업체인 코스콤이 자사 금융정보단말기(Check)를 통하여 통합된 대차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유료고객으로 제한되는 반면, 신용거래(융자·대주)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종목별 신용대주 수량, 금액 등)가 HTS 등을 통해 공시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음.

나. 최근 주식 대차거래 현황(증권예탁원 중개기준)

금년 주식시장
급등락의
반복으로
차익거래 수요가
증가

- (거래규모) '08.1~5월중 주식 대차거래 체결규모는 48.9조원으로 전년 동기('07.1~5월 23.2조원) 대비 대폭(+25.7조원, 111%) 증가
- 이는 '07년말 외국인의 내국인으로부터의 차입한도가 확대(100억원→ 500억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되었음.

- 금년 들어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이용한 차익거래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월평균 주식 대차거래 규모는 9.8조원으로 전년(월평균 6.3조원) 대비 약 55% (+3.5조원) 증가

- (시장참가자) 외국인이 대차거래의 대부분(차입 93%, 대여 86%, '0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의 시장참여 비중(차입 7%, 대여 14%)은 미미한 수준임.

다. 대차거래 관련 공시 개선방안

대차거래 정보를
집중,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주식 대차거래는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이 대부분(79%)을 차지

* 기관별 대차거래 중개현황('07년중) : 예탁원 76.1조원(79%), 증권회사 20.9조원(20%), 증권금융 0.02조원(0.2%)

- 현재 증권회사, 증권예탁원을 통한 대차거래 내역은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공시내용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증권금융의 중개내역은 일반에 공시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시장참가자들이 시장 전체의 대차거래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중개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 등에 집중·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 * 종목별 체결·상환·잔고수량/금액,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등
 ** 현재 공시되지 않고 있는 증권금융의 대차중개 정보도 공시토록 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공시하는 대차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내용, 공시방법 등의 표준화 추진

대차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 (기대효과)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이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참가자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될 것임.

o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보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

라.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08.6월중)하여 '대차거래 관련 정보 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o 각 기관별 전산시스템 개발('08.3/4분기)

o 개인 등 일반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 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시장감독팀 보도자료, 2008.6.11.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가. 추진경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 '09.2.4일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08.8.4일 시행

※ 시행령안은 10편, 390개 조문, 20개 부칙, 21개 별표로 구성

○ 4.7일~4.28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

나. 기본방향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규제를
재검토

□ 금번 시행령은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영업과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일반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도 경감

②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합리화

다. 주요 규제완화 사항

금융규제완화
정책 내용

□ 진입 단위 세분화와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 전문 금융투자업자와 대형 IB 등장을 지원

□ 업무위탁 범위확대, 장외파생 거래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

□ 증권인수, M&A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영을 허용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상장기업 등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

(1) 진입기준

<인가·등록 단위>

진입단위

세분화를 통해
원활한 인가·
등록을 지원

□ 특화·전문 금융투자업자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보다 세분화 (현행 26개 상당 → 42개*)

* 하위 업무단위의 단순함에 해당하는 형식적 업무단위 4개 제외시 실질적으로 38개 (예 : 장외파생의 경우 기초자산이 '주권인 것'과 '주권외의 것'으로 나누고 이들의 단순합인 '모든 기초자산'을 별도단위로 신설)

○ 부동산, 증권 등 운용에 특화하는 집합투자업의 인가단위, 금전만을 신탁받는 신탁업의 인가단위* 등을 신설

* 현재 신탁업은 금전이 포함된 신탁과 금전이 제외된 신탁으로 구분

⇒ 특정분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재는 금융투자업 진입이 불가능하나, 업무단위 세분화로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창업이 원활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 가능

□ 은행,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단위로 인정 (stand-still)

* 예 : 은행·보험의 국공채 창구판매,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등

□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비하여 하위단위를 포괄하는 상위단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가능

<자기자본>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

전문금융투자업
자와 대형 IB를
지원

□ 금융투자업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가·등록단위별 자기자본을 설정

○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에는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 보다 자기자본을 경감

- 물적 설비보다 인력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경우 크게 완화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현행) 집합투자업 100억원 → (통합법) 모든자산에 운용가능한 집합투자업 80억원
(현행) 투자일임업 30억원 → (통합법) 투자일임업 15억원

- 인가·등록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

* (현행) 증권 위탁매매업 30억원 → (통합법) 지분증권 위탁매매업 10억원
(현행) 집합투자업 100억원 → (통합법)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 20억원
(현행) 금전포함 신탁업 250억원 → (통합법) 금전만 신탁 130억원

o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1/2 경감

* 예) 장외파생 매매업 수행을 위해서는 900억원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450억원으로 경감

□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1,000억원 (장외파생) 가량 늘어난 2,000억원 자기자본 소요

* 6개업 자본금 단순합계 : 종합증권업(500억원), 선물업(30억원), 집합투자업(100억원), 신탁업(250억원), 투자일임업(30억원), 투자자문업(5억원)

o 장외파생의 경우 현재는 별도 추가 자본 없이 수행할 수 있으나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기자본을 1,000억원(매매 900억원 + 중개 100억원)으로 설정

(2) 영업규제

업무위탁 관련
범위를 확대 및
특화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지원

□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대

o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본질업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특화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지원

* 예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원화자산(20%범위내) 및 외화자산(100%) 운용업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외화자산 운용업무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만 100% 위탁 허용) 등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전산관리·운용, 고지서 발송 등 단순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도 허용
- 장외파생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
 -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을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헷지)목적의 일반투자자*로 까지 확대
- * 예시 :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가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
-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유지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당분간(3년) 200%로 완화·적용하되 3년 후에 연장·폐지여부를 재검토
-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유지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당분간(3년) 200%로 완화·적용하되 3년 후에 연장·폐지여부를 재검토
- * 요건 미충족시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 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
-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정착되어 가는 만큼 과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
-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 *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 성과시 (-) 성과보수를 적용(기본보수에서 차감)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
- 시가총액 및 펀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1개 기업 주식의 편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억원)함.
- 집합투자업자가 시장에 공시하는 의결권 행사내용 정보중 외국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에 한정)

(3) 업무범위

-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겸영업무 확대
-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
 - 증권 인수, 기업 인수·합병 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 IB가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을 허용(일시적 신용공여인 bridge loan)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CRC,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등의 겸영도 허용
- *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는 현재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며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은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통해 관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 유지할 의무)

(4) 기업공시

- 법인요건으로서
의 공시제도를
개선
- ☐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시 제도를 개선
 -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하여 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으로서 '3년간 계속공시*'를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
- * 3년간 계속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 등
-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 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

- 투자자 보호를
강화 및 건전성
제고
- 라.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강화되는 규제
- ☐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진입요건 유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를 설치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문간에는 정보교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이 금지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간의 정보교류 차단에 주력
- 통합법에 의해 새롭게 경영이 허용된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간의 정보교류 차단에 주력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설 명	사 유
고유재산 매매·중개 자문·일임 신탁 기업 금융 집합 투자 * 실선 : 정보교류차단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부문 음영 : 좌우로 통합운용 가능	· 고유재산운용//기업금융//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간 차단장치를 설치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과 신탁업’간에는 통합 하여 운용 가능 · 자문·일임업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를 제외하고 어느 부문에도 통합하여 운용가능	· 이해상충 발생 여지가 큰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기능적으로 유사함을 감안 · 실제 자문·일임업은 투자매매·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과 동시에 영위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

- 진입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은 진입이후에도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은 인가·등록 등 취소사유**에 해당

*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경우 기존 업무에 대한 자기자본은 유지요건 적용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회 평가하며 미달시에는 인가·등록 취소 등 조치된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
- * 현재 분·반기 보고서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제출

-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이면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2012년까지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을 허용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과 펀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신탁+일임+자문)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지배구조 가중규정을 적용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펀드 비교공시
확대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
- * 현재 신탁회사, 투자일임·자문회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설치 의무가 없음
 - o 펀드별로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을 추가

운용사	현 행						추 가		
	펀드명	순자산	채권 편입	기준가	3개월 등락률	6개월 등락률	운용 보수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 운용사	A펀드								
	B펀드								

마.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통해 기타
의견을 수렴할
예정
-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칠 계획
 - o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08.7월말까지 하위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
- * 동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음.

* 자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보도자료, 2008.4.7.

해외제도 동향

1. 북미 동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10가지 전파과정과 시사점>

IMF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10가지
전파 경로를
제시

- IMF는 Finance and Development 6월 호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퍼지게 되었는지 10가지 경로를 제시하였음.
 -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부적절한 언더라이팅의 확대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 또한 리스크가 높은 주택대출, 이를 토대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발행, 또 다시 이를 토대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발행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피해가 확산되었음.
 -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손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른 부문에까지 퍼지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음.
 - 이 글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 보고자 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만으로 인한 총 손실은 미국 주식시장의 2~3% 하락 수준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음.
 - 그러나 이러한 서브프라임 문제는 금융, 경제 시스템의 많은 부분들로 퍼져나갔으며, 지난 4월 IMF는 파생된 손실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이 9,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러한 확산과정의 속도와 범위는 상당한 것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10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음.

- 2006-2007년
사이 부실한
대출기준이
이번 위기의
원인을 제공
- 1) 2006-7년 사이 서브프라임, Alt-A 대출 기준의 부실
- 대출금 채납과 압류가 증가하면서 2006~7년 사이 대출기준이 부실했음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음.
 - 첫째, 많은 대출자들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만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임.
 - 그들은 집값 상승분을 이용해 초기 저리 대출(teaser rate)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대출(refinance)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재대출이 불가능해 연체와 압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
 - 둘째, 다수의 대출자, 중개자, 부동산 평가자 등이 대출신청 단계에서 집값과 대출자의 소득을 부풀려 놓았었다는 점임.
- 신종금융상품
의 신용등급
변동폭이 일반
회사채에 비해
큼
- 2)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등급하향 속도와 정도
- 투자자들은 구조화 신용증권(structured credit securities)*의 신용등급이 회사채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음.
 - * 구조화 증권이란 상이한 개별 채권을 모아 풀을 구성하고 이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말함.
 - 서브프라임 상품의 신용등급 하락은 보다 빈번하게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단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결과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으며 2007년 8월부터 AAA등급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의 신용 스프레드는 BBB등급 회사채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됨.
 - 이것은 그들이 발행한 CDO*의 AAA등급 클래스(tranch)들을 유보한 은행들에게 문제를 야기하였음.
 - * CDO는 MBS, 회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묶어놓은 금융상품이며 신용등급이 다른 몇 가지 클래스(tranch)로 나누어 판매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 o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자산 실사(due diligence)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됨.

3) 2007년 8월 MMF(Money Market Fund)의 대혼란

MMF에서의
문제로 인해
ABCP시장에
혼란이 발생

- 2007년 8월 프랑스 은행인 BNP Paribas가 MMF계좌에서의 인출을 중지하기로 공표하면서 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의 혼란이 시작됨.
- o 고객들의 출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MMF는 투자대상을 중장기 은행예금이나 기업어음 등에서 오버나이트 론 또는 초단기 만기 상품 등으로 교체하였음.
- o 이것은 단기 유동성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가져 왔으며,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단기 증권인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시장의 붕괴를 가져왔음.
- o 이로 인해 유럽이나 북미의 은행들은 오버나이트 보다 긴 만기로 자금을 빌려오기 어려워 졌으며 만기가 긴 대출에 대한 수입은 리스크를 충당하지 못했음.

4) 숨겨진 은행 시스템

ABCP시장
붕괴로 인해
특수목적회사
에 부실이
발생

- ABCP 수요의 붕괴는 많은 은행들이 직접 보증하거나 기초 자산들을 제공하는 특수목적회사(SIV)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 o SIV와 같은 부외거래(off-balance sheet)기구들은 ABCP 판매를 통한 단기 자금으로 장기 자산을 구매하는 유동성 변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예금과 대출을 통한 전통적 은행업무와 유사함.

- 그러나 그것은 부외거래이기 때문에 규제적 요구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
- ABCP시장이 붕괴되면서 은행은 이러한 기구(SIV)에 자금을 공급해야만 했고 부외항목을 대차대조표에 공식적으로 기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음.
- 몇몇 은행은 이것을 실행했고 요구되는 자본량을 확대했으나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자 손실을 감수하였음.
- 비록 신용평가 기관이나 감독기관들이 SIV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으나 2007년 7월 이전까지 그들의 규모나 위험자산수요 등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못했음.

5) 은행들의 유동성 축적

은행간 시장의
자금 조달
문제는
발생하자
은행의 유동성
축적을 유발

- 도매시장(은행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 기간을 줄이는 등 유동성을 축적하기 시작함.
- 은행들은 대출자산을 증권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대출을 보유하게 되었음.
- 즉, 은행들은 판매하려고 계획했던 대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보유하지 않는 편이 좋은 대출약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 이러한 것은 은행이 서로 대출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은행 간 시장에 유례없는 유동성 증발이 발생함.

6) 은행 유동성 증발의 속도

- 상대방 신용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유동성 자산이 쌓여 가면서 지불여력이 충분한 은행조차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유동성 증발은
빠르게
진행되어
건실한
금융기관에도
타격을 줌

- o 영국의 Northern Bank는 증권화와 모기지 판매가 어렵고 다른 은행에서의 자금조달 또한 어려워지면서 유동자산 부족으로 인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음.
- o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베어 스텐스(bear sterner)도 자본요구량이 충분하다는 감독당국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서의 자금회수에 직면해 170억 달러의 유동성 준비금을 단 3일 만에 소모하게 됨.
- o 이 두 가지 사례는 도매시장의 신뢰가 매우 깨지기 쉽다는 것과 회사의 평판이 손상받고 시장이 유동적이지 못할 때 얼마나 빨리 현금을 소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
- o 은행들은 평판 상의 문제를 우려해 타 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급받기를 꺼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Fed는 은행 재할인 유동성 입찰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7) 채권보증보험사의 서브프라임 신용 리스크 집중

ABS나 CDO의
신용등급을
보증한
채권보증
보험사도
손실이 발생

- 과거에 주로 지자체 채권이나 인프라 스트럭처 채권을 보증했던 채권보증보험사들(모노라인 보험사)은 2003년부터 ABS나 CDO의 AAA등급 클래스(tranch)에 대한 보증을 시작함.
- o 그러나 모기지 연체와 압류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였으며 보험사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켜 이들 보험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관찰대상이 됨.
- o 가장 큰 회사인 Ambac과 MBIA는 23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음.

채권보증 보험사 문제는 지자체 채권과 경매채권 시장으로 전파	8) 지자체 채권(municiple bond)과 학자금 대출 시장의 붕괴 □ 모노라인 보험사에서의 중대한 문제는 지자체 채권과 학자금 대출 유동화 증권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됨. ○ 미국 지자체 채권의 상당수가 AA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모노라인 보험사의 보증을 받고 있음. ○ 또한 최근의 시장은 전통적인 고정이표채(fixed coupon bond)에서 경매채권(ARS, Auction Rate Securities)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음. ○ ARS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장기인 채권이지만 채권자는 채권의 이자율이 네덜란드식 경매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단기증권으로 인식함. ○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행자에게는 이자 비용이 적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게 됨. ○ 그러나 보험사에서의 문제가 ARS의 신용등급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기관들이 입찰참여를 중단하면서 경매는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됨. ○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에 특화된 많은 회사들이 ARS 기법을 적용했으며 경매실패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됨.
서브프라임 위기 해결은 주로 연방기관에 의해 수행	9) 위기 기간 중 주 보증 기관의 무개입 □ 미 정부당국은 모기지 시장을 지원하게 위해 연방기관과 정부 보증 기관들을 이용하였음. ○ 이것은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 의한 모기지 리파이낸싱, Federal Home Loan Banks에 의한 모기지 은행 대출 증대 및 MBS구입, 정부보증 기관에 의한 모기지 구매 및 MBS 구입, Federal Reserve를 통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루어 졌음.

- o 요약하면 미 정부당국은 모기지 대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것임.

10) 은행의 레버리지 축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총대출의
급격한 축소를
야기

- 은행들은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IV 및 헤지펀드의 자산을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흡수하고 있으며 대출약정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 o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본을 보다 엄격하게 할당할(ration) 수밖에 없게 됨.
- o 자본이 손상되고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은 자발적 대출(voluntary loan)을 줄이고 신용 조건들을 더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o 상업은행은 태생적으로 레버리지 되어 있어(자산에 비해 자본이 상당히 적음)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 감소도 대출 총액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음.
- o 추정에 의하면 최근의 위기로 인한 미국 은행 시스템의 4000억 달러의 손실은 2조 가량의 총대출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미국 GDP의 1.2%를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번 위기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을 인식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앞서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o 증권화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는 다른 곳으로 전가되지만 그 것이 어디에 축적되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림.
- o 은행 간 시장은 위기 시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상당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o 개별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체계적 리스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이성적 행동이 집합적으로는 비이성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o 중앙은행이 리스크 확산을 막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음에도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듯이 리스크가 산재된 경우에는 위기의 해결이 상당히 어려움.

자료 : Outbreak: U.S. Subprime Contagion, Finance&Development, IMF, 2008, 6.

〈미국 보험산업의 신용정보 사용 논쟁〉

1) 논의 배경

최근 미하원은
보험사의
신용점수
활용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

- 지난 5월 21일 미 하원에서는 “보험의 가입용이성과 가격합리성에 있어서 신용기반 보험점수의 영향”(“The Impact of Credit-Based Insurance Scoring on th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Insurance”)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었음.
- 이번 청문회는 보험사의 신용점수 사용과 관련하여 하원에 제출된 두 가지 법안(HR 5633, HR6062)의 처리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림.
- 이번 청문회에서 보험업계는 신용점수 사용으로 인해 더욱 정교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활용을 제한하는 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 소비자 단체인 CFA(Consumer Federal of America) 등은 신용점수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미국 보험감독관 협의회(NAIC) 대표로 청문회에서 발언을 한 플로리다 보험감독관 McCarty가 법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에서 NAIC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함.
-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가져온 미국 보험사의 신용점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2) 보험회사의 신용점수 활용 경과

- 신용점수(Credit-based insurance score)는 개인의 신용 경력(credit history)에 기초한 순위를 말함.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경력에
기초하여 평가

- 신용점수는 개인의 금융자산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개개인이 금융거래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 신용점수 사용을 옹호하는 보험사들은 신용점수가 자동차보험과 가계종합보험의 미래 손실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예측변수로 보고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고 있음.
- 신용점수는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12개월의 신용과 관련된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 그러나 신용정보의 사용방법은 각 주별, 각 보험사별로 다양함.
- 대표적인 신용도 평가 회사인 Fair Isaac에 의해 개발된 보험사의 신용 점수(insurance score)는 15에서 30개의 신용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중치가 고려되어 100~999사이의 점수를 산출해내며, 낮은 점수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몇몇 보험사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점수화 모델링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미국은
1970년대 부터
보험인수시
신용점수를
활용

- 미국의 보험사들이 보험인수(underwriting) 과정에 신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1970년 Fair Credit Reporting Act (이하 FCRA)가 발효된 후 부터임.
- 2001년 Conning&Co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사의 90% 이상이 보험 신용점수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은 1998년 이후 신용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최근 3년간 특히 신용정보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신용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하와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메사추세츠에서는 신용점수사용이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
- FCRA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신용 리포트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보험가입 거부, 보험료 인상, 커버리지의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 o 소비자는 또한 그들의 신용 리포트 상의 에러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며 보험사에 대하여 그들의 보험 신용 점수를 다시 산정하고 보험 커버리지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o 신용점수의 사용에 대한 모델 법안은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ion(NCOIL)에 의해 2002년 12월 승인됨.
- o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산정 시 신용 리포트(credit report)가 사용된다고 알려야하며, 또한 신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 o 또한 보험가입 거절, 갱신거부, 취소 등에 있어 신용정보를 단독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신용 리포트 내에 medical credit account*와 같은 정보들의 사용은 금지됨.

* credit account란 지불연체 시 신용 리포트에 나타나게 되는 계정항목임.

3) 신용점수 활용의 찬반논쟁

보험사는
신용점수
사용을 지지

- 보험사들은 보험가격 산정에 있어 신용점수의 활용이 매우 긍정적이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o 보험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교화 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근거임.
- o 자동차 보험에서 성, 연령,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미래 손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신용도와 미래 손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임.
- o 그들은 신용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소득을 고려하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보험사는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보험사는
신용점수가
공정한 보험료
산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보험업계는 결국 신용점수가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 정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공정한 가격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임.
- 1949년에 발표된 Canada Taxi Drivers의 연구에 의하면 34%의 상습 교통사고자들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사고자의 경우는 단 6%만이 신용에 문제가 있었음.
- 1968년 수행된 Washington주의 연구에서도 64%의 무사고자가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35%는 신용도가 나빴고,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은 비율과 나쁜 비율이 각각 35%, 3%였음.
- 1996년 계리컨설팅사인 Tillinghast Tower-Perrin의 연구에 의하면 보험 신용점수와 손해율 간에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은 “희박하다”(very unlikely)는 결론을 내림.
- 그 외에도 2000년 Casualty Actuarial Society(CAS), 2003년 Texas 대학의 연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음.
- 2007년에 실시된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의 연구는 신용점수가 보험사로 하여금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며 신용점수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차별적인 대용변수(proxy)로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결론지음.

소비자 단체는
신용점수
활용을 제한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소비자 단체인 CFA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civil rights group)와 몇몇 보험 에이전시 및 보험사를 대표하는 협회도 보험료 산정에 신용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그들은 신용점수의 사용에 아래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소비자단체는
신용점수
옹호론자들의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신용점수 사용으로 인해 보험의 가입용이성과 가격합리성(affordability)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저해함.
- 저소득층과 소수자들에 대해 불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음.
- 신용점수는 종종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용 리포트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신용점수의 활용은 내재적으로 불평등하며 개인의 경제적 충격이나 의료상의 충격 그리고 자연재해 등을 당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대출기관들의 사업상의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o 보험사들의 신용점수 활용과 관련한 핵심은 신용점수가 미래 손실 가능성을 잘 예측하는가와 보험료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들이 리스크와 관계된 신용점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임.
- o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신용에 손상이 가거나 구조조정 또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결과로 인해 신용에 손상이 간 사람들이 이들 사건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이나 가계종합보험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음.
- 이들은 또한 신용점수 사용이 통계분석으로 입증되는 적법한 논문(thesis)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함.
- o 그들은 신용점수 사용을 지지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는 논문이 아니라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사유화된 자료에 근거한 상관관계뿐이라고 주장함.
- o 이러한 문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보험계리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그들은 특히 신용점수가 인종차별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신용점수의 사용이 인종구분을 보험료 산정과정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게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당국은 이러한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함.
- 신용점수가 그 자체만으로 보험 리스크의 예측변수가 되지 않으며 소득, 운행거리, 소비자의 주거지역 등과 관련된 대용변수(proxy)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
- 특히 신용점수는 인종과 소득의 대용변수이며 Texas와 Missouri 보험국에서 수행된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둘 간에는 상당히 높은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험점수 활용에 대해 FTC에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는 신용점수가 인종의 대용변수라는 것을 뒷받침함.
- 또한 산업 관계자에 의해 선택되어 제공된 자료가 아닌 포괄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함.

신용점수 사용이 금지된 캘리포니아주 보험시장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 CFA는 신용점수 사용이 금지되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보험의 가입용이성(Availability)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잘 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 CFA의 최근 연구에서 신용점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구기간 중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얻어짐.
- 더욱 중요한 것은 신용점수 활용 금지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보험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신용점수의 사용 없이도 건실한 경쟁과 가입용이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미국에서는
보험료 산정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중임

- 미국에서는 최근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보험사가 유전자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 가입이나 가격결정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신용점수 활용에 대한 이번 논란도 신용점수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험료 산정에 있어 차별적 요소를 억제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풀이됨.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고 보임.
- 각 보험사들은 경쟁을 위해 보다 정확한 리스크 측정과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별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 보험산업 발전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자료 : The use of credit information in personal lines insurance underwriting, III, 2003.6.
 청문회 증언록,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2008.5.
 청문회 증언록,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2008.5.
 Insurers Blast Insurance Regulators as Closed to Open Dialogue, Insurance Journal, 2008.6.
 Insurers can't use DNA test against you, Chicago Sun Times, 2008.5.

2. EU 동향

<영국 의무퇴직연금시장과 공개시장옵션(Open Market Option)>

영국의
연금시장은
임의개인연금
과
의무퇴직연금
으로
나누어짐

1) 의무퇴직연금(pension annuity)시장 개요

- ☐ 영국의 연금시장은 크게 임의생존연금(purchased life annuity)과 의무퇴직연금(pension annuity)으로 나눌 수 있음.
 - o 의무퇴직연금은 개인이 근로기간 동안 자신의 퇴직기금(pension fund)에 적립한 자금을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입하는 연금보험상품으로, DC형 퇴직제도에 가입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상품임.
 - o DC형 퇴직제도 가입자는 퇴직기금의 25%를 비과세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금은 75세 전까지 연금화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DC형 퇴직연금계좌의 만기 도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 영국의 의무퇴직연금(pension annuities)시장은 지난 15년간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보험료 기준으로는 110억 파운드, 계약건수는 약 40만 건에 달하고 있음.
- ☐ 이에 비해 임의생존연금은 보험료 기준으로 4,700만 파운드에 불과함.
- ☐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무퇴직연금상품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o 단생정액연금(single life level annuity)은 가장 대중적인 연금으로 잔존 여명 동안 일정 연금액이 지급되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제가치는 감소함.
 - o 연생연금(joint-life annuities)은 연금 수급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계속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상품임.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무퇴직연금
상품은 다양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제도를
마련하여
연금기관
선택을 도움

- 단생정액연금과 연생연금은 5년 내지 10년의 지급기간이 보증되기도 하는데, 보증기간 내에 연금수급권자 사망시 보증기간 말까지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함.
- o 체증연금(escalating annuities)은 매년 일정비율(예를 들어 3%)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체증되는 연금상품임.
- o 변액연금(investment-linked annuities)은 기초 투자자산의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연금상품임.
- o 경증표준하체연금(enhanced life annuities)은 흡연자나 과체중자인 경우 정상연금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임.
- o 중증표준하체연금(impaired life annuities)은 암이나 만성천식 등 잔존여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자에게 정상연금보다 고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임.
- 영국 정부는 1978년 연금가입자가 퇴직기금관리기관의 연금조건과 다른 회사들의 연금조건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시장옵션(OMO: open markrt option) 제도를 도입하였음.
- o 이를 위해 FSA는 2002년, 고객이 연금을 구입하기 전 다른 회사의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퇴직기금관리기관에 부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연금상품을 FSA의 비교공시표(Comparative Tables)에 추가함.
- o 공개시장옵션제도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기금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연금지급률*과 타 연금판매기관의 연금지급률 비교할 수 있게 됨.
- * 연금지급률이란 퇴직기금과 연금의 교환 비율임.

2) 의무퇴직연금 시장 현황

- 2007년 가을, ABI는 소비자들이 공개시장옵션을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연금구매자의
2/3가 자신의
퇴직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을 구입

- 본 조사는 2006년 중 퇴직연금을 판매한 26개 ABI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들 26개사는 연금보험료 기준으로 약 9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연금 계약건수로는 약 89%를 차지함.
- 조사결과 연금 구입자의 약 2/3 정도가 자신의 퇴직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을 구입(내부구매)했으며, 1/3이 정도가 다른 기관에서 연금을 구입(외부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내부구매자 중 절반은 연금상품 비교 후 내부연금을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절반은 연금상품 비교 없이 바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2006년 내·외부 퇴직연금 구매 비율

구 분	내 부	외 부
계약 건수	67%	33%
계약 금액	56%	44%

주 : 정액연금, 체증연금, 변액연금, 경증 및 중증 표준하체연금 등을 을 포함한 전체시장 기준

자료 : ABI Research Department, Calculated using ABI Annuity Survey 2007 and ABI statistics.

그러나,

연금가입자의
퇴직기금
규모는
외부구입이
더 큼

- 내부구매자의 평균 퇴직기금액은 13,000파운드이며, 외부구매자 평균 퇴직기금액은 24,000파운드로 외부구매자의 퇴직기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금판매회사가 외부판매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만을 외부판매하기 때문에 퇴직기금이 부족한 연금구매자의 경우 공개시장옵션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연금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연금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구매가 더 유리해서 라기보다는 퇴직기금액의 부족으로 외부구매의 기회가 낮아 연금쇼핑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적기 때문임.

<그림 2> 2006년 퇴직연금 규모별 판매 실적



자료 : ABI Research Department, Calculated using ABI Annuity Survey 2007

연금상품
판매채널은
IFA 비중이
가장 높음

- 연금상품 판매채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독립금융자문가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의 판매비중이 높으며 내부 계약의 경우 직접계약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o 외부 계약의 83%(계약금액 기준)가 IFA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3%가 전속독립대리점(adviser tied to a single provider)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됨.
 - o 내부 계약에서는 48%가 IFA를 경유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대리점이 8%, 중개인 없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형 정액
연금이
시장의
87%를 차지

- 퇴직연금시장규모는 35만 건이며 판매상품유형은 전통형 정액연금 (표준하체연금 제외)으로 2006년 신계약의 87%를 차지하였고 체증 연금이 6%, 변액연금이 2%, 표준하체보험(경증 및 중증 포함)이 시장의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공개시장옵션 제도의 효과

□ 퇴직기금 1만파운드로 단생정액연금에 가입한 65세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3개 연금기관 대부분(17개)이 공개시장옵션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고연금지급률(이하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의 95% 이상 수준의 내부연금지급률을 제시하고 있음.

- 90%이하 수준을 제시한 기관은 1개,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 이상을 제시하는 기관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4개 기관이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지급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개시장옵션 행사를 통한 금융 이득은 없음.

대부분
연금소비자가
최고연금의
95% 이상을
지급 받음

□ 공개시장옵션제도를 통해 이득을 본 연금구매자 수와 이득 규모를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 이상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은 소비자가 전체의 35%이며, 이들 외에도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 99% 이상을 적용받은 소비자도 전체의 25%인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보면 본 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연금소비자 중 85% 이상이 공개시장옵션 최고연금지급률 대비 95% 이상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았으며, 15%만 95% 미만의 연금지급률을 적용 받았음.
- 외부 연금을 구입한 고객의 대부분은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 대비 97% 이상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았으며, 내부 연금 구입고객의 81%가 공개시장옵션 최고 연금지급률 대비 95% 이상의 연금지급률을 적용받았음.

□ 외부 연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느냐는 생애 이득을 살펴봄으로서도 계량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GAD(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의 연금수급권자 기대여명과 본 조사에서 확보한 연금지급률을 이용하여 공개시장옵션 최고연금지급률과 평균 내부구입 연금지급률을 적용한 전생애 연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였음.
- 65세 남성이 5년 지급보증부 단생정액연금 1만 파운드를 구매하려 한다고 할 때 평균 내부연금지급률을 적용한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공개시장옵션 최고연금지급률을 적용한 연금을 구입하는 경우 전생애에 걸쳐 약 530파운드(연간 26파운드)의 이득이 발생함.
- 또한 퇴직기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생애이득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 5천 파운드를 구매하는 경우 총 2,647 파운드의 이득이 발생함.
- 또한 상품을 단생정액연금로 바꾸는 경우 생애이득은 446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단생정액연금(여성) 820파운드, 5년 지급보증부 530파운드, 3% 체증연금 928파운드, 물가지수연동연금(연간 2.5% 인상 가정) 387파운드로 나타남.

공개시장옵션
최고연금
지급률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전생애에
걸쳐 이득이
발생함

* 자료 : ABI Research Paper No 8, "Pension Annuities : Pension annuities and the Open Market Option", 2008.5.28

3. 일본 동향

<일본 금융혁명을 이끄는 전자기록채권제도 올 하반기 도입>

1) 개관

-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제정된 전자기록채권법*(電子記録債権法,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Act)을 올 하반기(늦어도 12월 까지)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¹⁾

* 전자기록채권 : 상거래를 통해 채화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판매 기업을 채권자로 지정,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 결제수단을 말함.²⁾

전자기록채권
제도 도입은
금융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표 1> 전자기록채권 기본 순서도

- ① 채권 발행인은 거래은행과 이용약정 체결 및 발행신청
 - ② 발행인 거래은행은 전자채권기록보관기관(Electronic Claim Record -keeping Organization)에 발행요청 및 내역전송
 - ③ 전자기록채권보관기관은 수취인 거래은행에 발행통지
 - ④ 수취인 거래은행은 수취인 조회 후 발행
- ※ 채권발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전자채권기록보관소에 저장

자료: Financial Services Agency, 'Outline of the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Act', 2007. 9.

- 아직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자기록채권 제도는 기존의 금전채권(monetary claim)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제도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금융계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1) Nomura Research Institute, 'Electronic claims : a Japanese financial innovation', 2008. 3. 10

2) Financial Services Agency, '電子記録債権法施行令(案)', 2008. 6. 23

- o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미 수 년 전 부터 일본의 전자기록채권 제도와 유사한 전자외상매출채권(electronic accounts receivable) 및 전자어음(electronic bill)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對)기업 홍보부족과 기업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소기업들의 성향 등으로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음.
- o 전자기록채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업어음(commercial bill)을 대체하고 외상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의 유동성(negotiability)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부관리(loan administration)를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o 일본전국은행협회(日本全國銀行協會)는 올 4월부터 사무국 산하에 T/F(Task Force)를 조직하여 전자기록채권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음.³⁾

2) 전자기록채권 제도 도입 배경

- 전자기록채권 제도는 기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는 전자식 양도(paperless settlement) 방법을 한층 발전시킨 결과임.
- o 2009년 1월부터 기업들의 주권(share certificate)이 전자식 양도방법의 일종인 전자대체결제시스템(book-entry system)으로 대체될 예정임.
- o 일본정부는 e-Japan 우선추진과제*(e-Japan Priority Policy Program)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이 보다 수월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채권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함.

전자기록채권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기대

* e-Japan 우선추진과제 : 매년 한차례 일본 내각 내 IT 전략본부가 IT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3) Japanese Bankers Association, 'Laying the Groundwork for Utilizing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2008. 3. 18

- o 이후 전자상거래(e-commerce),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자금 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 CMS), 상업어음(commercial bill), 그리고 외상매출채권의 유동성 향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연구범위가 확대됨.

* 신디케이트 론 :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특정차주에게 일정조건으로 대규모의 중장기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기록채권이 주로 사용될 분야로 예상됨.⁴⁾

3) 상업어음 대체 수단으로써의 전자기록채권 제도

상업어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

-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상업어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o 상업어음은 일찍이 기업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백오피스 운영(back office operation)과 관련된 운송비와 인지세 등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서 점차 상업어음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
- o 신용도 높은 기업들은 통합 결제방식(consolidated payment)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하도급 업체들 역시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상급기업 주거래 은행의 통합 결제방식 시스템을 통해서 빠른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음.

전자기록채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기존 어음
제도와
공존이 불가피

- 전자기록채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어음제도와 공존하게 됨.
- o 새로운 금전채권 방법인 전자기록채권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의 어음거래법(Bills of Exchange Act)은 계속 유지됨.
- o 그러나 기반시설 비용(infrastructure cost)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전자기록채권 제도로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됨.

4)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Japan :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2008. 03

- 기존 어음제도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채권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에게 전자기록채권 제도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과의 돈독한 관계유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함.

4) 외상매출채권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전자기록채권 제도

□ 기명채권의 일종인 외상매출채권은 많은 한계가 존재함.

기명채권의
일종인 외상
매출채권은 많은
한계가 존재

- 자산 규모가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매출의 약 1/4을 어음으로 결제받고 있으며 나머지 3/4은 외상매출채권으로 받고 있는 실정임.
- 외상매출채권은 어음보다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고 설령 양도한다고 해도 금융기관들이 확인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은 외상매출채권이 가진 한계임.

□ 전자기록채권제도는 외상매출채권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제도임.

전자기록채권은
외상매출 채권의
단점을 보완

- 전자기록채권제도는 외상매출채권이 이미 양도가 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기업들 또한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자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거래되도록 함.

- 그러나, 전자기록채권 제도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음
- 전자기록채권제도가 도입되어 어음을 대체 하더라도 향후 전망이 장밋빛이지만은 않음.
 - 외상매출채권 유동성면에서 채권양도 금지 행위는 전자기록채권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요컨대 전자기록채권제도가 단순히 중소기업들의 금융편의만을 위해 활용된다면 시장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음.

5) 향상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전자기록채권 제도

- 대출기관은 전자기록채권을 통해 대출 서비스를 향상
- 전자기록채권제도의 도입은 대출기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
 - 전자기록채권은 채권 액면가액, 결제 만기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이자요금, 지체료, 각종 벌금 등의 기타 정보들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됨.
 - 대출기관들이 이렇게 모인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전자기록채권이 신디케이트 론이나 주택담보대출(residential mortgage loan)과 같은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임.
 - 전자기록채권을 통한 대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행정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임.

전자기록채권 제도의 성공여부는 사용자 수요와 IT발전에 의존

6) 전자기록채권 제도 향후 전망

- 전자기록채권 제도 성공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와 IT 발전 여부에 달려 있음.⁵⁾
- 전자기록채권 제도를 통해서 현재 어음제도를 개혁하고 신디케이트 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 가능해지며 전자금융 거래의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임.

5) Financial Services Agency, 'Outline of the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Act', 2007. 9.

- o 전자기록채권이 산업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운영규범들이 민간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가급적 이른 기간 내에 기록보관기구(record-keeping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함.

*자료 : Nomura Research Institute, 'Electronic claims : a Japanese financial innovation', 2008. 3. 10
Japanese Bankers Association, 'Laying the Groundwork for Utilizing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2008. 3. 18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Japan :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2008. 03
FSA, 'Outline of the Electronically Recorded Claims Act', 2007. 9.
FSA, '電子記録債権法施行令(案)', 2008. 6. 23

<일본 보험법 제정>

상법에 포괄된
보험계약법을
독립하여
보험업으로 제정

- 일본의 현행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1899년 제정되어 100년 이상 유지되었음.
 - 그동안 보험을 둘러싼 경제환경이나 생활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여 보험계약법 개정에 대한 제안과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몇 차례 이루어졌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구시대적 보험법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보험법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지난 6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지금까지 보험계약법을 규정해 온 상법629조 내지 683조가 폐지되고 대신에 새로운 「보험법」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었음. 개정내용 중 주요한 3가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현행 보험계약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 전부를 보험자에게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서는 아니 됨.
 - 부보대상물이나 부보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보 리스크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가계성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시스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어떤 정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와 보험자가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계약자의 고지사항은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 한정	□ 개정안에는 보호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실 발생가능성이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 중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7, 66). ○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질문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의미임. 그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새로운 고지의무는 수동적 의무라 할 수 있음.
계약해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시에만 가능	○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 및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또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보험중개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불고지 및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8Ⅱ②, \$5Ⅱ②, \$4Ⅱ②).
보험중개자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시 계약 해제할 수 없어	○ 보험중개자는 보험소비자가 보험담보 획득을 원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보험소비자는 보험중개자를 보험 그 자체나 보험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여기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자의 말이나 행동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함. ○ 본래 보험중개자의 활동이나 모집행위는 계약법(보험계약법)이 아니라 사업법(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중개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기망하여 정당한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중개자는 제재를 받게 되며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됨.

2) 초과보험

- 손해보험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현행 보험계약법 하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상회(초과보험)할 경우 초과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됨.
- 이러한 규정은 “피보험 이익 없이 보험은 없다”는 원칙(보전이론)에 근거한 것이나 실무에서는 장래에 보험목적물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의사 없더라도 초과보험계약 체결을 원할 수도 있음.

초과보험시의
초과부분은 당연
무효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취소
또는 감액청구
가능

- 개정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개시 후에 보험가액이 상당히 하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이나 협정보험가액, 보험료를 장래에 한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음(§0).
- 이상의 규정으로 보건데 초과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초과부분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초과보험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전체 계약이 유효하며, 보험계약자는 그 후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해됨.
- 물론 보험계약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계약은 민법 §0(공서양속규정)에 따라 당연히 무효가 됨.

3) 질병상해보험계약

- 지금까지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질병상해보험계약규정이 개정법에 포함되었음.
- 동 보험은 피보험자의 치료비용이나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임. 피보험자의 신체 손실이 질병상해보험의 대상이 된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질병상해보험
관련 내용은
독립시켜 규정

-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으며, 피보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비용이 지급될 수도 있음.
- o 현행 보험계약법에는 질병상해보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생명보험규정이나 손해보험 규정을 유추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음.
- 질병상해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보험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시킬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음. 개정안은 정액급부지급유형의 질병상해보험 관련 규정은 독립된 장(4장 §6~96)에 규정
- o 따라서 보험계약자 외의 타인이 정액 질병상해보험의 대상이 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
- o 또한 질병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정액급부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당연히 동종의 보험으로 분류됨.
- 한편 손실보전계약형태의 질병상해보험은 개정법률 하에서는 손해보험의 범주에 속하게 됨(§7).
- o 그러한 이유로 동종의 질병상해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 이외에 대해서는 보험급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4) 기타 문제

미성년자
사망보험금액
제한 없어

-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액을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o 일본 보험법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이익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금액의 사망보험금이라도 상호 합의 할 수 있음.
- o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설정되는 경우 생명보험 분야에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음.
- o 그러나 이 문제는 보험실무에서 대응하여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많아 개정 법률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이익의 원칙”은 생명보험계약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개진되었음.
- 예를 들어 정당한 보험금수취인을 확정하는 문제는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냐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 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성년자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보험금액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의견은 현재 일본에서 다수의견이 아님. “피보험이익의 원칙”이 생명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법에서 사망보험금 금액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가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사료됨.

5) 개정된 보험계약법의 의의

- 앞에서 언급한 보험법의 세 가지 개정내용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행 보험계약법 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자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보험법의 제정으로 고지의무가 적극적 의무에서 수동적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임.
-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중개자의 역할이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판정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중개자의 행위나 관여 여부가 고려되어질 것임.

고지의무 완화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 완화에
도움

* 자료 : 일본보험법의 개혁 : 신일본보험법의 전망, Akihiki Umetsu, 한국 보험학회발표자료, 2008. 5.

<일본 자동차도난 5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

자동차 도난대수
5년새 절반으로
감소

□ 일본의 등록차량 790만대 대비 자동차 절도 대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1998년부터 2003년 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7년간에 걸친 민관의 노력으로 2003년 64,223대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003년 대비 절반수준인 31,790대로 감소

○ 일본손해보험협회(회장 에가시라 토시아키)는 자동차절도가 단지 손해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범죄일 뿐 아니라 아니라 사회적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하에 2000년 이후 자동차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중임.

○ 일본손해보험협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차량도난방지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차량제작사 및 관련 협회의 지원으로 이모빌라이저 등 도난방지장치의 사용과 개발에 기여하여 왔음.

- 특히 지방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지부의 협조로 지역 상황에 맞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PR 캠페인, 자동차 도난 취약지역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경고문 배포와 현수막 부착, 자동차 세 통지서의 경고문구 인쇄 등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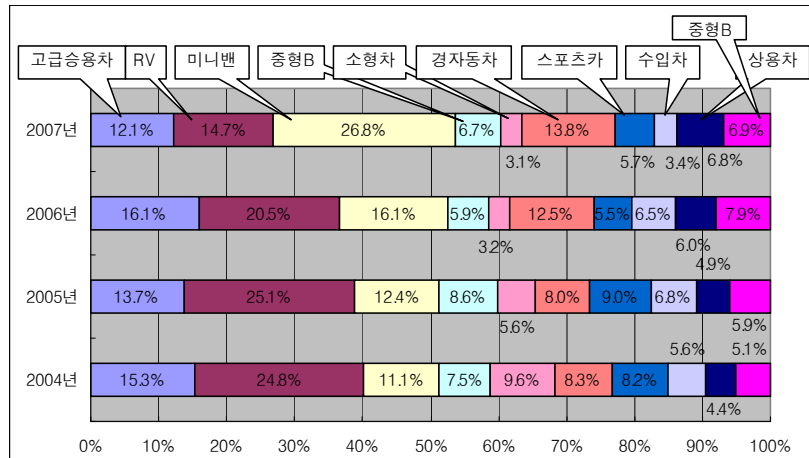
□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도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손해보험회사가 2007년 11월 중 보험금을 지불한 도난사고(차량 도난825건, 자동차부착물 3,138건)를 대상으로 자동차 도난 사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는 2000년 이후 실시되고 있음.

미니밴과
경자동차의
도난 피해
증가 경향

□ 자동차 종류별로 보면 미니밴과 경승용차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은 금년은 하이 에이스의 피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특히 미니밴의 도난피해 증가가 현저히 나타났음.

○ 한편, 고급승용차와 RV차량의 피해는 감소 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모빌라이저의 장착이 도난 대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차량 종류별 도난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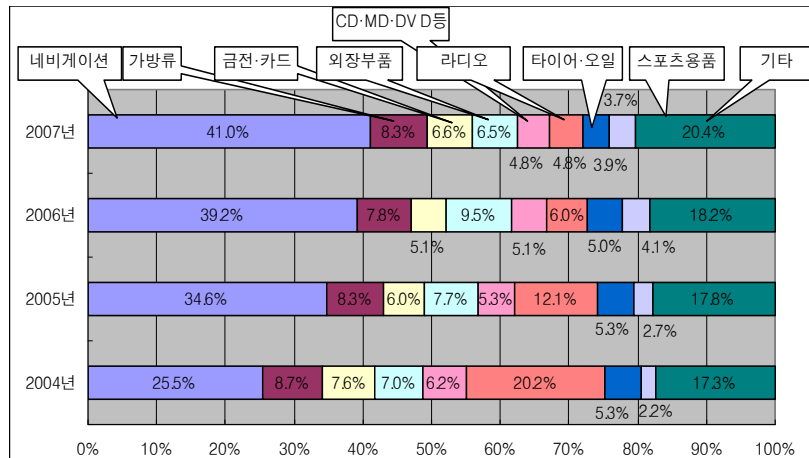


해외에서 인기
좋은 하이
에이스 차종이
도난 1위

□ 차종별로 도난 피해대수를 살펴보면, 2003년 조사로부터 2006년 조사에서 도난 피해가 1위로 나타난 랜드 크루저는, 금년도의 조사에서는 5위로 나타난, 반면 하이 에이스의 피해가 랜드 크루저를 넘어 16.2%로 도난 피해 1위를 차지하였음.

○ 하이 에이스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차종이며, 최근에는 하이 에이스를 노린 절도단도 검거되고 있음.

<그림 2> 차내 물품 도난 현황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

차내 도난물품
중 40%가
자동차
네비게이션임

- 차내 물품의 도난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가장 피해가 커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가방이나 핸드백(8.3%), 금전이나 신용카드(6.6%), 외장용품(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 네비게이션 건당의 피해액을 살펴보면 20만엔을 이상 피해가 약60%, 10만엔 이상 피해가는 90%를 넘고 있어 피해가 고액화 되어가고 있음.
-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와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도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함.
 - 차량 도난 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의 이용
 - 시판되고 있는 도난 방지 장치의 활용
 - 차 밖으로부터 카네비게이션이 보이지 않게 커버를 걸침
 - 운반 가능 유형의 카네비게이션은 주차 시 자택에 가지고 들어감
 - 카네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도난 방지 대책을 감안한 특수 나사 사용

* 자료 : クラス別ではミニバン、車種別ではハイエースの盗難割合が高まる,
http://www.sonpo.or.jp/news/release/2008/0803_07.html

4. 기타 동향

<5. 12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이후 중국 보험업계 동향>

1) 중국 지진피해 개관

중국은
지진다발국가
인 동시에
최대
피해국가

- 중국은 매년 많은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임.
- 2007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 지진대비 및 피해감소계획(2006~2020년) (国家防震减灾规划(2006 2020年))> 따르면, 1900년대 지진으로 인한 전세계 120만명 사망자 중에서 중국에서만 59만명이 사망해 가장 사망자수가 많은 국가로 지목되었다고 언급함.
- 이 계획서는 또한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진도 6.0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고 절반 이상은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1950년~1976년 까지 거의 매년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음.
- 지난 200여 년 동안 중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만 약 9,900억 RMB (한화 약 1,485조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태풍과 홍수 등의 다른 자연재해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임.¹⁾

2)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피해 현황

- 이번 5월 12일에 발생한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진도 8.0)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준 지진 중의 하나로 기록 될 것임.
- 6월 16일 기준으로, 사망자 69,170명, 부상자 374,159명, 실종자 17,426명으로 잠정 집계됨(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08. 6. 17).
- 단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피해로는 세계에서 역대 네 번째에 해당됨.

1) Swiss Re Focus Report, "Natural Hazards in China", 2007. 5 . 18.

<표 1> 지진 사망자수 기준 세계 10대 지진 순위(1970~2007)

순위	사망자수(명)	년도	강도	장 소
1	255,000	1976	7.5	중국
2	220,000	2004	9.0	인도네시아, 태국
3	73,300	2005	7.6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4	66,000	1970	7.7	페루
5	40,000	1990	7.7	이란
6	26,271	2003	6.5	이란
7	25,000	1988	6.9	아르메니아(舊 소련)
8	25,000	1978	7.7	이란
9	22,084	1976	7.5	과테말라
10	19,737	2001	7.6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쓰촨성
대지진은
세계에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준 지진으로
기록

주 : 공식 집계 25만 5천여 명의 사상 최대의 사망자를 낸 중국 탕산(唐山)
대지진은 20세기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음.

자료 : Swiss Re, Swiss Re's list of deadliest catastrophes 1970-2007, No. 1/2008.

o 예상되는 재산상의 피해액은 역대 최대 수준임.

- 총재산 피해액(추정) : 약 1,400억 RMB 이상(한화 약 21조원)
 - 보험 손실액(추정) : 20~70억 RMB(한화 약 3,000억원~1조 500억원)
 - 보험금 지급액(추정) : 약 2억 8,800 RMB(한화 약 432억원)
- AIR Worldwide Corp., 2008. 6. 2. -

3) 중국 보험업계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구호 노력

□ 중국 정부와 보험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구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²⁾

o 5월 12일, 지진발생 직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보감독위)는 곧바로 보험업중대돌발사건응급대처방안(保险业重大突发事件应急预案) 1급 경보를 발령하고, 우땡푸(吴定富)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응급지휘부를 구성, 지진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구호활동을 벌임.

2) 中国保险行业协会, "举行业之力, 认真做好保险理赔服务工作", 2008. 5. 30

보험업계는
기민한
구호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 각 보험사들은 보상처리과정을 단순화하고 보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진특별처리반과 녹색보상처리채널(綠色理賠通道)을 신설하여 운영함.
- 지원센터에서 재난지역의 고객명단을 철저히 조사한 후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함.
- 보험사들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구조대원과 철로작업인, 많은 언론인들에게 무상으로 보험가입을 시킴.
- 중국생명보험(中國人壽保險)과 태평양보험(太平洋保險)의 경우 지진 참사로 부모를 잃은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보험사 자체적인 사회 공헌 활동도 병행되고 있음.³⁾

보험사들은
재난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특별 보상
서비스를 제공

-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역 고객들에게 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⁴⁾
 - 보험사들은 건물 바깥과 길가, 공터 등에 장막 등으로 임시 업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함.
 - 지진피해로 파괴된 전화통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동 신고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은행계좌에 보상금이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자금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
- 5월 26일, 중국 보감위는 중국보험협회와 보험업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8개항의 내용이 담긴 <지진재해 사상자에 대한 8개항 보험서비스 응급지도지침(保險業抗震救災人身傷亡給付服務八項應急指引)>을 발표하고 시행함.

3) 中國人壽保險, 太平洋保險 홈페이지

4) 中國保險行業協會, "舉行業之力, 認真做好保險理賠服務工作", 2008. 5. 30

<표 2> 지진재해 사상자에 대한 8개항 보험서비스 응급지도지침

중국
보감위는
보험사에게
보험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라고
지시

1. 보험증서가 없어도 접수하여 처리함
2. 신분증명 요구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함
3.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제한요건을 삭제함.
4. 상해를 입은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함
5. 보험금 납기기한을 최장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6.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비용을 면제함
7. 보험 약관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함
8. 고객니즈에 따라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 中国保险行业协会文件[2008]115号, 《保险业抗震救灾人身伤亡给付服务八项应急指引》, 2007. 5. 26

4) 가시화되고 있는 지진보험 도입

- ☐ 이번 쓰촨성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대재난 위험문제가 이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차대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국정부 및 보험업계는 본격적으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정부와
보험업계는
지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 일치

- 중국정부와 보험업계는 최근 빈발해지고 있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대재난 전문보험을 시급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함.
- 공정보험(工程保险)、선박보험(船舶保险)、비행기보험(飞机保险)、화물운송보험(货物运输保险) 등 각종 보험들이 대재난 위험에 피해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제한된 시장과 보장범위로 인해 기업재산 및 민간재산이 제대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지진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의 보상액은 그로 인한 경제손실액의 약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음.5)
- 경제보장 체계를 새로 만들거나 국가재정을 통한 구호 및 민간기금모금 등의 방법은 지진피해 극복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한정된 규모와 보상범위, 그리고 저차원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님.

지진다발국은 정부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진보험을 도입

-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외국 국가들은 일찍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지진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지진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
 - 1994년 보험 손실액을 기준(현재가치로 약 200억 달러)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한 후 캘리포니아 주(州)는 보험사들의 의무적인 지진보험 제공을 골자로 하는 지진보험법안(地震保險法案)을 만들어 1995년 통과시킴.
 - 지진보험공동체 성격을 가지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진보험국(地震保險局)을 설립하여 지진보험기금과 보험사를 위한 재정 및 세수확대를 꾀함.
 - 지진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역시 1966년에 지진보험법을 제정하고 지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995년 교토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예비보증금과 정부재보험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지진보험을 운용하고 있음.
 - 터키의 경우 1990년 Marmara 대지진발생 후 국가주도형의 지진피해 복구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민영보험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을 만들어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음.⁶⁾
- 해외 사례들과 중국 현실 여건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지진보험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함.⁷⁾
 -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지진보험을 운용해야 함.

5)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공식발표, 2008. 5. 20.

6)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Market in Turkey", August 2006, p 10.

7) 人民日报의 "大灾更需要保险", 上海证券报의 "观点争锋:大地震激荡中国保险业深度反思"와 "中国保险行业协会呼吁尽快建立巨灾保险制度"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지진보험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공동운용,
세제면제,
가입의무화,
보험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이번 지진과 같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 민간 보험사들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음.
- 세계의 많은 국가들처럼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정부와 보험회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임.
- 정부와 보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재보험을 운용하면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참여와 진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음.
- o 지진보험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하며, 보험사의 세제 면제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o 주택구매시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거나 가정, 주방, 재산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임.
- o 정부가 통계치의 정확성을 제대로 보증해야 리스크가 높은 지진보험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임.
- o 기초통계자료 확보, 철저한 시장상황 분석, 완벽한 법률규범 제도 및 관련기술 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자료 : 中国保险行业协会, "举行业之力, 认真做好保险理赔服务工作", 2008. 5. 30
中国保险报, "地震保险: 一个不得不说的话题", 2008. 5. 13.
上海证券报, "中国保险行业协会呼吁尽快建立巨灾保险制度", 2008. 5. 30
上海证券报, "观点争锋: 大地震激荡中国保险业深度反思", 2008. 5. 27
人民日报, "大灾更需要保险", 2008. 5. 26
Swiss Re Focus Report, "Natural Hazards in China", 2007. 5. 18.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Market in Turkey", 2006. 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中国保险学会, 中国保险行业协会, AIR Worldwide Corp. 등의 쓰촨성 대지진 관련 기사 참조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러시>

1) 개 관

□ 세계 투자처를 향한 중국 금융기관들의 투자 러시가 잇따르고 있음.

- 그동안은 외국 기업들이 매력적인 시장조건을 갖춘 중국에 많이 투자했다면 이제는 중국 기업, 특히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그 중에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은행과 보험사들이 투자기회를 찾아 해외에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짜오상은행(招商银行) 은행장인 마웨이화(马蔚华)는 최근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함.¹⁾

1.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들 역시 함께 진출해야 함.
2. 최근 일련의 금융기관 개혁은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함.
3. 증시 상장 후 외국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해야 함.
4. 자본 충족률과 인재가 크게 늘면서 관리 및 채용차원에서 해외 진출과 투자를 늘려야 함.

자료 : 中国金融网, “马蔚华 : 四大因素推动中国金融机构走出去”, 2007. 5. 26.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빠른 선진기술 습득을 갈망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은 지금을 최적의 투자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음.²⁾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
러시가 날로
거세짐

1) 2008년 5월 9일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던 루지아주 토론회(陆家嘴论坛)에서 '세계 외환 비축 관리의 새로운 도전(全球外汇储备管理的新挑战)'을 주제로 연설한 내용을 요약함.
2) The Mckinsey Quarterly, "Special report : China's track record in M&A", 2008. 6.

2)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특징과 현황

- 중국 금융기관들은 주로 소액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음.
- 소액 지분 매입 방식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은행들이 중국 시장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소량의 지분매입만으로도 경영권 획득과 같은 원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M&A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소액지분 매입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임.

중국
금융기관들의
주요 해외 투자
방법은
소액지분 매입

<표 1> 중국 5대 은행 및 보험사

순위	은행명	총자산 (백만 \$)	순위	보험사명	시장점유율 (%)
1	중국공상은행 (中国工商银行)	3912.13	1	중국생명보험 (中国人寿保险)	36.9
2	중국은행 (中国银行)	2990.07	2	핑안보험 (平安保险)	15.2
3	중국건설은행 (中国建设银行)	2031.16	3	중국인민재산보험 (中国人民财产保险)	12.8
4	중국농업은행 (中国农业银行)	1900.95	4	태평양보험 (太平洋保险)	9.9
5	교통은행 (交通银行)	584.54	5	신화보험 (新华保险)	4.7

자료 : Beijing Review Vol. 43, 2008. 4.(은행)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06말 기준(보험)

중국
금융기관은
투자대상에서
투자자로
빠르게 변모

- 세계 외국기업들의 투자대상에서 주요 투자자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면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2001년 전체 여신의 30%에 해당하던 부실채권 비율을 2007년 현재 7%까지 하락시켜 경영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음.
 - 최근까지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해외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중국 국영은행들의 경우, Bank of America, HSBC,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RBS)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계기가 됨.
- 최근 기업공개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 중 3개 은행이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되고 중국 최대 보험사 2개 또한 글로벌 top 10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커짐.
- 중국 금융기관들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있는 투자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음.
 - 2006년 4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02억 달러를 해외기업 인수 및 투자에 지출함(Annual Reports, McKinsey Analysis).
- 중국 제 1의 은행인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은 남아프리카 리딩뱅크인 The Standard Bank of South Africa의 지분 20%를 약 55억 달러에 매입하였으며, 중국 제 2대 보험공사인 평안보험(平安保險)은 최소 65억달러로 세계적 금융기업인 포티스 자산관리 부문(Fortis Investments)의 지분을 인수함.

<표 2> 중국 금융기관들의 주요 해외 금융기관 투자 내역(06-07)

투자자 (중국 금융기관)	투자대상 (해외 금융기관)	거래내역
중국공상은행 (中国工商银行)	The Standard Bank of South Africa	- \$5.49 billion for 20% share
중국투자공사 (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	Morgan Stanley	- \$5 billion for 9.9% share
중국은행 (中国银行)	Singapore Aircraft Leasing	- \$3.4 billion for 100%
평안생명 (平安人壽)	Fortis	- \$3.2 billion for 4.99% share - \$3.3 billion for half of asset-management
중국개발은행 (国家开发银行)	Barclays	- \$3 billion for 31% share
중국건설은행 (中国建设银行)	Bank of America(Asia) in Hong Kong	- \$1.25 billion for 100%

자료 : Annual Reports, McKinsey Analysis

3) 중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시사점

해외투자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획득

- 중국 금융기관들은 달라진 위상과 자국 내 확고한 지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체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하고 있음.
- 재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 외에도 중국 은행과 보험사들은 해외 투자를 계기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나 IT, 제품개발, 고객 서비스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 국적의 은행과 보험사들처럼 자국시장에 확고한 기반을 두면서 해외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세계에서조차 흔하지 않음.

중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전략은
중기적
관점에
다루어져야

□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상당수 중국 주요 기관들에게는 냉철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많은 투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 투자기회가 많아질수록 해외진출을 통한 중국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전략은 중기적 관점에서 어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것인지가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폭넓은 분야에서 잠재적인 제휴를 명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약체결 방법이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은 기대되는 투자수익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협상하고 있지는 않음.

○ 중국 금융기관들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소수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제대로만 하면(특히, 성숙된 시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

① 재능(Talent)

- 중국 금융기관들은 자국 내 리스크 관리와 IT와 같은 기술적 분야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음.
- 이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해외의 많은 재능들을 자사에 접목할 수 있도록 대외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함.

② 능력이전(Capability Transfers)

-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중국 금융기관들은 프로젝트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법으로 외국 파트너 기업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음.
- 정교함이 한층 요구되는 신사업분야에 뛰어들기 위해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이전을 촉진시킴.

③ 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 해외시장에서 외국 파트너들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은 국제관계에서의 제도적인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됨.

- 지금과 같이 투자적기의 상황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은 보다 현명하게 해외투자를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다 현명한
투자가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요구
- o 중국 금융기관들은 마구잡이식의 투자를 지양하고 자신들의 자금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자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임.

*자료 : The Mckinsey Quarterly, "Global investment strategies for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2008. 6.
The Mckinsey Quarterly, "Special report : China's track record in M&A", 2008. 6.
Beijing Review Vol. 43, 2008. 4.
中国金融网, "马蔚华 : 四大因素推动中国金融机构走出去", 2007. 5. 26.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4.8	4.0	4.0	5.0	5.2	5.5	5.7
경상수지		808	2,703	1,146	2,102	3,701	-994	-3,557
수 출		82,713	87,394	84,704	92,984	90,529	103,172	99,504
수 입		80,216	79,905	82,262	87,962	86,059	100,563	105,448
실업률		3.3	3.2	3.6	3.2	3.1	3.0	3.4
금리	국고채(3년)	4.69	4.82	4.79	5.24	5.39	5.89	5.10
	회사채(3년)	5.02	5.18	5.20	5.64	5.85	6.73	6.01
소비자물가지수		102.9	102.6	103.5	104.6	105.3	106.0	107.4
환율	원/달러	945.2	929.6	940.3	926.8	920.7	938.2	991.7
	원/엔화	802.2	781.8	797.0	752.4	796.7	833.3	1,000.2
KOSPI		1,371.4	1,434.5	1,452.6	1,743.6	1,946.5	1,897.1	1,704.0
외환보유고		228,224	238,956	243,915	250,702	257,294	262,224	264,252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CY2008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93,699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108,974	85,391
생명보험		74,238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84,269	64,517
손해보험		19,461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24,705	20,874
은 행		225,384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204,778	214,006
일반계정		183,429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187,062	142,969
신탁계정		41,955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17,716	71,037
증 권		18,650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13,605	6,184
투 신		-5,011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269,007	377,948
중 금		31,812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14,457	34,881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35,507	37,275	141,403
	성장률	7.5	14.3	8.6	14.7	8.6	9.6	2.8	8.6
	구성비	18.0	21.3	19.6	19.9	19.3	16.5	20.2	18.8
사망	보험료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75,176	75,026	297,700
	성장률	5.8	5.3	5.3	5.8	4.1	4.2	2.8	4.2
	구성비	40.0	42.5	43.0	42.3	41.8	34.9	40.6	39.6
생사 혼합	보험료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16,754	16,193	66,043
	성장률	-6.1	0.6	-6.4	0.8	-2.2	-1.3	-8.1	-2.8
	구성비	9.4	10.3	10.2	9.7	9.2	7.8	8.8	8.8
변액 보험	보험료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48,117	45,184	173,912
	성장률	18.8	-0.1	37.5	35.0	57.2	63.6	47.1	50.9
	구성비	16.3	17.9	17.3	21.3	24.7	22.3	24.5	23.2
개인계	보험료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175,555	173,678	679,058
	성장률	6.9	5.5	9.4	12.6	14.4	16.3	10.2	13.4
	구성비	83.7	91.9	90.1	93.2	95.0	81.4	94.0	90.4
단체	보험료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40,120	11,006	71,898
	성장률	-15.0	23.6	-2.5	-8.9	-3.7	36.9	-21.2	9.7
	구성비	16.3	8.1	9.9	6.8	5.0	18.6	6.0	9.6
합계	보험료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215,675	184,684	750,956
	성장률	2.6	6.8	8.1	10.8	13.3	19.7	7.7	1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 보 존 합	지급보험금	20,244	22,133	81,619	20,781	25,507	29,931	28,143	104,361
	증가율	-4.0	-0.9	2.2	13.1	22.2	47.8	27.2	27.9
	지급률	62.5	61.0	62.7	60.0	75.0	84.3	75.5	73.8
사 보 망 합	지급보험금	27,675	29,430	112,019	27,583	29,735	32,928	33,482	123,728
	증가율	11.6	7.7	13.0	6.5	2.5	19.0	13.8	10.5
	지급률	38.4	40.3	39.2	37.4	40.3	43.8	44.6	41.6
생 사 혼 합	지급보험금	18,737	18,379	73,480	18,237	22,531	35,605	26,600	102,973
	증가율	-47.9	-21.2	-33.0	0.9	23.2	90.0	44.7	40.1
	지급률	110.4	104.3	108.2	108.4	138.5	212.5	164.3	155.9
변 액 보 험	지급보험금	6,149	8,074	21,616	11,149	15,209	18,683	13,981	59,022
	증가율	307.5	227.8	299.1	236.2	273.1	203.9	73.2	173.0
	지급률	20.9	26.3	18.8	30.1	35.0	38.8	30.9	33.9
개 인 보 험 계	지급보험금	72,805	78,016	288,734	77,750	92,981	117,147	102,206	390,084
	증가율	-12.7	3.4	-1.8	18.4	28.7	60.9	31.0	35.1
	지급률	48.2	49.5	48.2	47.9	55.5	66.7	58.8	57.4
단 체 보 험 계	지급보험금	13,154	18,831	62,425	13,246	13,217	14,259	17,961	57,080
	증가율	-20.1	0.5	1.0	-23.1	-2.1	8.4	-4.6	-8.6
	지급률	44.9	134.9	95.2	111.1	149.4	35.5	163.2	79.4
전 체	지급보험금	85,958	96,847	351,159	90,995	106,198	131,406	120,168	447,164
	증가율	-13.9	2.8	-1.3	9.8	23.9	52.9	24.1	27.3
	지급률	47.7	56.5	52.8	52.2	60.2	60.9	65.1	59.5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6,448	6,917	24,956	7,062	7,736	8,215	8,369	31,382
	증가율	28.7	25.2	33.9	27.0	28.3	27.4	21.0	25.7
	사업비율	19.9	19.1	19.2	20.4	22.7	23.1	22.5	22.2
사망보험	사업비	17,855	18,947	69,813	17,655	18,279	20,519	20,732	77,185
	증가율	5.6	15.3	7.0	11.2	6.7	14.9	9.4	10.6
	사업비율	24.8	26.0	24.4	23.9	24.8	27.3	27.6	25.9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5,538	5,951	22,656	5,454	6,558	7,401	7,330	26,744
	증가율	-5.0	-2.8	-1.0	-5.5	21.5	33.6	23.2	18.0
	사업비율	32.6	33.8	33.4	32.4	40.3	44.2	45.3	40.5
개인보험계	사업비	29,842	31,815	117,425	30,172	32,574	36,135	36,430	135,311
	증가율	7.5	13.3	10.0	10.9	14.0	21.1	14.5	15.2
	사업비율	19.8	20.2	19.6	18.6	19.4	20.6	21.0	19.9
단체보험계	사업비	836	1,042	3,499	760	784	979	985	3,507
	증가율	-10.6	23.3	9.3	-0.6	-0.6	17.0	-5.5	0.3
	사업비율	2.9	7.5	5.3	6.4	8.9	2.4	8.9	4.9
전체	사업비	30,678	32,856	120,924	30,932	33,358	37,114	37,415	138,818
	증가율	6.9	13.6	10.0	10.6	13.6	21.0	13.9	14.8
	사업비율	17.0	19.2	18.2	17.8	18.9	17.2	20.3	18.5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902	758	3,132	743	679	878	775	3,075
	성장률	-1.2	-3.5	-3.4	-1.8	-5.2	-2.6	2.3	-1.8
	구성비	1.2	1.0	1.1	0.9	0.8	1.0	0.9	0.9
해 상	보험료	1,304	1,314	6,323	1735	1,783	1,486	1,514	6,518
	성장률	1.9	10.9	19.9	-17.4	11.2	13.9	15.2	3.1
	구성비	1.7	1.7	2.1	2.2	2.2	1.6	1.7	1.9
자동차	보험료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27,900	27,444	108,095
	성장률	9.4	13.6	9.8	14.3	10.6	14.1	9.3	12.0
	구성비	31.4	32.9	32.6	32.6	33.0	30.3	31.7	31.8
보 증	보험료	3,073	2,718	11,428	2,424	2,341	2,602	2,573	9,940
	성장률	10.1	3.4	13.5	-18.4	-12.2	-15.3	-5.3	-13.0
	구성비	3.9	3.6	3.9	3.1	2.9	2.8	3.0	2.9
특 종	보험료	6,813	5,872	24,987	6,584	6,728	7,455	6,478	27,245
	성장률	8.8	14.0	9.1	7.2	9.2	9.4	10.3	9.0
	구성비	8.7	7.7	8.4	8.3	8.2	8.1	7.5	8.0
해외 원보험	보험료	278	184	823	191	254	298	383	1,126
	성장률	69.9	6.4	35.2	22.4	23.9	7.1	108.7	36.8
	구성비	0.4	0.2	0.3	0.2	0.3	0.3	0.4	0.3
장 기	보험료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41,650	43,308	163,436
	성장률	21.2	23.9	21.5	22.4	19.5	19.6	16.8	19.5
	구성비	44.7	48.6	46.2	48.7	48.8	45.2	50.0	48.1
개 인 연 금	보험료	2,119	2,136	7,975	2,265	2,388	2,629	2,713	9,995
	성장률	18.5	19.4	14.3	23.4	26.8	24.0	27.0	25.3
	구성비	2.7	2.8	2.7	2.9	2.9	2.9	3.1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4,216	1,149	7,868	892	724	7,303	1,471	10,390
	성장률	-18.3	52.8	2.1	-21.2	-47.2	73.2	28.1	32.1
	구성비	5.4	1.5	2.7	1.1	0.9	7.9	1.7	3.1
계	보험료	77,962	76,309	29,829	79,300	81,659	92,201	86,658	339,818
	성장률	12.3	18.3	15.0	14.5	12.9	18.3	13.6	14.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0.2	39.6	40.9	47.0	44.0	44.2
	사업비율	48.6	45.6	49.6	44.0	47.4	45.9
	합산비율	88.8	85.2	90.5	90.9	91.3	90.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6.4	52.1	47.3	54.8	58.7	57.7
	사업비율	31.2	33.5	32.7	31.9	31.8	32.6
	합산비율	77.7	85.6	80.0	86.7	90.6	90.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9.5	79.0	73.6	73.7	73.9	73.0
	사업비율	31.5	31.8	29.8	30.7	31.0	31.2
	합산비율	111.0	110.7	103.4	104.5	104.9	104.2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1.5	23.4	28.0	24.3	17.8	19.5
	사업비율	17.3	21.5	16.0	20.4	13.5	17.8
	합산비율	38.8	44.9	43.9	44.7	31.3	37.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6.8	55.3	54.3	56.5	58.2	60.4
	사업비율	24.5	26.2	24.7	25.0	25.6	26.8
	합산비율	81.3	81.5	79.0	81.5	83.8	87.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6.7	44.7	26.8	29.4	30.6	34.6
	사업비율	98.0	93.2	62.1	70.5	66.0	73.7
	합산비율	134.7	137.9	88.9	99.8	96.6	108.3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4.3	83.9	81.8	81.5	81.3	80.7
	사업비율	18.5	18.4	17.9	18.2	18.4	18.9
	합산비율	102.8	102.3	99.7	99.7	99.8	99.6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8.9	125.4	115.8	116.0	116.4	121.7
	사업비율	9.3	9.4	9.4	9.6	9.9	10.5
	합산비율	128.2	134.8	125.2	125.6	126.3	132.2
전 체	경과손해율	78.8	78.6	75.8	75.9	75.9	75.7
	사업비율	23.5	23.8	22.4	23.0	23.0	23.5
	합산비율	102.3	102.3	98.2	98.9	98.9	99.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연구조사자료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김석영,이상우,박정희,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장이규,이경희,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정책연구자료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
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관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CEO Report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보험동향 (계간 ₩ 20,000)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08년 여름호(통권 46호)

2008년 7월 2 일

발행인	나	동	민
편집인	나	동	민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68-4422 368-4423)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